

#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권순현 · 차현숙



입법평가 연구 14-17-⑥

#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권순현·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Legislative Evaluation on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Charges

연구자 : 권순현(초청연구원)

Kwon, Soon-Hyun

차현숙(연구위원)

Cha, Hyun-Sook

2014. 10. 31.

# 요약문

## I. 배경 및 목적

### □ 연구의 배경

- 부담금은 조세 이외의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금전적 의무로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함
- 이러한 부담금을 관리하는 관리체계를 점검

### □ 연구의 목적

- 2013년 현재 운영되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법적 문제와 운영 관리상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개선방향을 모색

## II. 주요 내용

### □ 부담금의 개념

-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과 강학상의 부담금간에는 체계적인 연관성이 없음
- 수익자 원칙의 성격이 약하고 조세와 유사한 부담금에 대해 위헌제청 심사에서 특별부담금의 개념으로 헌법적 정당성이 부여되어 왔으며 부담금 중 강제성이 강한 부담금들을 준조세성 부담금이라 할 수 있음

## □ 부담금 현황

- 2013년 12월말 현재 부담금 수는 총 96개로 전년보다 1개가 감소하였으며, 2013년도 부담금 징수실적은 16조 3,934억원으로 전년대비 4.6% 증가
- 전체 부담금 징수액 중 14조 2,322억원(86.8%)이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귀속되었고, 1조 5,775억원(9.7%)이 광역지방자치단체(7,319억원)와 기초지방자치단체(8,456억원)의 수입으로, 나머지 5,837억원이 공공기관 등의 수입으로 귀속

## □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법적 문제

- 「부담금관리기본법」으로 관리되는 부담금과 실제 운영되는 부담금과는 차이가 있으며 어떤 기준으로 법률 제3조의 별표에 포함되며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96개 부담금들은 그 목적과 기능에 있어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어 이러한 부담금을 하나의 원리로 규율하기보다는 유형별로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학교용지부담금은 헌법재판소에서 2005년 위헌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부과되고 있는데 「부담금관리기본법」과 개별법 및 헌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2013년 운영되는 96개 부담금 중 부과요율이 법률에 명시된 것은 10개에 불과하며, 부과요율 산출식이 없는 부담금은 8개가 있음

- 반대급부가 없고 강제성의 정도가 비교적 강한 협의의 준조세의 개념이 적용되는 부담금은 22개이며 부과금액은 4.1조로 전체 부담금의 약 25%에 이르고 있음

#### □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관리운영상의 문제

- 부담금은 부담금 간뿐 아니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간에도 유사중복사업이 많이 있으나 부담금이 개별적으로 관리·평가되고 있어 전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움
- 대형 부담금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부담금의 설치목적과 사업내용간의 연관성이 떨어지므로 부과 및 관리·운영의 개선이 필요함
- 중앙정부 기금 귀속 부담금들 중 농림수산업자보증기금등 여유자금이 과다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부담금의 부과액이 동시에 늘어나는 부담금들이 있음
- 2003년 이후 부담금평가가 실시되었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의 조세로의 전환문제 등 부담금평가결과가 부담금의 관리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음

#### □ 개선방안

-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담금의 기준을 정하고 부담금의 유형 및 특성별로 관리기준을 세부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부과요율을 법률이 아닌 조례나 규칙에 위임할 수 있는 원칙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부과요율변경을 통해 부담금 총액이 일

정 수준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여유자금의 과다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앙정부기금들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경우 부과요율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
- 개별 부담금 평가뿐 아니라 부담금 부과 총액이 일정 수준이상 넘지 않도록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및 부담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 총량제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부담금평가를 10인 내외의 평가위원 개인의 판단과 재량에 맡기기 보다는 평가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Ⅲ. 기대 효과

부담금 운영의 투명성 강화

- 부담금의 투명한 운영을 통한 국민 부담 최소화

재정 운영의 효율성 강화

- 부담금 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

▶ 주제어 : 부담금, 준조세, 부과금, 부과요건, 부과요율, 조세법률주의, 부담금평가

# Abstract

## I . Background and Purposes

- The Continuing Problems on Charges
  - As the financial obligations other than taxes, the charges should be managed properly
  - but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in the management of charge
- Legislative Evaluate on the Law
  - Examine the problems in the management of charges
  - Find the desirable directions of the law

## II . Main Contents

- Purpose of the law and Concept of Charges
  -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secure impartiality and transparency in the use of charges in order to minimize inconvenience to the people
  - The term “charges” as used in this Act means financial obligations other than taxes and the concept of charges in the law and the academic concept are different



- The concept of charges “in the law” is different from the one used “in academia”
- There are 96 charges under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charges in 2013, but there are other charges outside the law

#### The Performance of the Law

- The charges under the law include quasi-tax, but there are no proper system to manage and to operate the charges subject to quasi-tax
- There is no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for government charges in total and there is no estimation of total tax burden including quasi-tax such as charges, to find out the real burden to people
- There are charges under the fund oper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which have extra financial assets than necessary, yet the total charges imposed are still increasing
- There are charges which had been advised to be changed to tax in evaluation of charges about 10 years ago, but still exist as charges such as environment improvement charges
- The result of evaluation on operation of charges has not been reflected in the Comprehensive Plans on Operation of Charges to National Assembly


#### Directions for Improvement

- Set up the model for the management of charges according to their purpose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charges

- Set up the guideline for the procedures of the imposition, reduction and refund of charges to be prescribed in detail by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 Set up the guideline for the charges under the fund operated by central government especially when their extra financial assets are increasing
- Set up the rules for change of imposition and the ground for calculation, when the total volume of the charges are to be increased over the specific level
- Set up the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total volume of charges

### **III. Expected Effects**

- Improve the transparency in the management of charges
  - Secure the impartiality and transparency in the use of charges
  - minimize inconvenience and burden to the people and
- Increase the economic efficiency
  - Improve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finance
  - Facilitate economic activities of enterprise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and use of charges

 **Key Words : Charges, Quasi-taxes. Special Charges, Additional Charges, Requirements of Imposition**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7
제 1 장 서 론 .....	15
제 1 절 입법평가의 목적 .....	15
제 2 절 입법평가의 대상 및 방법 .....	16
제 2 장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현황 .....	19
제 1 절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현황 .....	19
I. 부담금 규모 및 추이 .....	19
II. 연도별 부담금 수 추이 .....	20
III. 징수실적 .....	22
제 2 절 부담금의 귀속 .....	23
제 3 장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	27
제 1 절 「부담금관리기본법」 기초분석 .....	27
I. 입법 배경 .....	27
II. 법 제정 시 국회 검토보고서 .....	29
III.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주요 내용 .....	31
제 2 절 부담금의 개념 .....	35
I. 법률상의 개념과 강학상의 개념 .....	35

II. 특별부담금과 준조세 .....	37
제 3 절 부담금의 기능 .....	44
I. 수익자부담에 의한 공공서비스 .....	44
II. 바람직한 행위의 유도 .....	45
III. 문제의 제기 .....	47
제 4 절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법적 문제 .....	48
I. 관리대상 문제 .....	48
II. 관리기준 문제 .....	50
III. 헌법 합치성 문제 .....	55
IV. 부과요건의 법정화 문제 .....	58
V. 부과요건 현황 .....	60
VI. 소 결 .....	62
제 5 절 부담금 관리·운용체계 평가 .....	73
I. 유사·중복 사업 .....	74
II. 중앙정부기금귀속 부담금과 여유자금 .....	79
III. 설치 목적과 사용내용 .....	83
IV.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 .....	88
V. 부담금 평가의 실효성 .....	90
제 4 장 부담금 관리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향 .....	93
I. 조세로의 전환 .....	93
II. 부과요율의 명확화 .....	94
III. 부담금 평가 체계 개선 .....	97
제 5 장 요약 및 결론 .....	101

참 고 문 헌 ..... 105

**【부 록】**

부담금 관련 근거 법률 및 산출규정 정리 ..... 109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입법평가의 목적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일반국민 또는 기업에 조세 외로 금전적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만큼, 재원조달을 위해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뿐 아니라, 부담금 부과를 통한 국민부담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재정법」을 보면, ‘예산의 원칙’(제16조)에서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제7조 제2항은 정부가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차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때,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전망’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근거를 두는 국민의 세(稅) 부담과 관련하여 조세와 재정정책 입안의 토대가 되며, 국가의 재원규모에 대한 국제간 비교의 준거가 되는 지표이다.

부담금은 부과와 징수가 국민부담으로 귀속된다는 점에서 부과대상 등이 명확해야 하며, 사용에 있어서도 특정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설치 목적에 합당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부담금의 경우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며, 대상이 중복되거나 설치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 운용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부담금은 조세는 아니지만 강제적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조세의 성격에 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담을 유발하므로 이에 대한 엄밀한 기준과 평가가 필요하다. 부담금 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2003년 이후 정기적으로 부담금 운용실태를 점검·평가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2003~2013년간 23개 부담금이 폐지되고 부담금 종합평가결과 타

당성이 낮은 부담금을 폐지하고 유사·중복 부담금간 통폐합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분야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평가 및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 관리에 있어 법적 개념상의 문제와 함께 관리·운용상의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200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3년째 시행되고 있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이 부담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입법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원래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법률 자체 내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동법이 2013년 현재 16조원을 넘는 「부담금관리기본법」상 96개의 부담금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정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 2 절 입법평가의 대상 및 방법

이 글은 「부담금관리기본법」이 현재 운용되고 있는 부담금들을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후적 입법평가에서 법률의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효과성 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경우 효과성 평가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이 구체적인 동시에 동질적이어야 하며 평가를 위한 자료가 일관된 형식으로 집계되어야 하는데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경우 평가대상이 96개의 부담금들과 각각 이것들을 주관하는 법률들이다. 즉 각각의 법률에서 부담금은 설치 목적, 부과 주체, 부과대상, 귀속회계 등이 상이해서 각 부담금의 관리 및 운용이 잘 되고 있는지를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각의 부담금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질적인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이 글의 목적이 개별적 부담금들의 성과나 효과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이 현재 96개의 부담금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려는 것이므로 수량적 분석으로 이루어지는 효과성 평가는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다. 따라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대한 효과성 평가라기보다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관리평가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관리대상에 대한 법적 문제와 관리·운용상의 문제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제2장에서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현황을 살펴본 후 제3장에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법적인 부분과 관리·운용상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 제4절에서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이 부담금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자의적인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법규정들을 갖추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 것이다. 부담금이 엄밀하게 조세법률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가재정법」 제16조와 「헌법」 제37조1)의 개념에 입각하여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각 부담금에 대해 법적인 요건들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부담금의 부과근거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든 부담금에 대해 조사하였다. 만일 특정 부담금이 규모가 크며 국민 부담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율이 담당 공무원의 판단으로 쉽게 변경될 수 있다면 이러한 절차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이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부담금들을 투명하고 공평하게 운용하기에 미흡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장 제5절에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1조에서 명시한 것처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 한다는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관리·운용체계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이 별표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들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잘 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부담금의 법적 근거 및 요율규정이 적절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만일 특정 부담금들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거나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제3장 제2절과 제3절에서 부담금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본 연구의 관점을 논의할 것이다. 부담금에 대한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닌 학문적인 개념이 필요하다. 또한 부담금 부과 및 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강학상의 부담금의 개념과 함께 역시 학문적 개념 중 하나인 준조세의 개념도 필요하다.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은 제정 이후 여러 차례 재개정의 과정을 통해 부담금의 관리에 대한 체계를 갖추어 왔지만 투명하고 좀 더 효율적인 부담금 관리를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기준을 정해주어야 할 항목들이 없는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담금들의 현황 및 사례들을 들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 제 2 장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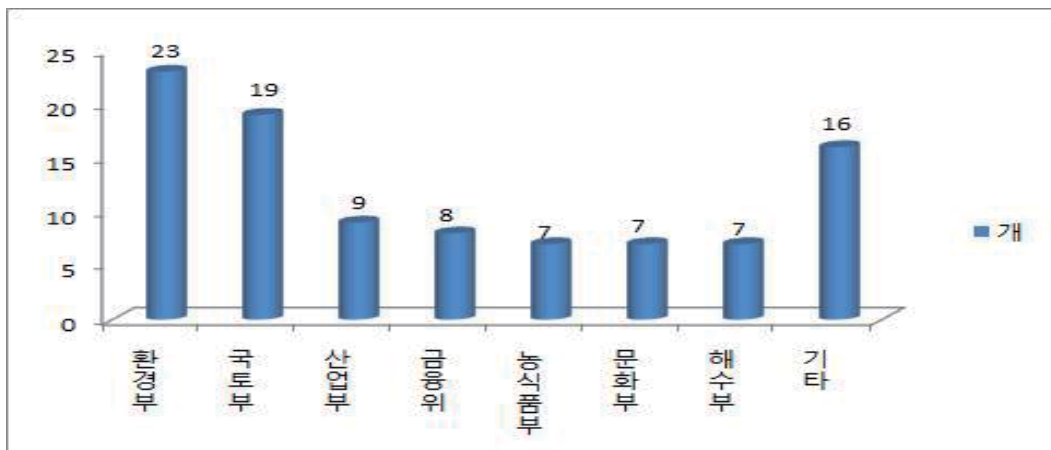
### 제 1 절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현황

#### I. 부담금 규모 및 추이

2013년 12월말 현재 부담금 수는 총 96개로 전년보다 1개가 감소하였다. 2013년도 중 신설된 부담금은 없는 반면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은 폐지되었다.

총 96개 부담금을 소관 부처별로 구분하면, 환경부가 23개, 국토해양부가 19개, 산업통상자원부가 9개, 금융위원회가 8개,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가 각각 7개,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산림청이 각각 2개, 교육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각각 1개의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다.<sup>2)</sup>

<그림 1> 부처별 부담금 수



자료: 기획재정부(2014)

2) 기획재정부(2014), 2013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1쪽.

## II. 연도별 부담금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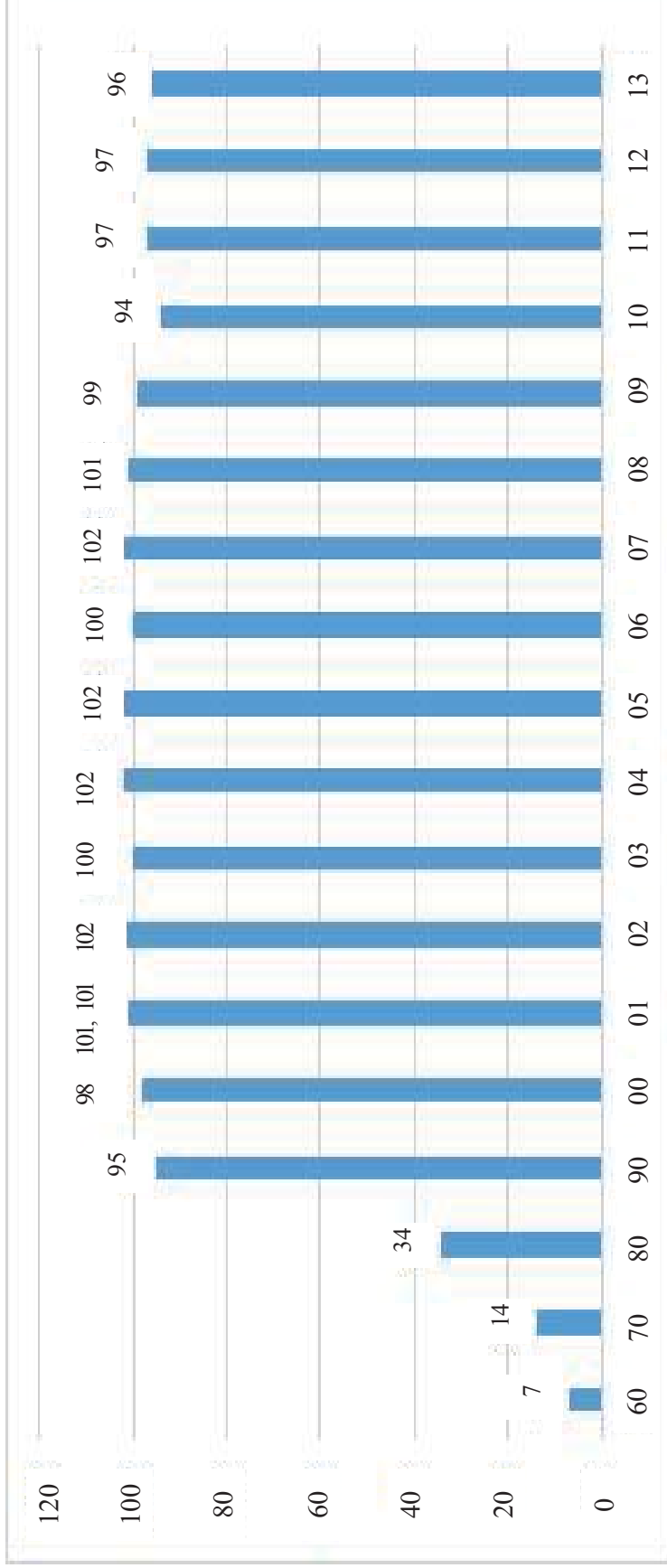
부담금은 1961년 도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손괴자부담금 등이 최초로 도입된 이후 1960년에 7개로 시작하여 1960년대 및 1970년대에는 각각 7개의 부담금이 신설되었고, 1980년대 들어서면서 부담금이 크게 증가하여 총 20개의 부담금이 설치되었다, 1990년대에는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수질·폐기물·소음·해양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녹지보전요구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중교통시설 확충 등으로 95개의 부담금이 운용되었다.

2001년 이후 2008년까지 100개 이상의 부담금이 운영되다가 2010년 94개로 감소하였고 2011년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 3개의 부담금이 신설되었다가 2013년에 한 개가 폐지되면서 96개의 부담금이 운용되고 있다.<sup>3)</sup>

---

3) 기획재정부(2014), 23쪽.

<그림 2> 연도별 부담금 수



자료: 2013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기획재정부(2014)

### Ⅲ. 징수실적

2013년도 부담금 징수실적은 16조 3,934억원으로 전년대비 4.6%증가하였다. 2013년도 부담금을 운용한 18개 부처별 징수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장 많은 4조 5,358억원으로 전체 징수실적의 27.7%를 차지하였다.

<표 1> 부처별 부담금 징수실적

(단위 : 억원, %)

소관 부처	금액(구성비)		소관 부처	금액(구성비)	
산업통상자원부	45,358	27.7	교육부	2,458	1.5
금융위원회	34,898	21.3	중소기업청	2,048	1.2
환경부	26,171	16.0	기획재정부	2,007	1.2
보건복지부	15,333	9.4	산림청	873	0.5
국토교통부	9,369	5.7	외교부	601	0.4
농림축산식품부	8,268	5.0	원자력안전위원회	525	0.3
고용노동부	6,415	3.9	해양수산부	472	0.3
문화체육관광부	5,201	3.2	안전행정부	319	0.2
미래창조과학부	3,618 <sup>주)</sup>	2.2	식품의약품안전처	-	0
합계	163,934(100%)				

자료: 기획재정부(2014)

다음으로 금융위원회가 3조 4,898억 원으로 21.3%를, 환경부가 2조 6,171억 원으로 16.0%를 차지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와 소방방재청은 각각 319억 원, 472억 원, 525억 원으로 다른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었다. 징수실적 상위 6개 부처(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의 부담금 총액은 13조 9,397억 원으로 전체 부담금의 85.1%를 차지하며, 징수실적 하위 6개 부처(산림청,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담금 총액은 2,790억 원으로 전체 부담금의 1.7%를 차지한다.<sup>4)</sup> 2013년도 전년 대비 징수금액이 증가한 부담금은 53개로 총 증가액은 9,682억 원이며 감소한 부담금은 31개로 총 2,438억 원이 감소하였고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은 12개이다.<sup>5)</sup>

## 제 2 절 부담금의 귀속

2013년도에 징수된 총 16조 3,934억 원의 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수입으로 귀속되었다. 전체 부담금 징수액 중 86.8%인 14조 2,322억 원이 중앙정부 기금(10조 6,127억 원)과 특별회계(3조 6,195억 원) 수입으로 귀속되었고, 9.7%인 1조 5,775억 원이 광역지방자치단체(7,319억 원)와 기초지방자치단체(8,456억 원)의 수입으로, 나머지 3.5%인 5,837억 원이 공공기관 등의 수입으로 귀속되었다. 2013년에 징수된 부담금 중 64.7%인 10조 6,127억 원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국제교류기금, 농지관리기금 등 29개 중앙정부 기금의 수입으로 귀속되었다. 기금별 부담금 귀속액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1조 8,296억 원으로 가장 많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이 1조 5,333억 원이 다음으로 크다.

4) 기획재정부(2014), 24~25쪽.

5) 기획재정부(2014), 26~27쪽.

제 2 장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현황

<표 2> 귀속주체별 부담금 내역

(단위 : 억원,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계
	기 금	특별회계	광역	기초		
금 액	106,127	36,195	7,319	8,456	5,837	163,934
(비 중)	(64.7)	(22.1)	(4.5)	(5.2)	(3.5)	(100)

자료: 기획재정부(2013)

<표 3> 부처별 부담금 귀속

(단위 : 억원)

소관부처	부담금 합 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기 금	특별회계	광역	기초	
금융위원회	34,898	34,791	-	-	-	107
미래창조과학부	3,618	3,618				
교육부	2,458	-	-	2,416	42	
외교부	601	381	-	-	-	220
안전행정부	319	-	-	303	16	-
문화체육관광부	5,201	4,996	-	-	-	205
농림축산식품부	8,268	8,268	-	-	-	-
산업통상자원부	45,358	21,641	21,937	-	-	1,780
보건복지부	15,333	15,333	-	-	-	-
환경부	26,171	8,472	8,878	1,949	6,575	297
고용노동부	6,415	6,415	-	-	-	-
국토교통부	9,369	-	4,507	2,649	1,815	398
해양수산부	472	205	-	2	8	257
산림청	873	-	873	-	-	-

소관부처	부담금 합 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기 금	특별회계	광 역	기 초	
중소기업청	2,048	-	-	-	-	2,048
원자력안전위원회	525	-	-	-	-	525
기획재정부	2,007	2,007	-	-	-	-
합 계	163,934	106,127	36,195	7,319	8,456	5,837

자료: 기획재정부(2013)

2013년도에 징수된 부담금 중 22.1%인 3조 6,195억원이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회계, 환경개선 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등 5개의 중앙정부 특별회계 수입으로 귀속되었으며 전체의 4.5%인 7,319억원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었다. 2013년도에 징수된 부담금 중 5.2%인 8,456억원이 기초지방자치단체로, 3.5%가 공공기관 등의 수입으로 귀속되었다.<sup>6)</sup>

이렇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담금은 중앙정부기금 귀속 부담금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앙정부 특별회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이며 공공기관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비중이 가장 적다. 부담금 현황은 부담금 개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부담금의 총액이 실제적인 부담의 크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담금 부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은 중앙정부에서 운용하는 기금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6) 기획재정부(2014), 37~40쪽.



## 제 3 장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 제 1 절 「부담금관리기본법」 기초분석

#### I. 입법 배경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의 신·증설을 억제하고,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2001년에 제정되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각종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특정 정책목적의 달성을 추구하며, 사회적 비용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세 외에 다양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부담주체인 국민과 재계 일각에서는 부담금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은 그 수입 대부분이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관리되므로 해당 행정기관은 부담금을 통해 일반예산에 비해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한 부담금 징수 증가로 특별회계의 재원에 여유가 생겨 사업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지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측면도 있었다. 이외에도 동일한 행위에 중복하여 부과되거나,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로 존재할 논리적 근거가 떨어지는 부담금이 계속 부과되고 있거나, 부과대상 및 방식이 불합리한 경우 등 제도적으로 비효율적인 측면도 발생하였다.<sup>7)</sup>

또한 종전에 부담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에 담당하기 위하여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정한 사업보다 더 넓은 의미의 공익사업

7)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2012), 12쪽.

을 위하여 공용부담이 행해지고 그 부담이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재산권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졌기 때문에 부담금의 개념도 확대되어왔으며 이와 같은 금전납부의무는 국민에게 준조세로 인식되어 행정편의적 징수금이라는 오해를 받았으며 실제 그 부과·징수의 법적 근거에 조세법률주의와 같은 엄격성이 요구되지 않고 그 용도도 특별회계나 기금에 편입되어 예산의 일반원칙이 지켜지지 못했다. 또한, 부과·징수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sup>8)</sup>

2000년 12월 국민여론과 경제단체 등의 건의 내용을 토대로 정책적 목표가 달성되어 존재근거를 상실했거나 부과대상과 사용용도간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보기 힘든 부담금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러한 정비방안과 함께 장기적으로 무분별한 부담금의 신설이나 증설을 억제하고 부담금 부과·징수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주관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조성된 재원을 부과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부담금의 통합·폐지 등 부담금 정비와 아울러 신규 부담금의 설치 및 부과대상 확대 등에 대한 엄격한 통제, 부담금 운용내역에 관한 투명한 공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담금 신·증설시 심사,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지속적인 부담금운용평가 등이 제도화되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은 2001년 12월 31일에 법률 제 6589호가 제정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에는 부담금의 설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

---

8)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12), 제2편 제2장 11. 부담금, [http://edu.klaw.go.kr/StdInfInfoR.do;jsessionid=D6li6dBIgH6VNpwMTKE2HO57ylRtz5GeUKz2nimD1WIWX3qVqd0kFImc0c07jEWu?astSeq=2233&astClsCd=700101#stdinf\\_note2](http://edu.klaw.go.kr/StdInfInfoR.do;jsessionid=D6li6dBIgH6VNpwMTKE2HO57ylRtz5GeUKz2nimD1WIWX3qVqd0kFImc0c07jEWu?astSeq=2233&astClsCd=700101#stdinf_note2) (2014년 10월 20일 검색).

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sup>9)</sup>

## II. 법 제정 시 국회 검토보고서

「부담금관리기본법」안은 2001년 6월 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를 통해 제안되었다. 이 법안에 대한 국회의 검토보고서(정호영, 2001)<sup>10)</sup>는 2001년 현재 각 개별법에 의해서 약 100여개의 부담금이 운용되고 있었는데, 그 중 일부는 동일대상에 중복 부과되거나 존치의 필요성이 미흡하여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을 고려할 때, 부담금을 전반적으로 정비·개선하고 부담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하였다. 검토보고서(정호영, 2001)가 법안에 대해 지적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담금의 정의 조항에 관하여 법안 제2조의 정의규정에서 “부담금의 부과권한이”라는 부분을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로 하고,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로서 별표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부분을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최종법안에서 수정되었다.

둘째, 부담금의 부과요건 등의 규정에 관하여, 법안 제4조에서는 부담금의 부과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도록 선언하고 있는 바, 부담금도 국민의 재산권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러한 규정은 적절한 입법으로 평가하였고 이 조항의 단서에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로써 충분하고, “상위법령”이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모호하고 법률용

9) 기획재정부, 2013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13쪽.

10) 정호영(2001), 부담금관리기본법안 검토보고서, 국회운영위원회,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16850](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16850) (2014년 8월 17일 검색).

어로도 부적절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내역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토록”하는 규정에 대해 부담금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면에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입법이라고 평가하고 다만 원안에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 그 제출시기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정기국회개회일전까지”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넷째, 부담금운용의 평가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는 그동안 부담금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점검이나 평가시스템 없이 각 운영주체별로 운용됨으로써 동일대상에 대해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이 중복부과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주관부처에서 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부담금운용평가단 및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입법이라고 평가하면서 법안 제9조 제3항은 부담금심의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제2호에서 위원의 범위를 “부담금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1급 또는 2급 공무원”이라고 표현하여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화되어 있지 못하므로 법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밖에 부담금의 개별근거가 되는 법률을 부칙의 규정을 통해 일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입법의 효율성과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부

담금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고자 하는 그 취지를 감안할 때 부칙을 통한 다른 법률의 일괄개정은 적절하다고 평가하였고 부담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별표 중 폐지된 부담금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동 법안에 대해 적절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으며 다만 용어의 정의나 구체적인 표현에서 수정되어야 할 세부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안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의문이나 체계적인 수정이 요구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것들은 현재의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반영되어 있다.

### Ⅲ.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주요 내용

「부담금관리기본법」은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부담금을 설치할 수 없다는 부담금 설치의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부담금의 부과요건 등을 규정하여 부담금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등 부과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부과요건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이 위임한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5조에서는 부담금 부과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 신·증설시 심사(제6조),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 제출(제7조), 부담금운용평가 제도(제8조)와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작성 및 국회 제출(제6조의2)을 규정하고 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제6조1)에 의하면, 부담금을 신설(부과대

11) 제6조의2(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등) ①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

상을 확대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하는 경우 포함)하고자 하는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담금 신설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불합리한 국민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 신설시의 심사기준으로 첫째, 부담금을 신설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둘째, 부담금의 부과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셋째, 부담금 재원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넷째,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않을 것, 다섯째,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여섯째,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담금 신·증설에 대한 심사절차는, 부담금을 신·증설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심사를 거쳐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심사 요청을 하면, 제출된 계획서를 바탕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심사결과, 부담금의 신설이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법에 따라 계획서를

---

들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연도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 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운용계획서를 받으면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계획서 및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출한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12)에서 매년 전년도 부담금 부과실적 등 부담금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여 부담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 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부담금운용보고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작성지침에 따라 부담금운용보고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을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및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도록 하였고, 평가결과 부담금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 개정방안,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8조).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운용실태를 점검·평가하고 부담금 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를 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부담금운용평가단(이하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 
- 12) 제 7 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①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운용보고서를 받으면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운용보고서 및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은 부담금의 신설·폐지 및 제도개선에 관하여 관계전문가·경제단체·비영리민간단체·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목적·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및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운용평가단을 운영하는 경우, 재정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및 조세·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그 밖에 재정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5조).

「부담금관리기본법」 제9조에서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제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안전으로 제시된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전문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임기 2년 이내의 10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부담금 신설 뿐만 아니라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과 같은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한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안전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제10조에서는 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의 신설 및 폐



지 그리고 제도개선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청회를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신설, 부과, 심의 평가 및 제도개선사항까지를 포괄하는 90개가 넘는 부담금을 종합 관리 운영되고 있다.

## 제 2 절 부담금의 개념

### I. 법률상의 개념과 강학상의 개념

부담금의 개념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정의된 실정법상의 개념과 학문적으로 통용되는 강학상의 개념이 존재한다. 이 둘의 개념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기본법’상의 부담금 개념으로 강학상의 부담금 개념 사용의 적절성이 평가되기도 하고 반대로 강학상의 개념으로 ‘기본법’상의 부담금 정의 및 범위가 평가되기도 한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부담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13)</sup>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부담금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거나 부담금에 포함되는 용어로는 분담금, 부과금, 부가금, 예치금, 기금출연금, 기여금 등이 있다.<sup>14)</sup>

13)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 부담금의 부과요건 등.

14) 예치금은 정부가 특정 행동을 강제하기 위하여 금전적 부담을 지게 한 다음 정부가 의도한 행동을 하게 한 다음 정부가 의도한 행동을 하게 될 경우 금전적 부담을 해지시켜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기금출연금으로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공적

부담금 개념의 강학상으로는 “특정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sup>15)</sup> 또한 학문적으로 부담금은 “사용료(user fee), 사용자부담금(user charges), 목적세(earmarked taxes) 등으로 불리우며 정부 등 공적기관 서비스 공급의 대가로 사용자나 수익자가 직접 지불하거나 해당서비스와 연관이 깊은 재화, 서비스 사용 시 간접적 형태로 대가를 지불하는 금액”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배준호, 2005).<sup>16)</sup>

부담금평가(2013)에서는 부담금의 개념에 대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학상의 부담금과는 차이가 있고,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라는 다소 애매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 대상이 훨씬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7)</sup>고 하면서 ‘기본법’에서 별표에 의해 규정된 부담금이 반드시 강학상의 부담금 개념과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반대로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강학상의 개념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관리대상의 필요가 없는 것은 별표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기본법’상의 부담금과 강학상의 부담금의 개념 사이에 어떠한 포함관계나 연결의 체계성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부담금의 개념을 ‘기본법’에서 별표에 열거하여 규정된 부담금으로만 한정한다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자체가 그 의미가 약화될 뿐 아니라 어쩌면 ‘기본법’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얻은 부담금에 대해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순환논리로서 무의미한 것이 될 수도 있다.

---

자금상환기금 출연금 등이 있다. 손원익(2010), “우리나라 준조세 실태 및 정책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3쪽.

15) 김도창(1993), 일반행정론(하), 이준우외(2002) 21쪽에서 재인용.

16) 배준호(2005),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부담금 운영 실태: 한국적 특징의 모색”, *사회보장연구*, Vol. 21, No.2,

17) 부담금평가(2013). 297쪽.

따라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에서 부담금의 개념은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닌 강학상의 개념에서 부담금관리에 대한 체계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때 부담금에 대한 다양한 개념 논의와 부담금의 규정 및 관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 II. 특별부담금과 준조세

최근에는 공공복리행정의 다양하게 분화됨에 따라 특정한 사업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의 공익사업으로서 공용부담이 행하여지는 등 종래의 전통적인 부담금 개념정의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부담금이 등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부담금의 개념이 확대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1) 특별부담금

본래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과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관계로만 설명되지 않는 부담금들이 있다. 독일에서는 전통적인 부담금 이외에 좀 더 조세와 유사한 유형의 공과금을 특별부담금(Sonderabgaben)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 그 허용성에 대한 이론이 정립된 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특별부담금을 ‘특정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의 조달 또는 국가정책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금전급부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sup>18)</sup>

이러한 개념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는 수질개선부담금(헌재 1998.12.24. 헌가1, 2004.07.15. 2002 헌바42), 교통안전분담금(헌재 1999.01.28. 97헌가8), 카지노사업자 납부금(헌재1999.10.21. 97헌바84), 과밀부담금(헌재 2001.11.29. 2000헌바23), 국외여행자납부금(헌재 2003.01.30. 2002헌바5), 장애인고용부담금(헌재 2003.07.24. 2001헌바96), 문예진흥기금납입

18) 임현(2010), “헌행 부담금 제도의 법적 쟁점”, 토지공법연구 제8집, 406쪽.

금(헌재 2003.12.18. 2002헌가2), 방송수신료(헌재 2008.02.28.2006헌바70) 등이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sup>19)</sup>

그런데 부담금은 부담자의 시각에서 보면 조세와 큰 차이가 없다. 부담금은 조세와 마찬가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조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국민에게 담세능력에 따라 부과하는데 비하여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는 목적세와 유사하지만 목적세는 일반국민에게 광범위하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다르다.<sup>20)</sup>

그러나 통상적으로 조세와 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구분된다.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2013)에 의하면 첫째,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 비하여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부담금은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데 반해, 조세는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일반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한다. 셋째, 부담금은 사업소요 경비, 사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됨에 비하여 조세는 담세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된다.<sup>21)</sup>

특별부담금은 조세의 성격을 갖는 부담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그 헌법적 합치성을 인정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공적기관에 의한 반대급부가 보장되지 않는 금전급부 의무라는 점에서 조세와 유사하지만 특별한 과제를 위한 목적으로 특정집단에 대해 징수된다는 점에서

19) 박영도(2009), 부담금 부과요건등의 법정화 검토, “4.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성”, 19~34쪽.

20) 배준호(2005), 앞의 논문 p. 204.

21) 2013 부담금종합운용보고서, 5쪽

담세능력에 따라 징수되는 조세와는 다르다고 헌법재판소는 판시하고 있다.

## 2) 준조세

부담금과 조세와의 차이에 있어서 조세에 해당하는 부분, 즉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일반국민 또는 주민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담세능력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부담금에도 이러한 성격의 부담금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세 중 목적세는 특정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담금과 그 성질이 유사하나, 일반개인의 담세력을 표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특정 사업과의 특별이해관계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과 구분된다.<sup>22)</sup> 조세 외에 공과금, 부담금, 부과금, 예치금, 사용료, 수수료, 과징금, 과태료 등 국가로부터 부여되는 다양한 명목의 금전납부의무를 준조세(quasi-tax)라고 한다.<sup>23)</sup>

준조세는 부담금의 일부와 사회보험료,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 그리고 기부금의 일종을 포함한다. 이러한 것들은 개념상 준조세에 해당하지만 각각의 개념과 정의에서 부담금과 차이가 있다. 부담금은 특정 공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 부과되는 반면, 사회보험료는 피보험자들간의 연대적 배분 및 차등적 조절을 감안해서 부과되며 과태료, 범칙금 및 벌금 등은 특정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부과되는 부담금과는 차이가 있다.

22)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12) 부담금 참조.

23) 신영수(2007), 준조세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7쪽. 그러나 손원익(2010)에 의하면 사용료와 수수료는 재화나 요역의 공급이라는 직접적인 이득에 대한 보상에 해당되므로 준조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손원익(2010), 6쪽.

부담금은 조세와는 차이가 있지만 강제성을 띠는 점에서 준조세로도 불린다. 준조세는 주로 기업이 지게 되는 조세 이외의 부담과 관련된 개념으로 학문적 개념이며 실정법에 기초하여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기업이 생산활동을 위해서는 순수한 생산비용 이외에 조세나 조세를 제외한 여러 가지 부담을 지게 되는데 만약 강제성을 띠게 된다면 기업에게는 생산비용과 같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준조세의 개념에는 강제성의 정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 부담금과 관련된 유사 개념과의 차이

개 념	정 의	부담금과의 차이
사 회 보 험료	피보험자의 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사고에 의한 소득상실에 대하여 보험원리에 의거하여 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하여 피보험자와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금이 특정의 공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 부과되는 반면, 사회보험료는 피보험자들간의 연대적 배분 및 차등적 조절을 감안해서 부과됨
수수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 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요금	부담금이 특정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한 이해관계자에게 부과하는데 반해, 수수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개별적인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요금), 사용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재산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대가) 로서 부과됨
사용료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사용의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	
과태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일정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벌	부담금이 특정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한 이해관계자

개 념	정 의	부담금과의 차이
벌 금	국가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납부를 명령하여 그 금액 한도내에서 범죄인의 재산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에게 부과하는데 반해, 행정제재금은 재정수입의 목적이 아닌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또는 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부과됨
범칙금	일정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나,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금전벌	
가산금	일정한 행정법상의 급부의무 또는 작위의무를 진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지는 금전부담	
과징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상의 제재로서의 금전지급의무	
이행강제금	행정청이 일정기간 내에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정의 금액을 부과·징수할 것을 계고한 후 당해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벌	

자료: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2013), 7쪽

손원익(2010)<sup>24)</sup>은 부담금을 광의의 준조세와 협의의 준조세로 나누었다. 광의의 준조세는 기업이 순수한 생산비용 이외에 비자발적으로 지게 되는 금전적 부담에서 직접적인 반대급부의 성격으로 부담하는 것과 과태료 성격의 부담을 제외한 모든 부담으로 정의할 수 있다. 광의의 준조세에 포함되는 금전적 부담으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금 및 분담금 등 각종공과금, 사회보험료 그리고 강제성을

24) 손원익(2010), 우리나라 준조세 실태 및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떠는 기부금 등이 있으며 사용료와 수수료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직접적인 이득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므로 공과금에 해당하며 준조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원익(2010)은 광의의 준조세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범위를 축소하여 협의의 준조세로 정의하였다. 광의의 준조세 중 사업자의 부담이 사업자가 받게 되는 이득에 대한 보상이 아니며 사업자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것을 협의의 준조세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금 중 수익자 부담이나 원인자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사회보험료 중 기업의 부담분, 그리고 강제성을 띠는 기부금이나 성금 등이 협의의 준조세가 된다.<sup>25)</sup>

<표 5> 광의의 준조세의 종류

준조세의 종류	세부내용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금	각종 부담금, 분담금, 부과금, 부가금, 예치금, 기여금, 기금출연금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강제적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강제성 있는 정치자금

자료: 손원익(2010), 6쪽.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라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것은 헌법 제5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에 근거한 원칙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조세의 납세의무자, 납세요건사실, 납세표준, 세율, 과세표준의

25) 손원익(2010), 7쪽



신고, 세액의 납부, 결정, 경정처분, 행정구제, 벌칙 등은 모두 조세법률로써 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납세의무를 지지 않으며, 그런 의미에서 조세법률주의와 내적 통합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특히 국민은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대통령령 등 위임입법에 의해서는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적 보장을 요구한다.<sup>26)</sup> 부담금은 조세는 아니지만 부담금의 부과행위는 그 대상인 국민에 대하여 재산권의 침해를 야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37조<sup>27)</sup>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부과근거의 법률규정이 필요하다.

윤준승(2010)은 조세법률주의의 취지 및 연혁을 고려할 때 반대급부 없는 강제적 납부의무의 부과인 부담금에도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sup>28)</sup> 또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서<sup>29)</sup> 부담금의 설치 및 부과요건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조세법률주의가 부담금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준조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부담금의 영역에서 조세법률

26) 김철용 외,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1996), 88~89쪽.

27)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피리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8) 윤준승(2010), 조세법률주의 위반사례 및 개선방향, 국회예산정책처, 이 보고서는 부담금의 부과근거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위반사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개정과정에서의 위반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29)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부담금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주의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담금은 그 존재 자체가 법률에 근거해서 설치되기 때문에 법적 개념으로서 부담금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할 수 없다. 또한 준조세의 개념도 법적 개념이 아니라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준조세의 개념으로 부담금에 조세법률주의를 적용하여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부담금이 조세와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부과 대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과될 수 있는 금전적 의무인 만큼 부담금이 과연 그 원래의 목적에 맞게 설치되고, 부과근거가 적절하며 부과요율이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지 개별 부담금의 사례 등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평가를 위하여 준조세의 개념이 필요하다.

### 제 3 절 부담금의 기능

부담금은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된다. 부담금의 설치목적은 바로 부담금의 기능과도 관련되는 것이며 설치목적에 따른 부담금의 분류는 부담금의 기능의 종류라고도 할 수 있다.

#### I. 수익자부담에 의한 공공서비스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2013)에서는 부담금의 기능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공공서비스 창출과 바람직한 행위의 유도로 설명하였다.<sup>30)</sup> 우선 부담금은 기금이나 특별회계 또는 특정 공공기관의 수입으로 계상되어 그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특정한 공공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자나 공공사업으로부터 편익을 얻는 자 등에게 부과하여 해당사업의 시행과 재원을 확보한다. 이것은 공공서비스의 한계편익과 공공서비스의 한계비용을 일치시켜 공공서비스의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제학적 논리가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30) 기획재정부(2013), 2013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10쪽.

러한 이론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이론일 뿐 부담금이라는 특정 금전부과형태에 독특하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2013)는 부담금의 분류에서 첫 번째를, 이용자·원인자 부담금, 둘째 수익자부담금, 그리고 세 번째를 유도성부담금으로 분류하였는데<sup>31)</sup> 이렇게 원인자에게 관련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이러한 징수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억제하고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는 것과 배치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용자·원인자 원칙은 부담금 부과와 기본적인 원칙인데 수익자에 초점을 맞출 때에는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원충당의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에 대해 연구자에 따라 인적 공용부담으로서의 부담금<sup>32)</sup>, 공적목적에 위한 재정수입의 확충<sup>33)</sup>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인자에 초점을 맞출 때에는 특정 행위의 유도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II. 바람직한 행위의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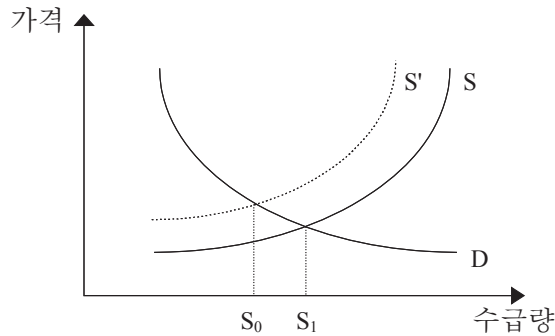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2013)는 부담금은 또한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가 나타날 때 외부 불경제(external diseconomy)를 시정하기 위해 부과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또는 법적으로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되는 것으로 현행 부담금중 일부는 행정법상의무이행 확보수단인 간접적 강제제도와 유사하게 국민의 금전적 부담을 수반하는 의무이행 수단의 측면도 있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31) 기획재정부(2014), 2013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9쪽.

32) 이준우 외(2002), 26쪽;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도 부담금을 인적 공용부담으로서의 부담금(이는 다시 수익자 부담금, 원인자 부담금으로 나뉘)과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부담금(이를 ‘유도적 부담금’이라고도 함)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33) 신영수(2007), 앞의 보고서 37쪽.

<그림 3>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부담금의 경제적 효과



자료: 부담금종합운용보고서(2013), 11쪽 그림34)

경제이론적 측면에서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실패를 해소하고 최적생산량의 수준으로 산출량을 변화시키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되는데 부담금종합운용보고서(2013)에서 위의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환경오염관련 부담금 및 교통체증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혼잡통행료 등이 외부효과, 이 경우 좀 더 정확하게는 외부불경제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부담금의 경우 재정충당의 목적이 아닌 바람직한 행위의 유도를 위해 부담금이 부과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그림은 부담금의 기능을 설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부과되는 교정과세(corrective taxation) 혹은 피구세(Pigouvian tax)를 설명하는 그림으로 조세의 기능이기도 하다.

34) 이 그림에서 사적한계비용에 따른 공급곡선을 S, 사회적한계비용에 따른 공급곡선을 S'이라고 할 때 사회적 최적 공급수준은 S<sub>0</sub>이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재화는 적정사회적 공급량(S<sub>0</sub>)을 초과하는 수준(S<sub>1</sub>)으로 공급되어 시장에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부담금을 부과하여 공급곡선을 S'으로 이동시키게 되면 사회적으로 최적수준인 적정 사회적공급량(S<sub>0</sub>)만큼 이 재화가 공급될 수 있는 것이다.

### Ⅲ. 문제의 제기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2013)에 의하면 부담금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 하에 특정 공공서비스를 위해 재원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바람직한 행위의 유도를 위해 부과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현재 운용되고 있는 부담금들은 전부 이러한 기능 중 하나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갖는 부담금과 같이 수익자 부담원칙이 미약하면서 특정행위를 유도하는 기능이 미약한 부담금들도 있다. 특별부담금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그 부과 근거를 획득한 부담금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특정 행위를 억제하거나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이라면 국민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기업의 기본적인 사업활동일 때 기업의 기본적인 사업에 부과되는 부담금등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며 특히 강제성이 수반될 때에는 납부자에게는 그 명칭이 조세이든 부담금이든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준조세’의 개념으로 부담금을 규정하고 평가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나타나게 된다.

부담금의 기능은 이론상으로는 명확하지만 실제 운용되고 있는 부담금들의 설치목적과 운영방식이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부담금의 사용이 이러한 기능과 효과가 극대화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즉 개념적인 정당성이 있다고 하여도 실제 운용되는 부담금의 사례 등에서 이러한 점들을 따져보아야 부담금 관리의 ‘효과’ 혹은 ‘실효성’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부담금 중 강제성을 갖는 부담금, 특정 행위와 연계되어 있지 않은 부담금, 그리고 사실상 고유목적 사업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일반적인 사업에 재원이 사용되는 부담금들, 이러한 성격을 갖는 부담금들 중 요율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고시 훈령 등에 명시되어 요율변경절차가 상대적으로 쉬운 기금들이 있다면 이에 대해 명확히 조사하여 문제점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부담금들이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서 말하는 그 기능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기능상 효과는 불문명한 채 재원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다.

## 제 4 절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법적 문제

### I. 관리대상 문제

부담금평가(2013)에 의하면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강화상의 부담금 개념과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sup>35)</sup> 어떤 경우에 어떤 근거로 일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즉 부담금의 성격을 갖는 것들 중 어떤 것이 ‘기본법’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어떤 것들이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일정한 원칙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없으며 이것은 각각의 부담금에 대한 판단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한다.

신영수(2013)<sup>36)</sup>는 예치금 및 보증금성격의 부담금의 경우 굳이 법정 부담금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을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예치금이나 보증금 성격의 부담금은 납부의무자가 납부하는 부담액이 개발 등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이나 농지, 하천 등을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되므로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임의로 부

35) 기획재정부, 2012 부담금평가(2013), 397쪽.

36) 신영수(2013), “현행 준조세 통제규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부담금, 수수료, 기부금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7권 제1호, 413쪽.

담금을 조정할 수 없으며 또한 다른 부담금처럼 부과율의 인상 등이 없으므로 부과율과 관련하여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치금이나 보증금성격의 부담금은 동법 제3조 별표에 의해 부담금으로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 이러한 부담금으로는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복구비용예치금,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복구비용예치금,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소요공사비예치금, 자연공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예치금 등이 있다(신영수 2013).<sup>37)</sup>

또한 신영수(2013)는 부담금으로 규율해야 하지만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관리되지 않는 금전납부의무가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댐주변지역지원비용출연금의 경우 국토해양부 소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법 제4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발전판매수입금의 6%를 출연하고 있는데다 출연에 반대급부가 없고 출연금 등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제에 사용되어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으며 징수목적과 납부의무자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과 사실상 동일한 성격의 금전납부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부담금관리기본법」안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sup>38)</sup>(2001)에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국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부담금의 정의를 별표에 규정하는 것만으로 한정할 경우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을 이 법에서 지칭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부담금을 별표에 의해서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sup>39)</sup>

37) 신영수(2013), “현행 준조세 통제규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부담금, 수수료, 기부금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7권 제1호 403-434. 413쪽

38) 정호영(2001), 부담금관리기본법안 검토보고서, 국회운영위원회

39) 심사보고서는 법안 제2조의 정의규정에서 “...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로서 별표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행 법률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에 의하면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신영수(2013)가 지적한 댐주변지역지원비용출연금의 경우 사실상 부담금임에도 불구하고 법상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별 예치금 혹은 출연금이 ‘기본법’상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 그렇지 않는지의 개별적인 판단여부가 아니라 ‘기본법’상의 관리대상 부담금과 강학상의 개념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 포함여부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부담금평가(2012)에서도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부담금의 경우 정기적인 부담금 평가를 통하여 타당성과 실효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관리대상이 아닌 유사부담금의 경우 적절한 통제장치가 없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따라서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별표에 포함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조세 외에 국민에게 금전지급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조사 검토하고, 별표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경우 해당 부담금의 폐지 등 제도개선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다.<sup>40)</sup>

## II. 관리기준 문제

부담금은 조세와 구별되지만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규정되고 관리되는 부담금들은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갖는 것들도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 각각 정의된 대로 준조세의 성격을 갖는 부담금들도 있다. 즉 2013년 현재 96개의 부담금들이 운용되었지만 이 중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한 부담금, 특정행위의 유도를 위한 부담금, 재정

---

40) 기획재정부(2013), 2012 부담금 평가, 100쪽.



충당목적의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갖는 부담금,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선택할 수 있는 부담금, 선택할 수 없이 거의 강제성을 갖는 부담금 등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부담금들이 함께 관리되고 있다.

기본법상 관리되는 부담금들을 법적 성격에 의해 분류하면 조세성 부담금과 비조세성 부담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비조세성 부담금을 수익자 부담금, 조세성 부담금을 재정충당특별부담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부담금들은 대부분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귀속되지만 조세성 부담금은 불특정 다수에게 부과되고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며 강제성이 강해 조세와 흡사하여 납부 저항이 있고, 비조세성 부담금은 원인자가 자신의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제성이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다. 길용원(2014)<sup>41)</sup>은 이렇게 다양한 부담금들을 동법 제2조 별표에 의해 모두 동일한 원리에 의해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조세성 부담금의 경우 반대급부 없는 강제적 징수로서 조세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조세와 같은 강력한 통제장치가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행정당국에서 조세 저항 등으로 조세의 신설보다는 국민의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고 징수나 집행과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부담금의 형태를 선호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성 부담금의 경우에는 그 신설이나 징수, 사용내역 및 부과근거 및 요율 등에 대해 거의 조세와 유사한 절차와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먼저 준조세성 부담금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따로 분류한 다음 부담금의 목적 및 기능에 따라 유형별로 부담금의 관리기준을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길용원(2014)은 특별부담금을 조세와 같이 별도의 공과금의 하나로 법 이론적으로 체계화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sup>42)</sup>

41) 길용원(2014), “부담금 규제의 조세법적 고찰”, 조세와 법, 제7권 제1호, 12쪽.

42) 길용원(2014), 앞의 글, 11쪽.

임현(2010)<sup>43)</sup>도 부담금 정비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2001년에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부담금 제도는 여전히 여러 가지 개념적·입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로 이질적인 성격을 갖는 공법상 금전납부의무가 하나의 개념 하에 논의되게 되어 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원칙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 부과원칙 및 부과요건, 신설에 대한 심사 등 원칙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부과요건이나 징수절차 등은 개별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부담금의 정당화 근거에 대한 판단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유사한 유형의 부담금에 대해서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부과요건 등에 대한 표준입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sup>44)</sup> 이것은 박영도(2009)<sup>45)</sup> 및 부담금평가(2013)<sup>46)</sup>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는 문제이다.

2013년 ‘기본법’상 96개의 부담금 중 손원익(2010)의 분류에 의해 강제성이 강한 협의의 준조세에 해당하는 부담금들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22개가 해당되며 전체 부담금 부과총액의 25% 이상을 차지한다(<표 6> 참조). 이준우 외(2002)에서는 IMF의 GFS(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Manual)에 의해 수질개선부담금도 조세성 부담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였다.<sup>47)</sup>

이러한 조세의 성격이 강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부담금들과 구분하여 「부담금관리기본법」상에서 별도의 좀 더 강화된 관리

43) 임현(2010), “현행부담금 제도의 법적 쟁점” 토지공법연구 제48집, 401쪽.

44) 임현(2010), 앞의 글, 408쪽.

45) 박영도(2009), 앞의 글, 14쪽.

46) 부담금평가(2013), 36쪽.

47) 이준우(2002)에서는, 이밖에 조세성 부담금으로 국외여행자납부금(현출국납부금), 회원제골프장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2015 폐지예정), 농산물수입이익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산물수입이익금(양곡관리법) 등이 조세성 부담금으로 분류된다고 하였다.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특별부담금으로서 조세의 성격이 강한 부담금은 조세와 그 성격이 사실상 유사하므로 부담금 형태를 폐지하고 조세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에 대해서도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6> 협의의 준조세의 성격을 갖는 부담금

(단위: 백만원)

	기금명	귀속회계기금	부과근거법률	요율규정	2013 부과액
1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중앙정부기금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23조	1,533,328
2	환경개선부담금	중앙정부 특별회계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법률 제10조	1,502,440
3	국제빈곤퇴치 기여금	공공기관	한국국제협력단법	법률 제18조의2	22,004
4	재건축부담금	국토교통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조	
5	국제교류기여금	중앙정부기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5조별표	38,134
6	출국납부금	중앙정부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	212,324
7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중앙정부기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8	영화상영권 입장권 부과금	중앙정부기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 제1항	45,210
9	해양심층수이용 부담금	중앙정부기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 36조	113
1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	공공기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	34,435
11	축산물 수입이익금	중앙정부기금	축산법	농식품부고시 제2013-84호	1,446

제 3 장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기금명	귀속회계기금	부과근거법률	요율규정	2013 부과액
12	지하수이용 부담금	기초 지자체	지하수법	조례	11,384
13	농산물수입 이익금	중앙정부기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불명확	8,759
14	수산물수입 이익금	중앙정부기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불명확	11,325
15	회원제 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중앙정부기금 / 공공기관	국민체육진흥법	불명확	2,565
16	임금채권보장 기금 부담금	중앙정부기금	임금채권보장법	불명확	367,034
17	장애인 고용부담금	중앙정부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불명확	326,515
18	농산물가격안정 기금 납입금	농림축산 식품부	인삼산업법	불명확	
19	농산물수입 이익금	중앙정부기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불명확	
20	양곡수입이익금 (땅콩, 감자)	중앙정부기금	양곡관리법	불명확	
21	광물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산업통상 자원부	광업법	불명확	
22	연초경작지원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기획재정부	담배사업법	불명확	
<b>합 계</b>					<b>4,117,016</b>

주: 손원익(2010)의 분류에 의한 협의의 준조세

### Ⅲ. 헌법 합치성 문제

「부담금관리기본법」이 부담금의 설치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본법’에서 열거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외의 다른 부담금의 성격을 갖는 부과금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기본법’에서 정해져야만 부담금의 지위를 갖는 것도 아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판례가 많이 있었고 대부분은 특별부담금의 개념을 통해 헌법적 허용성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학교용지 부담금의 경우 이미 2005년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현재 계속 존치하고 있다.

#### 1.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의해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사업지역 10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이라고 분류하여 헌법적 허용성에 대한 심사를 행하여 동 부담금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sup>48)</sup> 2004년 7월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을 그 부과목적과 기능에 따라 재정조달목적 부담금과 정책실현 목적 부담금으로 구분하였는데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은 순수하게 재정조달목적만 가지는 것이며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은 부담금의 부과 자체로 추구되는 특정한 사회·경제정책실현 목적으로 가지는 것이라고 하였다.<sup>49)</sup> 헌법재판소는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의 경우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부과될 수 있

48) 현재 2005.3.31. 2003헌가20.

49) 신영수(2007), 준조세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40쪽.

다는 점에서 조세와 매우 유사하므로, 헌법 제38조가 정한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법 앞의 평등원칙에서 파생되는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 헌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에 의한 재정감독권과의 관계에서 오는 한계를 고려해야 하고, 나아가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의 한계(비례성 원칙) 및 특히 학교용지 부담금의 경우 여기에 덧붙여 헌법 제31조 제3항의 의무교육의 무상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정책실현목적의 부담금의 경우 헌법의 기본적 재정질서와는 별개의 문제로 개별행위에 대한 명령·금지 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수단을 사용하는 대신 부담금이라는 금전적 부담의 부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국민의 행위를 유도하고 조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정책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담금을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다.<sup>50)</sup>

2005년 3월 24일 개정된 특례법에 대한 위헌제청에서 헌법재판소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고 있는 특례법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의 본문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2인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개발사업자가 부담금에 대한 중국적인 부담을 수분양자에게 전가할 것이 분명하므로 재원마련의 최종적인 부담자가 의무교육의 대상인 수분양자이므로 개발사업자를 부과대상으로 하는 개정학교용지 부담금제도 역시 의무교육에 무상성에 반한다고 보고, “의무교육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그 부과대상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부담금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반한다.”고 보았다.<sup>51)</sup> 이후 2013년과 2014년에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50) 헌재 2005. 3. 31. 2003헌가20

51) 헌재2008.09.25., 2007헌가9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민형기 의견

관한 특례법」(2007.12.14.법률 제867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위헌판결이 결정되었으나, 동 법률조항은 2014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였다.

학교용지부담금은 2005년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후 부과대상을 개발사업자로 개정하였으나 여전히 위헌판결이 내려져있으며 2014년 12월 현재 동 조항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은 현재 존치하고 있는 부담금에 대한 관리·운용에 대한 규정 뿐 아니라 학교용지부담금에서와 같이 현행 운용되는 부담금이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을 때 현재 판결 이후 시점부터 관련법 개정애 대한 의무기준을 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2.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지위

길용원(2014)<sup>52)</sup>에 의하면 판례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부담금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판례의 이러한 태도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실제 부담금이 규정되어 있는 개별법들과의 관계에서 개별법이 우선된다는 입장으로서 이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이 개별법보다 우위에 없다면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없다는 모순을 초래하게 되어 타당하지 못하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확실한 우위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길용원(2014)은 부담금에 관한 다른 법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 법에 따른다는 규정의 신설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곤(2013)<sup>53)</sup>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특별부담금

52) 길용원(2014), 앞의 글, 23쪽.

53) 김진곤(2013),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과제의 수행과 그 수단 선택의 한계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용지부담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3권4호 pp.33-59

등의 형태로 차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적정성에 대해 이러한 논의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들은 부담금평가에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은 개념상의 모호함과 함께 헌법재판소와 판례에 대해서도 무엇이 우선이 되는지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부담금평가(2012)<sup>54)</sup>에서는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이 개별 법령에 규정된 부담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명실상부한 기본법으로 위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7>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 3 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담금에 관한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IV. 부과요건의 법정화 문제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부담금의 ‘부과요건’으로 규정되어야 할 내용은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다. 부과요건의 법정화 문제는 이준우 외(2002), 신영수(2007), 박영도(2009) 등 여러 연구들을 통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윤준승(2010)<sup>55)</sup>은 부담금에도 원칙적으로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54) 기획재정부(2013), 2012 부담금평가, 105쪽.

55) 윤준승(2010), “조세법률주의 위반사례 및 개선방향”, 국회예산정책처, 11쪽.



이와 관련하여 윤준승(2010)은 비용 부담의 주체만 명시하고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이 없는 부담금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 26조<sup>56)</sup>에 의해 설치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부담금을 예로 들었다.

동법 제26조에 의하면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없으며 하위법령에도 위임되어 있지 않다. 2010년에 지적된 이 문제는 2014년 12월 현재 그대로 남아 있다. 윤준승(2010)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르면 과세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반드시 법률에서 정해져야 하며, 이러한 근거조항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부과근거 조항은 동 조항을 통해 납부의무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부담이 가해질 것인지에 대해 누구라도 알 수 있을 정도의 명확성을 필요로 한다. 법률은 기본적으로 명확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지만 특히 조세와 관련한 부분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명확성의 정도가 보다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는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는 부담금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부담금의 부과근거 역시 법률로서 규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sup>57)</sup> 고 주장하면서 2010년 현재 부담금의 부과요건이 불명확한 부담금들이 매우 많다고 지적하였다.<sup>58)</sup>

5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비용부담의 원칙)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7) 윤준승(2010), 앞의 글, 11쪽.

58) 윤준승(2010)은 부담금의 근거법률을 점검한 결과 부과주체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는 없었으나 부과목적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는 37건으로 나타났고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법률에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44건, 부과요율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48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정기준 및 산정 방법, 부과요율에 대해 모두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33건에 이르렀다. 부담금의 규모를 예측하게 해주는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부과요율’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을 해 둘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경우가 33건이라고 지적하였다.

기반시설 설치비용부담금은 2013년 평가보고서에서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관리대상에서 제외를 검토해야 한다고 평가되었으며,<sup>59)</sup> 2015 부담금운용계획서에서는 동 기금을 별표에서 제외되도록 추진할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동 부담금을 투명하게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2006년 이후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관리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던 문제가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무엇이 해결되는 것인지 의문이 된다.<sup>60)</sup>

## V. 부과요건 현황

이 글에서는 부담금의 실제 규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과요율의 구체적인 산식을 모든 부담금에 대해 점검하였다.<sup>61)</sup>

96개의 부담금 중에서 명확한 부과요율이 법률에 규정된 경우는 환경개선부담금 등 10개이며 부과총액은 4.3조이다(<표 8> 참조). 부담금의 부과요율이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된 부담금은 개수로는 약 10.4%에 불과하다. 이중 중앙정부기금으로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있으며 2013년 부과총액은 1.53조원에 달한다. 부과요율이 법률에 명시된 기금들은 대부분 부과총액이 1천억원이 넘는 대형 기금들이며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2013년 부과액이 220억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다. 법률에 부과요율이 명시되어 있으나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중지로 징수실적이 없었다.

부담금요율이 시행령에 명시된 부담금은 40개로 가장 많으며 부과금액도 총 6.4조에 달한다(<표 9> 참조). 부담금요율이 시행령에 명시

59) 부담금평가(2013), 351쪽.

60) 부담금운용계획서(2015), 599쪽.

61)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범위로 정한 것은 산정방식을 분류하였고 실제 구체적인 공식이나 산출식이 분명하게 명시된 경우만을 부과요율로 간주하고 실제 이러한 산식이 명시되어 있는 근거를 점검하였다.

된 부담금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 판매부과금(약 2.1조원)과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약 1.9조원)은 2013년 부과총액이 약 2조원의 대형기금이며 10개가 1천억원 이상이다.

또한 부담금 요율이 시행규칙에 명시된 부담금은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등 7개로 부과총액은 약 2.1조인데(<표 10> 참조) 이중 5개가 중앙정부기금이며 신용보증기금출연금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 그리고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이 약 1.9조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부과요율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고시 및 훈령에 명시된 부담금은 21개로 부과총액은 2.95조원이다(<표 11> 참조), 부과요율의 구체적인 산출식이 없는 부담금은 농산물수익이익금 등 8개이다(<표 12> 참조).

반대급부가 없고 강제성의 정도가 비교적 강한 협의의 준조세의 경우 전체 부담금중 22개가 해당되며 이들 부담금의 부과총액은 4.1조원이다(<표 6> 참조). 이러한 준조세의 성격을 갖는 부담금의 내역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4개의 부담금만이 부과요율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국제교류기금 등 6개의 기금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축산물수익이익금은 고시에 그리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조례에 부과요율이 명시되어 있다.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며 중앙정부기금에 귀속되는 기금으로서 부과요율이 고시에 명시된 경우로 임금채권보장기금부담금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부담금 부과에 근거가 부담금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은 담배 한갑당 부과액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부담금은 이를 시행령 이하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 근거하는지는 「부담금관리기본법」상으로는 불분명하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 부담금이나 바람직한 행위의 유도를 위해서 국민이 스스로 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담

금이 아닌 특별부담금이나 조세성 부담금의 경우 국민이 납부 여부를 회피할 수도 없고 또 수익자 부담의 원리도 약한 부담금의 경우 국민에게는 조세나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의 목적이나 기능상의 구분 없이 각 개별법에서 개별적으로 담당자가 임의대로 부과요율을 명시할 법령을 임의대로 정할 수 있다면 이는 부담금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떤 부담금이 어떤 이유로 인해 부과요율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 이하 혹은 조례나 고시에 명시할 수 있는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기본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담금평가(2012)<sup>62)</sup>에서도 “최근 지방분권정책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요건 등을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에 전면 위임하는 사례가 많고 부처의 행정규칙(고시, 훈령 등)에 규율하고 있는 사례가 많으므로, 부과요건 등은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아 예외적으로 고시 등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63)</sup>

## VI. 소 결

이제까지 2013년 현재 운영되는 부담금의 부과 근거에 대해 살펴보았다. 96개의 부담금 중 비교적 부과의 강제성이 강하고 그 규모가 커서 국민에게 부과하는 부담이 큰 기금들은 요율의 산정규칙이나 변경 절차가 엄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금으로서 여유자금이 증가하고 있는 부담금 중 부과요율이 명확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민생

62) 기획재정부(2013), 2012 부담금평가, 104쪽.

63) 이어서 부담금평가(2012)는 이는 부담금 심사시 심사대상이 너무 많고 지방자치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가능하나, 부담금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로 도입되는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언급하고 있다.

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부담금의 변경이 국회의 심사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시의회를 거쳐 쉽게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표 8> ~ <표 12>에서 부담금을 부과요율의 근거 및 형태로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규모가 크고 강제성이 있는 기금이면서 부과요율이 산식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담금, 그리고 중앙정부기금으로서 여유자금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부담금이 줄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기금, 그리고 그 규모가 크며 부과요율은 명확하게 되어 있으나 그 근거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몇 사람의 관계자들의 결정으로 요율변경이 용이한 부담금의 경우 부적절한 사례가 없는지 구체적인 부담금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된 지 14년이 되었고 그동안 법률의 개정을 통해 부담금의 관리체계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개별 부담금들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면 이 부분들을 조사하여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추가적으로 기준을 정해주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부담금의 관리 및 운용이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더라도 부담금 운용상의 문제가 여전히 발견된다면 역시 이를 통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개선방향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이 부담금의 부과요건 및 요율규정이 법률에 있는 것이 항상 더 좋고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수록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반화를 할 수는 없다. 다만 각 요율규정이 존재하는 법령들의 성격은 개별기금의 특성으로 정해질 것인데, 이러한 요율규정들로 인해 구체적으로 기금의 운용상의 문제점들이 나타날 때 그러한 규정의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법적 문제점들은 그 관리운용상의 문제가 나타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의 원인과 개선방안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

제 3 장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음 장에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관리하는 부담금들의 관리·운용상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8> 부과요율이 법률에 명시된 부담금

	기금명	귀속회계/기금	부과근거법률	요율규정	2013 부과액 (백만원)
1	환경개선부담금	중앙정부 특별회계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법률 제10조	1,502,440
2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중앙정부 특별회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특별 조치법 제21조 1항	214,868
3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및 분할 납부이행보증금	중앙정부 특별회계	산지관리법 제19조	법률 제19조	123,182
4	개발부담금	중앙정부 특별회계 / 기초지자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법률 제8조, 제13조	333,203
5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중앙정부기금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법률 제23조	1,533,328
6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광역지자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1조의7	특별법 제11조의3	138,246
7	학교용지부담금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특별법 제5조의2	245,805
8	교통유발부담금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40조	법률 제37조	205,986
9	국제빈곤퇴치 기여금	공공기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의2~3	법률 제18조의2	22,004
10	재건축부담금	국토교통부	재건축초과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법률 제12조	-
<b>총 계</b>					<b>4,319,062</b>

&lt;표 9&gt; 부과요율이 시행령에 명시된 부담금

	기금명	귀속회계/기금	부과근거 법률	시행령	2013 부과액 (백만원)
1	생태계보전 협력금	중앙정부 특별회계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38조 1항, 2항	85,769
2	수질개선부담금	중앙정부 특별회계	먹는물관리법 제31조	제8조	18,786
3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중앙정부 특별회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4조~26조	제25조 1항 별표2	12,845
4	수질배출부과금	중앙정부 특별회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1조, 제45조	93,318
5	재활용부과금	중앙정부 특별회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7조, 제28조	16,127
6	소음부담금	중앙정부 특별회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0조	7,944
7	대기배출부과금	중앙정부 특별회계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제24조 제28조	9,787
8	재활용부과금 (전기전자제품)	중앙정부 특별회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1,694
9	총량초과부과금 (수도권 대기)	중앙정부 특별회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3조	27
10	총량초과부과금 (금강수계)	중앙정부 특별회계	금강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2조 별표2	10.8
11	회수부과금 (전기·전자제품)	중앙정부 특별회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21조의5	629

제 3 장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기금명	귀속회계/기금	부과근거 법률	시행령	2013 부과액 (백만원)
12	폐기물부담금	중앙정부 특별회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1조 별표2, 부칙 제19971호	117,442
13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의 수입 판매부과금	중앙정부 특별회계	석유및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제18조~제19조의2, 제37조	제24조	2,054,832
14	총량초과부과금 (낙동강수계)	중앙정부 특별회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221
15	과밀부담금	중앙정부 특별회계 / 광역시자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내지 제15조	제18조 별표2	45,853
16	전력산업기반 기금 부담금	중앙정부기금	전기사업법	제36조	1,891,334
17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 특별기여금	중앙정부기금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	제16조의4, 별표1의2	-
18	농지보전부담금	중앙정부기금	농지법 제38조1항, 6항	제47조2항, 제53조1항, 2항	713,889
19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중앙정부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5조	시행령 별표2	333,013
20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중앙정부기금	관광진흥법 제30조 / 제30조	제30조	227,265
21	출국납부금	중앙정부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1조의2	212,324
22	외환건전성 부담금	중앙정부기금	외국환거래법 제3조1항, 제11조의2~3, 제13조 등	제21조의3~ 제21조의4 별표1	200,665
23	원자력연구 개발사업 비용부담금	중앙정부기금	원자력진흥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176,579



제 4 절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법적 문제

	기금명	귀속회계/기금	부과근거 법률	시행령	2013 부과액 (백만원)
24	공적자금상환 기금 출연금	중앙정부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 4항, 5항	제5조1항, 2항	82,926
25	영화상영권 입장권 부과금	중앙정부기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9조의4 제1항 제2호	45,210
26	국제교류기여금	중앙정부기금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의 별표 8,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제5조 별표	38,134
27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중앙정부기금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제33조	제27조	15,145
28	해양생태계보전 협력금	중앙정부기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1조	제26조1항	8,411
29	해양환경개선 부담금	중앙정부기금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	제25조, 제25조의2	3,845
30	특정물질 제조 수입 부담금	중앙정부기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제10조의4	1,457
31	해양심층수이용 부담금	중앙정부기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41조	제32조, 제36조	113
32	수산자원조성금	광역시자체 / 기초지자체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 / 제44조4항	제44조4항 별표14	1,060
33	지역신용보증 재단 및 신용 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공공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3항 내지 5항	제5조의3 제1항 별표	204,802
34	방제분담금	공공기관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	제54조 별표9	18,567
35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공공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법 제14조의2	제9조	17,555
36	시설부담금 (산업입지)	공공기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1조	259

제 3 장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기금명	귀속회계/기금	부과근거 법률	시행령	2013 부과액 (백만원)
37	총량초과부과금 (영산강, 섬진강 수계)	환경부	영산강 섬진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2조 별표2	-
38	총량초과부과금 (기타수계)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	제10조 별표2	-
39	총량초과부담금 (한강수계)	환경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제6조의5	-
40	시설부담금(물류 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4조5항	-
<b>총 계</b>					<b>6,430,573</b>

<표 10> 부과요율이 시행규칙에 명시된 부담금

	기금명	귀속회계/기금	부과근거법률	시행규칙	2013 부과액 (백만원)
1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중앙정부기금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3항	제1조 내지 제3조	824,093
2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 출연금	중앙정부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	제3조, 제4조, 별표	613,069
3	기술신용보증 기금 출연금	중앙정부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3조	제3조 제5조, 별표	473,724

제 4 절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법적 문제

	기금명	귀속회계/기금	부과근거법률	시행규칙	2013 부과액 (백만원)
4	주택담보노후 연금보증 계정 출연금	중앙정부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3	제3조 별표, 제5조, 제6조	1,287
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기금 출연금	중앙정부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조, 제4조	제1조의2 제2항	200,984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	공공기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제37조	제11조	34,435
7	수익자부담금 (댐건설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9조	-
<b>총 계</b>					<b>2,147,592</b>

<표 11> 부과요율이 고시, 훈령 및 조례에 명시된 부담금

	기금명	귀속회계/기금	부과근거법률	요율규정	2013 부과액
1	안전관리부담금	중앙정부 특별회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	안전관리 부담금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128,580
2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중앙정부 특별회계 / 공공기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환경부 고시 제2013-375호	29,423

제 3 장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기금명	귀속회계/기금	부과근거법률	요율규정	2013 부과액
3	원인자부담금 (도로법)	중앙정부 특별회계	도로법 제76조 / 제76조	조례	39.7
4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중앙정부기금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67호	367,034
5	장애인 고용부담금	중앙정부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5호	326,515
6	대체초지조성비 (초지법)	중앙정부기금	초지법 제23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308호	1,211
7	축산물 수입이익금	중앙정부기금	축산법 제45조 / 제45조	농식품부 고시 제2013-84호	1,446
8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중앙정부기금	방송통신발전기 본법 제25조	분담금 고시	187,043
9	농산물수입이익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앙정부기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22조	농식품부 고시 제2014-63호, 제2014-59호, 제2014-62호, 제2014-60호, 제2014-61호	8,759
10	물이용부담금 (한강수계)	중앙정부기금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환경부 고시 제2010-137호	485,214
11	물이용부담금 (금강수계)	중앙정부기금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환경부 고시 제2012-149호	111,855
12	물이용부담금 (낙동강수계)	중앙정부기금	낙동강 수계물 관리 및 주민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환경부 고시 제2013-106호	230,143
13	물이용부담금 (영산강, 섬진강 수계)	중앙정부기금	영산강 섬진강 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30조	환경부 고시 제2012-13호	83,540

제 4 절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법적 문제

	기금명	귀속회계/기금	부과근거법률	요율규정	2013 부과액
14	혼잡통행료	광역지자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제7조	15,044
15	원인자 부담금	지자체	수도법 제71조	조례	249,880
16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수익자 분담금	지자체	지방자치법 제138조	조례	31,873
17	원인자부담금	지자체	하수도법 제61조 1,2,3항	조례	619,974
18	지하수이용 부담금	지자체	지하수법 제30조의2,3	조례	11,384
19	운항관리자비용 부담금	공공기관	해운법 제22조6항	여객선운항 관리비용징수에 관한 고시 제3조	7,099
20	시설부담금 (택지)	공공기관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72호	5,329
21	원자력관계사업 자 등의 비용부담금	공공기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원자력안전위 원회 고시 제2013-56호	52,454
<b>총 계</b>					<b>2,953,840</b>

<표 12> 산출식이 존재하지 않는 부담금

	부담금명	근거법률	설치목적	산정기준	산출식	비 고
1	양곡수입 이익금 (쌀)	양곡 관리법 제13조의2	공급과잉기조와 시장 개방 폭 확대 전망 등 으로 쌀값 하락을 우 려,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 도모	국내가격과 수입 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입찰자가 제시한 금액	없음	
2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납입금	인삼 산업법 제20조 제3항	WTO협정에 따른 인 삼류 양허세율로 수 입하는 경우, 수입가 격과 국내가격의 차 액 범위내에서 수입	수 입 차 액 금 의 범 위 (국 내 가 격 - 수 입 가 격) 이 내 에 서 입찰자가 제 시한 금액	없음	

제 3 장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부담금명	근거법률	설치목적	산정기준	산출식	비 고
			이익금 부과, 징수하여 인삼진흥에 필요한 시책 수립			
3	공공시설 관리자 비용 부담금	도시 개발법 제57조 제1항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익을 받는 공공시설관리자가 있는 경우,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동 사업비용으로 충당	당해 도시개발에 사용된 비용	부 담 비 용 = { 도 시 개 발 총 소 요 비 용 - ( 조 사 · 측 량 비 + 설 계 비 + 관 리 비 ) } × 1/3	산출식은 존재하지만 현재, 근거법률인 도시개발법 제57조 제1항 삭제, 14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 폐지의결
4	기반시설 비용 부담금	도시 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계획 추진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관련규정 없음	없음	부 담 금 사용계획상 부담금 관리기본법 별표에서 삭제 예정
5	농산물 수입 이익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WTO협정에 따른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산물의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액 범위내에서 수입이 이익금 부과, 징수하여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 재원으로 활용	수입차익금의 범위(국내가격-수입가격) 이내에서 입찰자가 제시한 금액	없음	일몰제 대상 처리 계획 및 신규 일몰제 도입 가능성
6	양곡수입 이익금 (땅콩, 감자)	양곡 관리법 제13조의2	WTO협정에 따른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산물의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액 범위내에서 수입이익	수 입 차 익 금 의 범위 ( 국내 가격 - 수입 가격 ) 이내에서 입찰자가 제시한 금액	없음	일 몰 제 대상 처리 계획 및 신규 일몰제 도입가능성

	부담금명	근거법률	설치목적	산정기준	산출식	비 고
			금 부과, 징수하여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 재원 으로 활용			
7	연초경작 지원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담배 사업법 제25조의3	담배제조업자로부터 출연을 받아 연초경 작자의 영농기술개 발 지원	(구)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의한 한 갑당 15원 부과하 는 산정 기준은 08년 삭제	없음	연초경작 자의 영농 기술개발 을 위하여 관련 규정 존치
8	광물수입 부과금 및 판매 부과금	광업법 제87조	광물 수급 및 가격 안정과 광업 개발촉 진 및 광해 방지 사 업 지원	미제정	없음	09.1월 폐지법안 이 상정되 기도 하였 으나 해외 자원개발 사업 재원 마련 의 근거조항 이 된다는 데 대하여 폐지안 부 결, 현재까 지 존치 / 부처의 입 장도 존치 의견

### 제 5 절 부담금 관리 · 운용체계 평가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목적은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중 부담금의 설치 및 공정

성에 관한 사항들이 부과 근거 및 형평성에 관한 사항들로서 법적인 관점에서의 기본적인 사항을 말한다면, 부담금의 운용과 국민의 부담의 최소화 및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들은 부담금의 관리·운용의 효율성에 관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즉 첫 번째 관점이 설치 및 부과 근거에 관한 법적 개념과 관련된 것이라면 두 번째는 설치된 부담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경제학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제1조 목적에 의하면 동 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만일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설치·운용되고 있는 부담금들이 중복부과 문제가 지속되고 있거나, 부담금평가에서 오래전에 지적된 문제들임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 아니면 특정 유형의 부담금들이 요율규정이 부정확하며 법률이나 법률규칙이 아니나 지자체의 조례 혹은 고시 등에 명시된 부과요건 등이 부과주체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거나, 혹은 특정 부담금들이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한다면 이는 부담금의 설치 및 부과 근거에 관한 공평성과 투명성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부담금의 관리·운용상의 문제 혹은 부담금 제도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로서 에 관한 문제로서 「부담금관리기본법」과 시행령 등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상에서 관리되고 있는 부담금 운용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들과 현재의 자료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제기되어 왔다.

## I. 유사·중복 사업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부담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



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담금 사업의 유사·중복문제는 단지 부담금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앙정부기금, 지방정부기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에도 근본적인 유사·중복 사업의 문제들이 존재한다. 부담금의 사업의 유사·중복문제는 부담금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제기되었다. 이준우 외(2002)<sup>64</sup>, 박인화(2007, 2010), 김은경(2009)<sup>65</sup>, 신영수(2013)<sup>66</sup> 뿐 아니라 부담금평가(2013)에서도 유사부담금의 문제가 논의되었다.

유사·중복문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부과 목적과 대상이 유사한 경우, 부과 목적은 다르나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그리고 부과대상은 다르지만 사업의 목적과 운영이 유사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1) 부과 목적이 유사한 경우

우선 부과 목적과 대상이 유사한 경우로 2013년 현재 운용되고 있는 부담금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수질부분에서 수질배출부과금과 부과매체 및 부과 목적이 동일하며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배출부과금과 부과매체(대기) 및 부과목적(대기질개선)이 동일하다. 또한 부담금과 다른 부담금 이외의 항목과의 중복부분도 존재하는데 수질 부분의 환경개선부담금은 하수도 사용료와 부과대상 및 사용용도가 거의 유사하며 수질개선부담금은 지하수 개발을 위해 지장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역개발세와 유사하다.

#### 2) 부과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또한 부과대상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출국납부금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

64) 이준우·박영도·옥동석·이종용(2002), 부담금운용의 효과와 실태분석, 기획예산처

65) 김은경외(2009), 부담금제도 개선방안, 경기개발연구원

66) 신영수(2013), “현행 준조세 통제규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제37권 제1호, 419~420쪽.

을 위하여 국내의 공항 및 항만 등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공항이용시 1만원(선박이용시 1천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출국자들은 동시에 출국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 지원을 목적으로 국제빈곤퇴치기여금에 1천원을 납부하게 된다. 목적이 다른 기금이라고 하지만 해외여행자들은 이외에도 여권발급시 국제교류기금을 납부하며 출국시 공항이용료를 납부하게 된다.

또한 이준우 외(2002)에서는 개발부담금에 대해 사업시행자 자신이 특정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그들에게 귀속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생산건설 도소매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각 공급자에게 그 자신이 새로 부가한 부가가치의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것으로 단 부담금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양자 모두 개발행위로 인한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인 점에서 차이가 없으며 이것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중복과세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sup>67)</sup>

부담금평가(2013)는 개발부담금에 대해 개발이익환수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재건축부담금의 경우 흡수 통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하였다.<sup>68)</sup> 부담금평가(2013)은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등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들을<sup>69)</sup> 열거하면서 각 개별법들이 개발부담금과의 부과목적과 부과대상에 있어 중복이 되는지를 검토하였는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등 이들 특별법들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부담금평가(2013)은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하는 연동

67) 이준우외(2002), 앞의 글, 99쪽.

68) 기획재정부(2013), 부담금평가(2012), 203쪽.

6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linkage)개발 방식의 일종으로서 부담금적 성격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평가하였다.<sup>70)</sup> 이어서 부담금평가(2013)는 기타 특별법들에서의 개발이익 재투자도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의 형태로 비용을 거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금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개발이익부담금과 4개 특별법에 설정되어 있는 개발이익의 환수제도는 개발이익의 환수방법에 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시행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사업시행자의 노력에 의하지 않은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여 해당 공익사업을 순조롭게 시행하도록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므로 그 목적과 대상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비용을 부담금 형태로 부과한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개발이익의 사용처를 재투자라는 항목으로 미리 정해서 부과하는 것의 차이만 있을 뿐 환수대상인 개발업자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부담금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의 부과금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이준우 외(2002)에 의해 이미 10여년 전에 부가가치세와의 유사성에 대해 언급되었고, 또 동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개발부담금의 폐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언급되었으나 2015년 부담금운용계획서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은 폐지 정비가능성이 없으며 외부평가 개선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3) 부과 목적과 운영방식이 유사한 경우

이준우 외(2002)는 중복구과 및 통폐합대상 부담금으로 국외여행자납부금,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농산물수입잉여금(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이하 ‘농안법’), 양곡관리법에 의한 농산물수입이익금을 제시하였다. 이 중 국외여행자납부금은 출국납부금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유사한 부과금인 공항이용료도 현재

70) 기획재정부(2013),부담금평가(2012), 6. 유사부담금 검토, 407쪽.

부과되고 있다.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은 2015년에 폐지될 예정이다.<sup>71)</sup> 또한 양곡관리법에 의해 부과되는 농산물수입이익금은 부과품목인 콩, 팥, 땅콩이 농산물의 범위 안에 포함되므로 농안법에 의한 농산물수입잉여금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다.

그러나 2014년 「양곡관리법」에 의한 양곡수입이익금과 농안법에 의한 농산물수입이익금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농산물수입이익금도 별도로 운용되고 있으며 시판용 쌀에 대한 양곡수입이익금과 인삼산업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도 별도로 운용되고 있다.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농산물관련 수입이익금은 3개의 법률에 의해 5가지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 농안법에 의한 농산물수입이익금과 양곡관리법에 의한 양곡수입이익금, 그리고 인삼산업법에 의한 농산물수입이익금은 모두 동일하게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의해 관리·운용되고 있다.

기금운용보고서에 동 3개 기금은 부담금 징수 실적은 각각 보고되지만 3개 부담금의 사용용도와 지출 내용은 같으며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은 기금의 부과 품목과 금액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3개 부담금 모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수입과 지출로 보고되고 있다.

즉 3개 기금은 모두 각각의 부과품목 대상에 대해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차이(수입차익금) 범위 이내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 개의 부담금이 모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통합되어 있어 각각의 부담금의 징수액만 알 수 있을 뿐 각각의 부담금의 사업비와 기금운영비 및 각각의 부담금 재원별로의 여유자금의 운용 등은 모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수입/지출로 되어 있어 3개 기금의 운영현황이 동일하여 각각의 기금의 운영현황을 알 수 없다.

71) 기획재정부(2014), 2015 부담금운용계획서, 4쪽.

이것은 3개 부담금의 회계가 통합되어 있어 어느 한 기금에서 잉여가 발생하여도 부담금운용보고서나 부담금운용계획서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며 경상지출과 용가지출, 그리고 자본지출이 각각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불투명하게 된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부담금의 유사·중복 문제와는 다른 문제로서 이것은 효율성의 문제이기 보다는 투명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부담금이 하나의 기금에 통합운영되면서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각 부담금의 채원 등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비효율을 가져올 수도 있다. 부담금의 운용을 통합할 때와 분리할 때의 장점과 단점을 잘 점검한 후 3개의 부담금에 운영에 관해 회계분리를 하든지 아니면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는 그 내역과 근거를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II. 중앙정부기금귀속 부담금과 여유자금

기금은 그 특성상 탄력적인 사업의 운영을 위해 일정수준의 자금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여유자금이 지나치게 많을 때에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재원을 낭비하게 된다. 여유자금 문제는 지방기금뿐 아니라 중앙기금에서도 기금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주요 과제중의 하나로 논의되어 왔다.<sup>72)</sup>

### 1) 부과액과 여유자금

중앙정부기금은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매년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여유자금으로 적립한다. 2013년 부담금을 운영하는 36개 중앙정부기금의 여유자금 합계는 7,204억에 달한다(<표 13> 참조). 여유자금은 기금의 운영을 위해 혹은 기금의 사업의 특성상 반드시 일정수준 이상

72) 권순현(2007), 중앙정부기금 평가제도 운영현황과 평가효율화 방안, 감사원 평가연구원.

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지나친 기금의 여유자금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저해되므로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유자금이 과다한 경우 이를 공자기금에 예탁하여 운용하거나 아니면 부담금의 징수를 줄여서 국민의 부담은 낮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표 13>에 의하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외환건전성 부담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등여유자금과 연간부과액이 동시에 증가하는 기금들이 있다. 부과규모와 여유자금이 동시에 증가하는 것은 금융성 기금의 경우 경기변동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인구학적 요인에 의해 증가할 수도 있으며 기금의 사업이 확대되면서 기금이 전체적으로 그 규모가 증가하는 등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변동요인이 명확하게 발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부과금액이 증가한다면 부담금의 징수를 적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력산업기반 부담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임금채권보장기금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경우 연간부과액과 여유자금이 동시에 늘어났는데 이들 기금은 2013년 기금운용평가지 여유자금 과다 보유로 판정된 10개 기금들에 속한다.<sup>73)</sup>

국제교류기금은 2013년 여유자금은 1,558억원에서 831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연간부과액과 순자산은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출하는 금융기

73) 10개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보훈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영화발전기금, 국제교류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재활기금으로 보도되었다. 한국경제 기사, 2014.8.3. “재정적자 커지는데 연기금에 묻어둔 정부기금, 2년새 4조원 늘어”

관에 대해 출연기준 대출금의 0.38%를 부과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2006년에서 2009년 사이의 정부의 대규모 출연으로 기금재정이 개선되었음에도 2006년 출연대상기관을 추가하였으며 2007년 출연대상기관의 출연요율을 0.3%에서 0.38%로 변경하였다. 징수실적이 2011년 1.72조원에서 2012년 1.92조원과 2013년 2.01조원으로 증가하면서 여유자금은 2012년 1.42조원에서 1.89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 부담금평가(2011)에서는 요율을 낮추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평가결과는 2015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어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농·수·산림조합에 대한 출연요율이 인하되어 2015년 징수액이 전년도 2,016억원에서 1,118억원으로 897억원(44.4%)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에 반영되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중앙정부기금중에서 출연금을 가장 과다하게 보유한 기금으로 파악되었으며 경우 약 2~3년의 시차는 있었지만 이러한 출연금 과다보유의 문제는 효율인하로 이어졌다. 동기금의 경우 기금의 규모가 커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용이하게 파악이 되었지만 중소 규모의 기금의 경우 과다한 보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여유자금을 보유하는 중앙정부기금의 경우 기금의 성격에 따라 여유자금의 적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비해 보유자금이 초과하는 기금들에 대해서는 부과요율을 낮추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부담금관리기본법」과 시행령등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13> 중앙정부귀속 부담금의 연간부과액 및 여유자금

	기금명	연간부과액		여유자금	
		2012년 (백만원)	2013년 (백만원)	2012년 (억원)	2013년 (억원)
1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549,679	1,533,328	1,454	1,357
2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1,704,226	1,891,334	3,207	5,975

제 3 장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기금명	연간부과액		여유자금	
		2012년 (백만원)	2013년 (백만원)	2012년 (억원)	2013년 (억원)
3	농지보전부담금	1,045,153	713,889	6,497	3,924
4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4,827,085	333,013	4,130	5,606
5	출국납부금	200,171	212,324	1,215	1,600
6	외환건전성부담금	99,810	200,665	311,866	552,853
7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76,622	82,926	5	5
<b>8</b>	<b>국제교류기여금</b>	<b>38,901</b>	<b>38,134</b>	<b>1,558</b>	<b>831</b>
9	석면피해구제분담금	16,829	15,145	235	290
10	해양환경개선 부담금	5,636	3,845	1,016	1,286
11	특정물질 제조 수입 부담금	1,624	1,457	78	85
12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119	113	1,016	1,286
13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823,168	824,093	35,428	41,917
1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564,640	613,069	17,801	20,577
15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	472,682	473,724	12,770	15,484
16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758	1,287	628	914
17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b>191,264</b>	<b>200,984</b>	<b>14,259</b>	<b>18,995</b>
18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방송발전기금징수금)	<b>176,365</b>	<b>187,043</b>	<b>3,777</b>	<b>4,542</b>
19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	492,393	485,214	418	652
20	물이용부담금(낙동강수계)	221,344	230,143	0	0
21	농산물수입이익금(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44	8,759	1,356	229
22	물이용부담금(금강수계)	109,233	111,855	112	150
23	물이용부담금(영산강, 섬진강 수계)	82,110	83,540	114	106
24	농산물수입이익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70,219	48,083	4,331	489
25	양곡수입이익금(땅콩, 감자)	17,792	11,320	4,331	489
26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b>330,375</b>	<b>367,034</b>	<b>2,802</b>	<b>4,179</b>
27	장애인 고용부담금	<b>250,506</b>	<b>326,515</b>	<b>1,480</b>	<b>2,294</b>
28	국민체육진흥기금	<b>9,268</b>	<b>10,968</b>	<b>1,614</b>	<b>1,778</b>

- 주: 1. 연간부과액과 여유자금이 2년 연속 발생한 기금만 포함  
 2. 굵은체는 여유자금 과다보유로 지적된 기금들(각주 68 참조)



### Ⅲ. 설치 목적과 사용내용

부담금은 설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해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부담금의 원래의 설치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업내용이 있을 뿐 아니라 고유의 사업보다 그 외의 지출이 더 많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례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1995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설치되었다. 동법은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스스로 건강을 실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적극적인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다. 동 기금은 1997년 담배사업자 및 수입판매자가 부담금을 출연하게 됨으로써 조성되었는데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의해 궤련 20개비당 354원,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 밀리리터당 221, 파이프담배 1그램당 12.7원 등이 부과되고 있다.

2015년 부담금운용계획서에 의하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은 2015년 부과금액이 전년에 비해 49% 증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담배값 인상과 함께 부담금을 담배 1갑당 345원에서 841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sup>74)</sup> 이는 2015년 징수액 증가율 중 양곡수입이익금<sup>75)</sup>을 제외하고 최고로 높은 것인데 금액으로는 7,683억이 증가하는 것으로 금액으로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1,012억원 증가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규모는 2조 3,362억원으로 중앙정부 기금 귀속 부담금 29개 중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74) 부담금운용계획서(2015), 303쪽.

75) 양곡수입이익금은 2015년에 2014년에 비해 141.2%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금액으로는 549억원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 판매부과금을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담금이라 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대한 기존의 평가와 분석을 살펴보면 우선 2005년도 기금결산분석에서 건 국민건강증진기금이 건강보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담배값을 인상하고 이에 따라 부담금 수입이 기금설치이래 220배나 늘어나면서 건강증진기금은 당초의 설치목적과 상이한 ‘암 치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라고 지적하였다.<sup>76)</sup>

기금의 사용을 보면 기금의 고유사업인 보건의료사업과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나뉘는데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의해 ‘기금의 한시적 특례’에 의하여 기금 수입의 일부를 건강보험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sup>77)</sup> 이러한 한시적 특례는 2006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부칙의 개정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 2005년도 기금결산분석에 의하면 담배부담금 수입 중 건강보험지원 비중이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77.1%와 71.6%를 기록하였고 2010년까지도 65%로 계획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2013년에는 이 비율이 55%로 감소하였다(<표 14> 참조).

그러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지원은 본래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200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국민건강증진법」의 부칙에 의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었으며 현재에는 부칙의 기간의 연장으로 건강보험지원이 계

76) 국회예산정책처, 2005년도 기금결산분석, “국민건강증진기금 결산과 담배부담금의 운용” 415쪽.

77) 부칙에 의하면 그 금액은 ‘당해연도 기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속되고 있다.<sup>78)</sup> 그런데 부칙에 의한 규정에 의해 건강증진기금의 50% 이상이 지출되고 있는 것은 부담금 설치의 근본취지보다 부칙에 의한 조건부 지원이 오히려 더 우선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건강보험지원금은 부담금형태가 아닌 조세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5년은 기금 수입 증가에 따라 그 비중이 2012년 수준으로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 14> 담배부담금 수입과 기금사업비 운용

(단위: 억원, %)

	2012	2013	2014	2015
담배부담금 수입(A)	15837	15612	17187	24933
기금운용규모	19936	20702	23314	32762
기금 사업비(B)	18119	18763	20028	27188
- 보건의료사업등(C)	8046	8777	9837	12003
- 건강보험지원(D)	10073	9986	10191	15185
담배수입중 의료사업(C/A)	51%	56%	57%	48%
기금사업중 의료사업(C/B)	44%	47%	49%	44%
담배수입중 건강보험지원(D/A)	64%	64%	59%	61%
기금사업중 건강보험지원(D/B)	56%	53%	51%	56%

자료: 기금운용종합보고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자료에 의해 작성

78) 부칙 <법률 제6619호, 2002.1.19.>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108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기금의 고유사업에 관해서 2007년 기금결산분석에서는 “2005년 이후 부담금의 목적 외 사용이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기존 국고사업인 각종 보건의료사업을 부담금으로 수행하게 되는 문제로 확산되었다”고 지적하였다.<sup>79)</sup>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개정(2004.12.30.)을 통해 ‘암 치료를 사업, “공공보건의료 시설 및 장비의 확충” 등에 부담금이 사용되도록 하였다.

기금의 사용에 대한 2009년 부담금평가를 보면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은 재정충당목적과 유도적 목적이 혼재된 특별 부담금으로서, 이러한 성격의 특별 부담금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처럼 특별 부담금의 정당화 요건인집단의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 등이 일정 부분 요청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sup>80)</sup>,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는 부담금부과의 목적을 폭넓게 해석하여 담배와 직접 관련 없는 사업에까지 이를 확대하여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본래 부과목적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sup>81)</sup>

또한 2012년 부담금평가에서도 역시 국민건강증진사업 중 기본적인 공공정책 관련 사업은 조세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민건강증진 기금사업 중 건강증진과 연계성이 낮고 법정용도를 넘어서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sup>82)</sup> 이렇게 법정용도를 넘어서는 사업이 존재하게 된 것은 2004년 부담금이 354원으로 인상되면서 여유재원이 발생하여 2005~2010년 기간 중 일반회계사업이 대폭 기금사업으로 이관된데 기인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법정용도 이외의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79) 국회예산정책처, 2007회계연도 결산분석, 332쪽.

80) 현재결 1998.12.24. 98헌가1 ; 1999.10.21. 97헌바84 ; 2003.1.30. 2002헌바5 ; 1999.5.27. 98헌바70 ; 2001.11.29. 2000헌바23 ; 2002.10.31. 2001헌바88.

81) 기획재정부(2009), 2008 부담금평가, 267쪽.

82) 기획재정부(2012), 2011 부담금평가, 195쪽.

그러나 2015년 운용계획에 의하면 부담금사용용도에 대해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은 국민건강을 증진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저해되는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사업이므로 사용용도에 적정하며 건강보험재정지원은 우리나라 담배로 인한 질병부담을 8%로 가정할 경우 건강보험 부담액은 약 5.8조원에 해당하므로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기금을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할 필요”<sup>83)</sup>가 있음을 제시하며 부담금 용도에 대한 국회의 분석과 부담금평가(2009, 2012) 결과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외부평가 및 개선계획에서 부담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들<sup>84)</sup>을 언급하였으나 일반회계 이관요구가 쉽지 않아 향후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할 중장기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대한 국회 결산분석(2005, 2007)과 부담금평가(2009, 2013)를 기초로 동 기금에 대한 부담금운용계획서(2015)를 살펴보았다. 2005년부터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제기된 기금의 사용에 대한 문제는 거의 10년이 되는 2015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개별부담금의 문제로서 부담금을 관리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부담금평가가 부담금운용계획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으며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점에서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정해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으나 부담금평가는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 부담금평가를 공개하고 부담금운용계획서의 제출과 함께 부담금평가도 함께 국회 제출하여 평가결과가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함께 심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83) 기획재정부(2014), 2015 부담금운용계획, 306쪽

84) R&D, 정보화사업 등

#### IV.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

2013년도에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은 광물수입·판매 부과금,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사업 비용 부담금 등 13개 부담금이다. 부담금운용보고서(2013)에 의하면 12개의 부담금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시판용 쌀에 대한 양곡수입이익금도 2013년 징수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이후 징수실적이 없다.

이 중에서 연초경작지원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준조세의 성격을 갖는 부담금 중 기획재정부에 귀속되는 연초경작지원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의 경우 「담배사업법」 제25조의3제1항<sup>85)</sup>에서 출연금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서는 출연금 산정기준을 20개비 당 15원으로 명시했던 시행규칙을 삭제(2008.1.14.)하고 이것을 20원 이내로 범위로 정하여 법률에 명시하였다. 그러나 동출연금은 2007년 11월 기금조성목표액 달성으로 출연이 종료되었으며 그 이후 징수실적이 없다.<sup>86)</sup>

2012년 실시된 부담금평가에 의하면 2011년 2월 현재 당초 약속한 기금 4,100억원 전액이 조성되었으며 경작농가가 2001년 29,675명에서 2010 5,440명으로 약 78%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더 이상의 기금 적립은 굳이 필요하지 않으며 출연 등 부담금을 폐지하여도 무방하다고 평가하였다.<sup>87)</sup> 또한 정부는 현행 법률이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삭제하고 제조업자가 동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거나 시행자에게 출연하도록 하여 동 출연금을 「부담금관

85) 제25조의3(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가 판매하는 담배 중 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20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환경보호 등의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86) 기획재정부(2013),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90~91쪽.

87) 기획재정부(2012), 2011 부담금평가, 89쪽.

리기본법」의 관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2010.12.29.).

<표 15>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

부담금명	비고
· 영산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 부담금 부과대상 없음
·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 한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 수익자부담금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도시개발법)	
· 시설부담금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 광물수입·판매부담금	· 근거법률은 있으나, 하위법령 미비
· 연초경작지원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2007) 이후 징수실적 없음
· 재건축부담금	· 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
·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비용부담금	· 부과를 위한 하위법령 마련 중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입금 (인삼사업법)	· 수입단가 상승, 응찰 업체 없음
· 양곡수입이익금 (시판용 쌀 )	· 2009년 이후 징수실적 없음
· 기반시설비용부담금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 사업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기부채납의 형태로 운영(미징수)

자료: 기획재정부(2013),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연초경작지원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은 2007년 목표액 달성으로 출연이 종료되었고 그 이후의 부담금 평가에서도 의무 부과 부적절함과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되었으나 2015년 부담금운용계획서에 보면 동 부담금의 사용용도가 적정하며 폐지 혹은 정비의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계획을 제시함에 있어 2012년 실시된 부담금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부담금평가가 그 이후 부담금 운용 계획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징금의 성격의 부담금은 징수실적이 전혀 없는 것이 오히려 부담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의 경우 왜 없는지 그 사유를 파악하여 그 존속이유와 시한에 대해 기본법에서 기준을 정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V. 부담금 평가의 실효성

앞에서 지적된 관리운용상의 문제점들은 부담금평가를 통해 파악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부담금 평가가 2003년 이후 실시되어 10년이 넘었지만 그동안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 부담금평가뿐 아니라 국회결산분석 보고서, 김은경 외(2009) 등등에서 지적된 문제들 개선된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10년 가까이 문제점들이 지속되는 것들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살펴보기로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해서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등에 지원하는 부담금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의 2013년 부과액은 6,837억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는 부담금 중 가



장 크며 전체 부담금 중에서는 7번째로 큰 부담금이다.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대기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연면적 160m<sup>2</sup>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다.<sup>88)</sup>

환경개선부담금은 2007년 국회 결산보고서에서 시설물과 경유차에 대한 부과기준 문제, 유사기금과의 중복문제, 그리고 조세로의 전환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2009년과 2013년 평가보고서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되었다. 경유차에 대한 부과요율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해당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방식은 자동차의 실제 운행거리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오염정도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대기오염 저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되고 있다.<sup>89)</sup>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실시된 부담금 평가에서도 언급되고 있지 않다.

국회 결산보고서는(2007)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수질배출부과금 및 대기배출부과금의 기본부과금과 중복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는데 부담금 평가(2009, 2013)에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은 생산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배출부과금과 유사하며 이 부분 역시 수질과 대기부분으로 나누어져

88) 제10조(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대기 또는 수질오염물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연료 사용량 × 단위당 부과금액 × 연료계수 × 지역계수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용수 사용량 × 단위당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지역계수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車齡係數) × 지역계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위당 부과금액, 대당 기본 부과금액, 연료계수,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9) 2007 회계연도 결산분석, 309쪽.

있다는 점에서 환경개선부담금과 유사하며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하수도 사용료현실화를 통해 하수도사용료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다.<sup>90)</sup>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담금폐지와 환경세로의 전환 문제가 제기 되었다. 2015년 부담금운용계획에 의하면 환경개선 부담금 중 시설물에 대해서는 2015년에 폐지하고 경유차에 대해서는 2016년 이후에 폐지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환경개선부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국가 전체 차원의 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부담금보다는 조세수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과 평가가 기존에 있었음에도 2015년 부담금운용계획에서 이러한 외부평가가 처음 반영되었다. 여러 해에 걸쳐서 유사한 평가결과가 나오는 경우 이를 다음 해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동일한 내용의 평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90) 기획재정부, 2009 부담금평가, 329쪽, 2012 부담금평가, 177쪽.

## 제 4 장 부담금 관리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향

이제까지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법적 문제와 관리·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법적 문제들은 개념적이며 법 규정상의 문제들이지만 이러한 법적 문제들은 부담금의 투명성 뿐 아니라 실제 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국가재정의 효율성 및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부담에 영향을 주게 된다. 부담금관리의 목적은 공평성과 투명성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최소한의 부담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법적인 문제와 관리운영상의 문제는 별개가 아니며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몇 개의 부담금의 사례들을 들어 부담금 운영 효율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주요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 I. 조세로의 전환

부담금의 징수 및 운영의 주체로서 중앙정부기금에 귀속되는 부담금은 10.6조로서 규모면에서 전체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등은 5,837억원(3.5%)을 운영하고 있다. 만일 부담금 중 일부가 이렇게 개별적인 기금 혹은 기관이 아니라 조세로 전환된다면 징수와 사용면에서 좀 더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설치·운영되었던 부담금들을 부과총액의 규모순으로 1조원이 넘는 부담금은 총 4개이며<sup>91)</sup> 이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 판매부과금이 약 2조원으로 가장 크다. 이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약

9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 판매부과금,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

1.5조원으로 전체 부담금 중 부과총액 기준으로 3위를 차지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6,839억원으로 7번째로 큰 기금이다.

만일 이러한 대형 부담금 중 조세와 유사한 성격의 부과금액들을 조세로 전환한다면 부담금 총 규모는 10%이상 줄어들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중 건강보험료 지원부분(2013년 기준 9,986억원)과 환경개선부담금(6,839억원)이 폐지되고 조세로 전환된다면 이 두 개의 기금에서만 약 1조 6,825억원의 부담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2013년 부담금 총액의 10% 가량이 된다.

물론 이것은 조세로 전환되는 것이지 부과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겠으나 부담금의 형태로 기금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조세와 중복되거나 조세의 성격을 갖는 부담금들이 폐지되거나 조세로 전환된다면 부담금이 좀 더 많이 축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법제개선방안으로는 조세의 성격이 강한 부담금들을 먼저 엄밀한 부담금평가를 통해 구분해내고 이러한 부담금들을 조세로 전환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되면 환경개선부담금과 같이 조세로 전환 논의가 10년 이상 지속되는 일은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 II. 부과요율의 명확화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부담금의 부과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입법권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납부의 규모와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데 그 목적이 있다.

요율규정을 시행령 이하의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은 요율을 임의대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3년 운영되는 부담금 중 법률에 부과요율이 명시된 10개 중 징수실적이 있는 9개의<sup>92)</sup> 부담금의 2010년~2013년의 4년간 연간부과액의 증가율은 1.43%로 부과액의 연간증가율을 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중 개발부담금을 포함한 4개의 부담금은 부과액이 오히려 감소하였다(<표 16> 참조).

<표 16> 요율 규정이 법률에 있는 부담금의 연간 부과액 증가율(2010~2013)

	기금명	귀속회계/기금	증가율(%)
1	환경개선부담금	중앙정부 특별회계	2.67
2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중앙정부 특별회계	0.24
3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및 분할 납부이행보증금	중앙정부 특별회계	-7.0
4	개발부담금	중앙정부 특별회계	-4.32
5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중앙정부기금	-1.62
6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지자체	-12.6
7	학교용지부담금	지자체/	18.9
8	교통유발부담금	지자체 지자체	4.9
9	국제빈곤퇴치 기여금	공공기관	11.7
<b>평 균</b>			<b>1.43%</b>

자료: 부담금종합운용보고서(2013)에 근거하여 산출

92) 부과 요율 규정이 법률에 명시된 부담금 중 재건축부담금은 2013년 징수실적이 없었다.

<표 17> 부과요율이 고시 명시된 부담금의 연간 부과액 증가율(2010~2013)

	기금명	귀속회계/기금	증가율(%)
1	안전관리부담금	중앙정부 특별회계	5.47
2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중앙정부 특별회계 / 공공기관	4.43
4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중앙정부기금	35.89
5	장애인 고용부담금	중앙정부기금	22.39
6	대체초지조성비 (초지법)	중앙정부기금	3.16
7	축산물 수입이익금	중앙정부기금	5.51
8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중앙정부기금	7.02
10	물이용부담금 (금강수계)	중앙정부기금	4.77
11	물이용부담금 (낙동강수계)	중앙정부기금	3.29
12	물이용부담금 (영산강, 섬진강 수계)	중앙정부기금	4.96
13	운항관리자비용 부담금	공공기관	4.17
14	시설부담금 (택지)	공공기관	11.38
15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공공기관	7.68
평 균			<b>9.24</b>

자료: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2013)에 근거하여 산출

반면, 부과요율 규정이 고시에 있는 15개의 부담금의 경우 4년간 평균증가율은 9.24%였다(<표 17> 참조). 부과액의 증가는 단지 요율의 변경뿐 아니라 부과대상의 증가에도 영향을 받으며 또한 부담금 중에는 경기순환등에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을 것이므로 부과액이 증가

자체가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부과요율 규정이 법률이 아니고 고시에 명시된 부담금의 부과액의 증가가 바람직하지 않은 운영의 결과일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부과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점검하여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는지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기금이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부담금은 부과요율 산정의 세부사항이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 또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루어지는 지출의 내용이므로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심사의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운용상의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확인되지 않는 부담금들에 대해서도 부과요건 및 부과요율을 명확히 할 근거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으나, 이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조사와 평가 등을 통해 부담금의 여러 문제들을 분명히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Ⅲ. 부담금 평가 체계 개선

부담금의 운용상의 문제점들은 부담금평가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 2003년 이후 부담금 평가가 실시되어 불필요한 부담금의 폐지 및 부담금 운용의 합리화를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담금 관련 문제들은 단시일내에 해결되기 어렵다. 「부담금 관리기본법」의 법적인 문제들이 대부분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운용상의 문제는 여전히 남을 수 있으며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메카니즘은 부담금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담금평가는 충실하게 실시되어 왔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평가위원들의 개별적인

사유라기보다는 평가체계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2003년 이후 부담금평가는 10명 안팎의 평가위원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부담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평가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sup>93)</sup> 부과총액이 16조가 넘는 96개의 부담금의 평가가 충실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평가단의 구성부터 신중하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담금의 평가는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실무적인 세부사항들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부담금 유형별로 전문가풀을 구성하여 평가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잔류하고 일정비율 이상은 교체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하여 부담금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법률과 시행령에 부담금평가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부담금평가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규정들 좀 더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을 생각된다.

둘째, 대부분의 부담금은 중앙정부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귀속되어 각각의 부담금 납부 의무자들의 책임성과 충당재정의 용도사이에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밝혀내기가 어렵다. 송하성(2007)<sup>94)</sup>은 부담금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부담금재원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있는 기금에 대한 평가와 부담금평가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부담금평가(2012)에서도 대부분의 부담금이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귀속되므로 해당 부담금제도의 단편적인 평가로서는 부담금부과의

---

93) 시행령 제 5 조(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 운용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수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의 부담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부담금 운용 실태조사 및 평가업무 등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94) 송하성 외(2007), 부담금운용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경기미래발전연구원, 기획예산처 용역과제. 108쪽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정밀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 기금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경우에는 기금평가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다.<sup>95)</sup>

마지막으로 부담금평가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부담금에 대해 유사한 평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부담금 평가의 결과가 부담금운용계획서 국회 제출시 함께 검토되어 반영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담금평가 자체의 내실화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평가결과들이 다음해의 부담금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95) 기획재정부(2013), 2012 부담금 평가, 105쪽.

## 제 5 장 요약 및 결론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법적 문제와 관리 운용상의 오래된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다.

법적 문제로는 부담금의 개념과 헌법합치성의 문제, 그리고 부담금의 부과요건의 법정화 문제 등이 있고 관리운용상의 문제로는 유사·중복 부담금의 운용, 여유자금과 부과금액의 동시적 증가, 설치목적과 다른 사업내용 운영, 부담금평가의 실효성 등의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관리하는 부담금은 실제 존재하는 부담금을 전부 포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의 별표에 명시된 부담금이라 하여도 모두 반드시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관리대상이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부담금과 강화상의 부담금과는 차이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법률의 관리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부담금에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자와 징수목적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수익자·원인자 부담원칙이 강한 부담금에서부터, 이러한 상관관계가 미약하고 강제성의 정도가 강한 준조세성 부담금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과 기능의 부담금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부담금들을 하나의 원리로 규율하기보다는 부담금의 성격에 따라 유형별로 관리기준을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을 관리하는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위헌판결이 났음에도 10년 가까이 부담금이 징수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와 개별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과의 관계가 명시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해서 부담금은 부과근거 및 부과요건 등이 법률에 명시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담금의 부과요율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부담금은 2013년 운영되었던 96개 부담금 중 10개에 불과하며, 하위법령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담금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중앙정부기금으로서 그 규모가 크고 강세성의 정도가 강한 부담금의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요율의 형태와 그 근거 법령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과요율이 조례에 명시된 경우가 있는데 부과요율이 법률에 명시된 경우는 요율변경을 위해 국회의 심사가 필요하지만 조례에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변경할 수가 있다. 부과요율을 법률이 아닌 조례나 규칙에 위임할 수 있는 원칙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부담금 관리·운용면에서는 부과목적, 부과 대상 그리고 부운용방식이 유사한 부담금등이 운용되고 있다. 사업간 중복은 부담금간 뿐 아니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금간의 중복도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부담금은 개별적으로 관리·평가되고 전체적인 중복 사례들을 파악하기 어렵다.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 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여유자금을 보유하는 중앙정부기금들 중 여유자금을 필요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금들이 있다. 국민에게 부담금의 형태로 징수된 자금들이 기금의 여유자금 형태로 남아서 사적 금융기관에서 운

용되고 다음 해에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하여 다시 여유자금이 증가하는 것은 국민부담의 최소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기금의 성격에 따라 여유자금의 적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비해 적정 보유자금을 초과하는 기금들에 대해서는 부과요율을 낮추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곱째, 징수실적이 없는 기금들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 존치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 폐지해야 하는지 기준이 필요하다. 과징금의 성격의 부담금은 징수실적이 없는 것이 목표를 달성한 경우가 될 것이므로 징수실적 자체 보다는 기금의 성격에 따라 존치 여부에 관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덟째, 부담금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담금평가가 2003년부터 실시되었지만 부담금평가와 국회 결산보고서 등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담금 평가가 한 두 사람의 평가위원이 한정된 정보로 부담금을 평가하기 때문에 유사기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기금뿐 아니라 예산 및 특별회계 등에서 유사·사업 혹은 부담금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연계된 부담금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부담금평가가 개별평가자의 역량으로 부담금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부담금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평가방식, 평가위원, 평가 결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담금평가 결과가 부담금운용계획에의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을 개별적으로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부담금관리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 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부담금에 대해 개별적인 관리와 함께 총체적인 국민부담을 평가하는 총량적인 관리도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만일 전체 부담금 부과총액의 증가율에 상한성을 두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부과요율의 증가나 부과총액의 증가가 일정 비율 혹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심사가 좀 더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해 개별 부담금에서는 부담금 운용의 효율화와 부담금 부과액의 최소화를 위해 자체 내의 노력을 좀 더 기울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아쉬운 것은 「부담금관리기본법」의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96개의 부담금 전체에 대해서 다 살펴보지 못하고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여 전체적인 문제점들을 다 포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 중 일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문제점들과 이와 연관된 시사점들은 후속적인 연구에서 좀 더 구체적인 조사와 평가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2005), 결산분석보고서.
- 국회예산정책처(2007), 결산분석보고서.
- 국회예산정책처(2009), 결산분석보고서.
- 기획재정부(2014). 2015 부담금운용계획서.
-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각년도.
- 기획재정부, 부담금 평가, 각년도, 부담금운용평가단.
- 길용원(2014), “부담금 규제의 조세법적 고찰”, 조세와 법 제7권 제1호, pp. 1-32.
- 권순현(2007), 중앙정부기금 평가제도 운영현황과 평가효율화 방안, 감사원 평가연구원.
- 김은경(2009), 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김철용외(1996),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 박영도(2009), 부담금 부과요건 등의 법정화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 박인화·이덕만(2010), “부담금 운용실태와 실질적인 국민부담률 추정”, 의정논총 제5권 제1호, pp.215~243.
- 박인화·이형진·강상규(2007), “부담금 운용의 효율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 2007회계년도 결산 분석 I,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박인화(2009), “2010년도 부담금 부과계획과 실질적인 국민부담”, 2010년도 예산안 분석 II,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법제처(2012), 법령입안심사기준.

참 고 문 헌

배준호(2005),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부담금 운영 실태: 한국적 특징의 모색”, 사회보장연구, Vol. 21, No.2, pp. 197~218.

손원익(2010), 우리나라 준조세 실태 및 정책방향, 조세연구원.

송하성외(2007), 부담금운용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기획예산처.

신영수(2013), “현행 준조세 통제규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제37권 제1호, pp.403~434.

신영수(2007), 준조세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윤준승(2010), 조세법률주의 위반사례 및 개선방향, 국회예산정책처.

이준우외(2002), 부담금운용의 효과와 실태분석, 한국법제연구원.

임현(2010), “현행 부담금 제도의 법적 쟁점”, 토지공법연구 제48집, pp.399~427.

정호영(2001), 부담금관리기본법안 검토보고, 국회운영위원회.

부

부



## 부 록

# 부담금 관련 근거 법률 및 산출규정 정리

### 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정부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의 출연금
4. 보증료 수입금
5.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7.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운영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8.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 3 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요율”이란 별표의 출연요율을 말한다. <개정 2008.3.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1.12.22>

출연요율(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퍼센트)

구 분		요 율	
기준 요율	제3조제2항 각 호의 대출금 중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인 대출금	연 0.05	
	제3조제2항 각 호의 대출금 중 만기 10년 이상의 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인 대출금, 만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비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인 대출금	연 0.10	
	제3조제2항제1호의 대출금 중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 만기 10년 이상의 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 만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비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이 아닌 대출금	연 0.26	
	제3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 중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 만기 10년 이상의 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 만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비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이 아닌 대출금	연 0.30	
차등 요율	금융기관의 직전 연도 대위변제율	400퍼센트 초과	+연 0.04
		300퍼센트 초과 400퍼센트 이하	+연 0.03
		200퍼센트 초과 300퍼센트 이하	+연 0.02
		100퍼센트 초과 200퍼센트 이하	+연 0.01
		100퍼센트	0
		75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미만	-연 0.01
		50퍼센트 초과 75퍼센트 이하	-연 0.02
		25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하	-연 0.03
		25퍼센트 이하	-연 0.04
출연 요율	기준요율+차등요율		

비 고

1.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은 최초 약정일부터 만기일까지 이자만 상환하는 거치기간이 없고 원리금 전부 또는 원금 전부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월 1회 이상 상환하는 것이 최초 약정일에 확정된 대출을 말한다.
2. 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은 이자만 상환하는 거치기간이 최초 약정일부터 2년 이하이고 이후 만기일까지 거치기간 중 상환한 이자를 제외한 원리금 전부 또는 원금 전부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월 1회 이상 상환하는 것이 최초 약정일에 확정된 대출을 말한다.
3. 고정금리대출은 최초 약정일부터 만기일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최초 약정일에 확정된 대출을 말한다. 이 경우 고정금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리를 말한다.
  - 가. 최초 약정일의 금리와 동일한 금리
  - 나. 최초 약정일의 금리와 동일하거나 최초 약정일의 금리보다 낮은 금리
  - 다. 최초 약정일의 금리를 변동하여 적용하는 경우 금리변동주기(최초 약정일부터 최초 금리변동일 전일까지 기간 및 금리변동일로부터 다음 금리변동일 전일까지 기간)가 5년 이상(최종 금리변동일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은 제외한다.)이고 금리변동주기 중 적용되는 금리 및 최종 금리변동일부터 만기일까지 적용되는 금리가 동일한 금리
4. 제3호에 따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이 최초 약정일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호다목의 만기일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종료일을 말한다.
  - 가. 최초 약정일부터 10년 이상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최초 약정일에 확정된 대출은 고정금리 적용 기간 중 만기 10년 이상의 고정금리대출로 본다.
  - 나. 최초 약정일부터 5년 이상 10년 미만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최초 약정일에 확정된 대출은 고정금리 적용 기간 중 만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고정금리대출로 본다.
5. 대위변제율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각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을 각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6. 기준요율과 차등요율의 합이 연 0.3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출연요율은 연 0.3퍼센트로 한다.

## 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 4 조(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①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財源)으로 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出捐金)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농림수산단체의 출연금
4. 기금을 관리·운용하여 생기는 순익금

③ 기금이 보증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는 농림수산업자금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로 한다.

1. 농림수산업자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2. 농림수산업자등의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3. 그 밖에 농림수산업자등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④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금융기관의 범위,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2]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②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출연금의 기준이 되는 대출금(이하 “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의 범위와 출연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9.29, 2007.6.4, 2008.3.3>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 : 가목의 대출금에서 나목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한 연율 1만분의 38

가.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 1) 은행계정 중 대출채권
- 2) 신탁계정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출금

(나) 사모사채(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에 한한다)

- (다)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에 한한다)
- (라)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에 한한다)
- 나.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 1) 은행계정의 대출채권 과목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 (가) 원화대출금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 (1)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 (2) 가계자금대출금
    - (나) 외화대출금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 (1) 시설자금대출금
      - (2)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이 외국에 설치한 지점·대리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현지에서 대출한 대출금
      - (3)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수입기업과 거래하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이 그 기업의 상대방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입기업에 대한 대출금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것
  - (다) 내국수입유산스
  - (라) 역외외화대출금
  - (마) 콜론
  - (바)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을 제외한다)
  - (사) 매입외환
  - (아)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을 제외한다)
  - (자) 직불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을 제외한다)
  - (차)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카) 팩토링채권(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이 외상대출채권의 양도인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된 것을 제외한다)
  - (타) 출자전환채권
  - (파) 금대출
- 2) 신탁계정의 대출금 과목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 (가)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 (나) 가계자금대출금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로부터 자금 또는 기금을 대출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자금대출금 및 공공기금대출금
-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자차액을 보전받는 대출금
- 5)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대출되는 공공자금대출금
- 6) 차관자금대출금
- 7)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간의 대출금
-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금출연기준대출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계정출연기준대출금

- 9) 법률 제3930호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재산형성저축가입자에 대한 대출금
  - 10) 농림수산물 시장여건의 변화 또는 급격한 가격변동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자금대출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2.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금융기관 : 상호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대출금과 자립예탁대출금의 월 중 평균잔액에 대한 연율 10만분의 27

### 3.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용자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용자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5.19]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시행령 제13조(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비율)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의 비율은 그 용자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6.22.]
- 시행규칙 제 5 조(출연의 금액·시기 및 방법) ①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매 분기말 현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출연기준용자금의 분기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 ② 금융기관은 매 월말 현재 금융기관출연기준용자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별표의 출연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07.6.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07.6.4>

출연요율(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요 율	
기준요율		연율 1만분의 13.5	
차등요율	직전 반기 총 대위변제금액 / 직전 반기 총 출연금액	1 미만	-연율 1만분의 2
		1 이상 2 미만	-연율 1만분의 1
		2 이상 3 미만	0
		3 이상 4 미만	+연율 1만분의 1
		4 이상	+연율 1만분의 2
출연요율		기준요율+차등요율	

비 고

1. 총 출연금액의 산정시 제5조제4항에 따른 선납 출연금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시기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2. 총 대위변제금액의 산정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대위변제금액을 제외한다.

4.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부담금 근거 법률 - 신용보증기금법

제 6 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 2 조(출연의 방법) 금융기관은 매월말 현재로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별표의 출연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1987.7.16, 1989.4.1, 1992.4.24, 1994.8.25, 2005.8.26, 2007.6.4>

[별표] <개정 2007.6.4>

출연요율(제2조 관련)

구 분			요 율
기 준 요 율			연율 1만분의 22.5
차등요율	직전 반기 총 대위변제금액 / 직전 반기 총 출연금액	1 미만	-연율 1만분의 2
		1 이상 2 미만	-연율 1만분의 1
		2 이상 3 미만	0
		3 이상 4 미만	+연율 1만분의 1
		4 이상	+연율 1만분의 2
출 연 요 율			기준요율+차등요율

비 고

1. 총 출연금액의 산정시 제3조제3항에 따른 선납 출연금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납부시기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2. 총 대위변제금액의 산정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대위변제금액을 제외한다.

5.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부담금 근거 법률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4조(출연)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령 제10조(협회비의 출연등)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하여야 할 비용(이하 “협회비”라 한다)은 보험업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협정에 의하여 공동인수한 보험료 수입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1974.12.31, 1983.8.18,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비로 출연할 금액의 산정기준과 출연시기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6.13, 1999.7.6, 2008.2.29>

시행규칙 제3조(협회비의 산정기준)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수입은 보험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협정에 의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공동인수한 보험의 보험료에 의한다. <개정 1991.10.21>

②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하여야 하는 협회비는 각 손해보험회사가 매월 대한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하는 순보험료(원수보험료·수재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입액의 합계액에서 출재보험료·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협회비 총액의 100분의 70은 각 손해보험회사가 순보험료의 실적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분담하고 100분의 30은 각 손해보험회사가 균등 분담한다. <개정 1997.7.10>

[전문개정 1983.12.15]

[제목개정 1997.7.10]

## 6.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기금에의 출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이나 국민경제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계잉여금 중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계잉여금 잔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매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의 전년도 평균 잔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매년 전년도에 적립한 책임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출연 방법, 출연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2]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 5 조(기금에의 출연) ①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1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을 준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하며,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1을 말한다.

③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20]

## 7.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① 부보금융기관은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당해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특별기여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2006.3.24> [법률 제6807호(2002.12.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4(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납부 등) ① 부보금융기관은 법 제 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별표 1의2의 산 식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한다)을 공 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후 1월 이내에 납부 하여야 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09.6.9>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산식(제16조의4제1항 관련)

부보금융기관	산 식			
1. 은행	분기별특별기여금=예금등의 분기별 평균잔액×	$\frac{1}{1천}$	×	$\frac{1}{4}$
2.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연간특별기여금=예금등의 연평균잔액×	$\frac{1}{1천}$		
3. 보험회사	연간특별기여금=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금액×	$\frac{1}{1천}$		
4. 종합금융회사	연간특별기여금=예금등의 연평균잔액×	$\frac{1}{1천}$		
5. 상호저축은행	연간특별기여금=예금등의 연평균잔액×	$\frac{1}{1천}$		
6. 신용협동조합	연간특별기여금=예금등의 연평균잔액×	$\frac{5}{1만}$		

8.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부담금 근거 법률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①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정부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의 출연금  
 4. 보증료 수입금

5.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6. 계정 수입금의 운용수익금
  7.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8. 그 밖에 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산정기준 및 산출식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 제 3 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요율”이란 별표의 출연요율을 말한다. <개정 2008.3.3.>
- 제 5 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 법 제59조의3제3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요율”이란 연 1천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08.3.3>
- ② 법 제59조의3제4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법 제2조제8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이하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금융기관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2항의 대출금이 다른 자금의 대출과 구분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로 분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3.]
- 제 6 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 ① 금융기관은 매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평균잔액에 제5조제1항의 출연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②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출연금계산서
  2. 합계잔액시산표
  3. 월중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본조신설 2007.5.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1.12.22>

출연요율(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퍼센트)

구 분		요 율	
기준 요율	제3조제2항 각 호의 대출금 중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인 대출금	연 0.05	
	제3조제2항 각 호의 대출금 중 만기 10년 이상의 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인 대출금, 만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비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인 대출금	연 0.10	
	제3조제2항제1호의 대출금 중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 만기 10년 이상의 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 만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비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이 아 닌 대출금	연 0.26	
	제3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 중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 만기 10년 이상의 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 만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비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이 아 닌 대출금	연 0.30	
차등 요율	금융기관의 직전 연도 대위변제율	400퍼센트 초과	+연 0.04
		300퍼센트 초과 400퍼센트 이하	+연 0.03
		200퍼센트 초과 300퍼센트 이하	+연 0.02
		100퍼센트 초과 200퍼센트 이하	+연 0.01
		100퍼센트	0
		75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미만	-연 0.01
		50퍼센트 초과 75퍼센트 이하	-연 0.02
		25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하	-연 0.03
		25퍼센트 이하	-연 0.04
출연 요율	기준요율+차등요율		

비 고

1.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은 최초 약정일부터 만기일까지 이자만 상환하는 거치기간이 없고 원리금 전부 또는 원금 전부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월 1회 이상 상환하는 것이 최초 약정일에 확정된 대출을 말한다.
2. 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은 이자만 상환하는 거치기간이 최초 약정일부터 2년 이하이고 이후 만기일까지 거치기간 중 상환한 이자를 제외한 원리금 전부 또는 원금 전부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월 1회 이상 상환하는 것이 최초 약정일에 확정된 대출을 말한다.
3. 고정금리대출은 최초 약정일부터 만기일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최초 약정일에 확정된 대출을 말한다. 이 경우 고정금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리를 말한다.
  - 가. 최초 약정일의 금리와 동일한 금리
  - 나. 최초 약정일의 금리와 동일하거나 최초 약정일의 금리보다 낮은 금리
  - 다. 최초 약정일의 금리를 변동하여 적용하는 경우 금리변동주기(최초 약정일부터 최초 금리변동일 전일까지 기간 및 금리변동일로부터 다음 금리변동일 전일까지 기간)가 5년 이상(최종 금리변동일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은 제외한다.)이고 금리변동주기 중 적용되는 금리 및 최종 금리변동일부터 만기일까지 적용되는 금리가 동일한 금리
4. 제3호에 따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이 최초 약정일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호다목의 만기일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종료일을 말한다.
  - 가. 최초 약정일부터 10년 이상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최초 약정일에 확정된 대출은 고정금리 적용 기간 중 만기 10년 이상의 고정금리대출로 본다.
  - 나. 최초 약정일부터 5년 이상 10년 미만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최초 약정일에 확정된 대출은 고정금리 적용 기간 중 만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고정금리대출로 본다.
5. 대위변제율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각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을 각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6. 기준요율과 차등요율의 합이 연 0.3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출연요율은 연 0.3퍼센트로 한다.

## 9. 연초경작지원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담배사업법

제25조의3(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가 판매하는 담배 중 켈런에 대하여 20개비당 20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환경보호등의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 하위법령사항 없음

## 10. 외환건전성부담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외환건전성부담금)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유출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취급 외국환업무 및 외국통화 표시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3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은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 1천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회사등의 영업구역,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만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 등으로 금융시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과요율(이하 이 항에서 “추가부과요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2항에 따른 부담금 금액에 더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부과요율은 제2항에 따른 부과요율을 더하여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에 귀속된다.
  - ⑤ 제2항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과 제3항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4.30.]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3(부과요율)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이란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만기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말한다. 다만, 「은행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지방은행이 부담금납부의 무자에 대하여 보유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한 요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1. 만기가 1년 이하인 경우: 1만분의 20
2. 만기가 1년 초과 3년 이하인 경우: 1만분의 10
3. 만기가 3년 초과 5년 이하인 경우: 1만분의 5
4. 만기가 5년 초과인 경우: 1만분의 2

[본조신설 2011.7.25]

제21조의4(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 ① 법 제11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은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을 제21조의3 각 호의 만기구간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부과기간은 부담금납부의무자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할 때 외화 조달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이하 “공제전 잔액”이라 한다)에서 별표 1에 따라 외화예수금에 만기별 가중치를 곱한 금액(이하 “공제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으로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액이 0보다 작으면 공제액은 0으로 하며, 공제전 잔액의 100분의 30보다 크면 공제액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2.12.12.>

[본조신설 2011.7.25]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2.12.12>**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 산정 시 공제하는 금액(제21조의4제2항 관련)

1. 제21조의4제2항의 공제액은 제2호에 따른 외화예수금에 제3호에 따른 만기별 가중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외화예수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17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예수금은 잔액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begin{aligned} \text{외화예수금} &= (\text{해당 사업연도 외화예수금의 일평균잔액}) \times \frac{3}{10} \\ &\quad + (\text{직전 사업연도 대비 외화예수금 일평균잔액의 증감}) \times \frac{7}{10} \end{aligned}$$

3. 만기별 가중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만기가 1년 이하인 정기예금(예치기간을 사전에 약정한 예금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종류의 예금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0.5
  - 나. 만기가 1년 초과 3년 이하인 정기예금의 경우: 2
  - 다. 만기가 3년 초과 5년 이하인 정기예금의 경우: 4
  - 라. 만기가 5년 초과인 정기예금의 경우: 10
  - 마. 그 밖의 예금(정기예금 이외의 예금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종류의 예금으로 한다)의 경우: 0.05

**1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부담금**

**부담금 근거 법률 - 원자력진흥법**

제13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해당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비 부담금)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그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한 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2.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방송통신발전기금법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용자금
2. 「전과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과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4.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5.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방송통신발전기금법 시행령

제12조(부담금의 징수) ①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그 징수율을 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의

재정상태 및 방송운영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2013.10.30>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연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 이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업구역별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허가받은 방송구역별로 매출액을 산정한다.
3.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전년도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

분담금 고시 - 생략

### 13. 학교용지부담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 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14>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 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5.28>

1. 공동주택 :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1천분의 14

[전문개정 2007.12.14]

### 14. 국제교류기여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기금의 모금) ① 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모금액의 한도는 1만5천원으로 하고, 모금의 대상과 모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0]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 5 조(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이 국제교류기여금을 모금할 수 있는 대상과 모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외교부장관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및 적립상황을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2013.3.23>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04.12.31>

##### 모금의 대상 및 모금액(제5조제1항관련)

모금의 대상	모금액	
	국 내	국 외
1. 복수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가. 유효기간 10년 : 18세 이상인 자 나. 유효기간 5년 : 18세 이상인 자 및 8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	15,000원 12,000원	미화 15불에 해당하는 금액 미화 12불에 해당하는 금액
2. 단수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5,000원	미화 5불에 해당하는 금액
3.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2,000원	미화 2불에 해당하는 금액

## 15. 국제빈곤퇴치기여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의2(국제빈곤퇴치기여금) ① 외교부장관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 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에 대하여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다만, 승무원·환승객·영유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법률 제8316호(2007.3.29)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7년 9월 30일까지 유효함]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의2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의2 - 생략-

## 16.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지방자치법

제138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지방자치단체 조례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17. 출국납부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 2 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③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5>  
[전문개정 2007.12.21]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 2 조 - 생략  
시행령 제 1 조의2(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  
②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7.24]

## 18.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관광진흥법

제30조(기금 납부) ①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이하 “납부금”이라 한다)의 징수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총매출액의 100분의 1
2.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총매출액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3.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4억6천만원+총매출액 중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19.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분담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관광진흥법

제64조(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① 사업시행자는 지원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

관광진흥법 제64조 (생략)

시행령 제53조(이용자 분담금)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분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시설의 건설사업명·건설비용·부담금액·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밝혀 그 이용자에게 분담금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사비(조사측량비·설계비 및 관리비는 제외한다)
2. 보상비(감정비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담금액은 지원시설의 이용자의 수 및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 20.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분담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관광진흥법

제64조(이용자 부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① 사업시행자는 지원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

관광진흥법 제64조 (생략)

시행령 제53조(이용자 부담금)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시설의 건설사업명·건설비용·부담금액·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밝혀 그 이용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54조(원인자 부담금) 사업시행자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 부담금에 관한 제53조를 준용한다.

## 21. 회원제 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부가금의 징수) ① 기금관리기관이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가금을 징수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부가금은 골프장 시설 입장료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부가금의 징수 방법, 납부 시기 및 부가금 수납 관련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0조(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입장료”란 명칭과 관계없이 같은 호에 따른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여 체육활동을 할 목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의 금액은 각종 세금의 포함 여부와 관계 없이 입장권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힌 액면금액으로 한다.

## 22.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①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 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5조(기금의 용도) ② 제1항제12호의 사업에 집행될 수 있는 기금의 액수는 연간 기금 집행 액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부과금의 징수방법·납부시기 및 부과금 수납 관련 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법률 제8280호(2007.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 조의4(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 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 대상 :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을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제외한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 대상 영화상영관”이라 한다)
2. 부과 금액 : 부과 대상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

### 23.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환급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사행산업사업자의 수익성,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전화 평가 및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총량 준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행산업사업자별로 부담금의 부과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중독예방치유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부담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며, 그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5.23]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 9 조(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비율은 연간 순매출액의 1000분의 3.5(이하 이 항에서 “기본부담비율”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 비율을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낮추는 비율의 합산 결과가 사행산업사업자별로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행산업사업자의 수익성이 없는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2.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전화 평가 결과를 고려하는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3.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총량 준수 결과를 고려하는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4. 「지방세법」에 따라 레저세 및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 사행산업의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20

## 24. 농지보전부담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09.5.27>

⑥ 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⑬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농지법 및 시행령

####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 생략

시행령 제47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허가 또는 협의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나 제46조에 따른 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2.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감면비율
3. 그 밖에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의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공급미터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52조에 따른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13.3.23>

제53조(부과기준) ①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공급미터당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공급미터당 금액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공급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 25. 농산물수입이익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부담금 근거 법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 고추·마늘·양파·생강·참깨: 해당 품목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대금, 운송료, 보험료, 그 밖에 수입에 드는 비목(費目)의 비용과 각종 공과금, 보관료, 운송료, 판매수수료 등 국내판매에 드는 비목의 비용을 뺀 금액 또는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 의사를 표시한 금액
2. 참기름·오렌지·감귤류: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 의사를 표시한 금액

## 26. 양곡수입이익금(땅콩, 감자)

### 부담금 근거 법률 -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 2 조의4(수입이익금의 산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는 수입이익금은 양곡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해당 양곡의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그 밖의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나 양곡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3조의2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 또는 특별회계에 수입이익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2조의3제1호에 따른 미곡: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2. 제2조의3제2호에 따른 양곡: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 특별회계
3. 제2조의3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양곡: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전문개정 2009.10.1]

27. 양곡수입이익금(쌀)

부담금 근거 법률 -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제13조의2 - 생략

## 28.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입금(인삼산업법)

### 부담금 근거 법률 - 인삼산업법

제20조(인삼류 시장접근물량 수입추천) ① 삭제 <1999.1.21>  
②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해당하는 인삼류를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인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제목개정 2011.7.25]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인삼산업법 및 시행규칙

법률 제20조 - 생략  
시행규칙 제28조(수입부담금의 납입등) ④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아 인삼류를 수입한 자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8, 2000.6.23, 2001.7.14., 2005.6.11, 2008.3.3, 2013.3.23>  
[제목개정 1999.8.7]

## 29. 대체초지조성비(초지법)

### 부담금 근거 법률 - 초지법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

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업·축산업·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 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기준 및 감면기준과 그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4.5]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초지법 및 시행령

초지법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진입도로·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사료작물재배지”란 조사료(粗飼料)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미개간지”란 임야, 황무지, 자연생초지(自然生草地), 소택지(沼澤地), 폐염전(廢鹽田), 폐천부지(廢川敷地), 방조제가 구축된 간척지 등 법적 지목(地目)에 상관없이 초지를 조성하는 데에 적합한 토지(초지조성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로서 초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4. “초지의 전용”이란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애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초지를 초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초지조성단가”(草地造成單價)란 초지 1제곱미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산출·고시하는 비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령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① 법 제23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1998.4.11, 2002.8.14, 2007.3.22, 2007.8.31, 2011.11.16>

1. 중요군수산업시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면추천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기간산업시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면추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5.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류시설(「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에 따라 종합물류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가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7.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8.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② 법 제23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2.12.31, 1994.6.17, 1996.8.8, 1999.6.30, 2000.3.13, 2002.8.14, 2007.3.22, 2007.9.27, 2008.2.29, 2013.3.23>
1. 국방·군사시설
  2. 공공청사
  3.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 「하천법」의 규정에 의한 하천, 철도, 항만 및 공항시설
  4. 농지개량시설
  5. 국토보존시설
  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댐시설 및 그 수물대상지
  7.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신설·이전 또는 확장하는 각급 학교의시설
  8.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9.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1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11. 기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③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단비(경운초지를 기준으로 한다)와 초지조성후 3년간의 초지관리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은 초지전용의 목적 및 공익성등을 참작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2.8.14, 2007.3.22, 2008.2.29, 2013.3.23>
- [본조신설 1992.1.30]



### 30. 축산물 수입이익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축산법 제45조

제45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축산법 및 시행규칙 농식품부 고시 제2013-84호

##### 축산법 제45조 - 생략

시행규칙 제48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45조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

1. 천연꿀: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
2. 그 밖에 축산물의 수급 원활과 유통질서의 문란 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 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의 경우 :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
  - 나.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에 따라 가목의 시장접근물량보다 증량된 물량의 경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용도에 쓰이는 물량의 경우를 제외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증량된 물량의 수입자결정방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금액 중 증량된 물량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31. 농산물수입이익금(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부담금 근거 법률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기금의 조성) ①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하여 7년간 총 1조 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2조(공매납입금 등의 징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정에 따른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협정에서 정한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납입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또는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목별 수입자 결정 등 수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협정 및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공매납입금 등의 징수) - 생략

### 32.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제 3 조(공사비의 재원 등) ①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전기를 공급하려는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드는 비용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改

替工事)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1. 재정용자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 ② 내선시설(內線施設) 공사비는 전기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용자금의 한도는 제11조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상환금과 전기요금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공사에 드는 비용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용자금과 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시행령

제3조(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이란 제4조에 따른 재정용자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2.13]

## 33.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전기사업법

제51조(부담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0]

### 3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 판매부과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등 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1.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 수입하는 석유 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 1리터당 36원(천연가스 및 석유가스의 경우에는 그 가스를 액화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1리터당 36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금: 수입 석유가격과 국내 석유가격과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징수방법, 징수유예,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입부과금 또는 판매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등 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수입 또는 판매하는 석유대체연료 1리터당 36원(석유대체연료가 가스 상태인 경우에는 그 가스를 액화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1리터당 36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징수방법, 징수유예,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2항, 시행령 제24조**

시행령 제24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30, 2012.6.29, 2013.3.23>

1.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유: 리터당 16원. 다만, 미주지역, 유럽지역(독립국가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프리카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에 대한 부과금의 금액은 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리터당 16원에서 해당 지역에서 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리터당 추가수송비(미주지역, 유럽지역 또는 아프리카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와 중동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수송비 차액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제품: 리터당 16원
3.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천연가스: 톤당 24,242원
4.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급휘발유: 리터당 36원
5.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탄: 톤당 62,283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의 원활한 공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석유제품을 수입하도록 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그 손실액을 뺀 금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에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 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30]  
[대통령령 제23455호(2011.12.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호 단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35.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4~26조

제24조(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해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해방지의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광산별로 산정한다. <개정 2011.3.30>

1. 전년도 광물의 생산실적
2. 광해의 요인·발생정도 및 범위
3. 광산의 가행연수 및 정도
4. 연도별 광해방지사설의 설치계획
5. 휴광·폐광 후 광해의 진행 가능성 및 그 종료 예정기간
6. 광해방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총액
7. 전년도까지 적립된 부담금의 적립금 총액
8. 광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에 필요한 비용총액(손해배상금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중부담하고 있는 광해방지비용의 감면
10. 그 밖에 광해방지에 필요한 비용

⑦ 그 밖에 부담금 산정기준·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 별표2, 고시 제2012-20호 별표2

제25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별표 2]

#### 부담금의 산정기준(제25조제1항관련)

1. 다음 연도 이후 부담금 총액  
(제2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비 × 제3호에 따른 부담금부과율) - 금년도까지의 부담금적립금

2. 광해방지사업비 산정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광해방지사업 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의 총 광해방지사업비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업내용	산정기준
가. 오염수질의 개선	[침출수, 오염수, 오·폐수의 총 배출량(m <sup>3</sup> /일)] × [1m <sup>3</sup> 당 침출수, 오염수, 오·폐수의 수질정화에 필요한 시설비용]
나. 폐석유실 방지	총 폐석발생량(m <sup>3</sup> ) × 1m <sup>3</sup> 당 복구비용
다. 광물찌꺼기유실 방지	총 광물찌꺼기발생량(m <sup>3</sup> ) × 1m <sup>3</sup> 당 복구비용
라. 광재유실 방지	총 광재발생량(m <sup>3</sup> ) × 1m <sup>3</sup> 당 복구비용
마. 먼지날림 방지	날림먼지의 배출총량(mg/Sm <sup>3</sup> ) × 1mg/Sm <sup>3</sup> 당 집진에 필요한 시설비용
바. 광연배출 방지	광연 배출총량(mg/Sm <sup>3</sup> ) × 1mg/Sm <sup>3</sup> 당 집진에 필요한 시설비용
사. 소음·진동 방지	소음·진동 발생시설 × 기준 이하 절감 조치에 필요한 시설비용
아. 산림복구 및 토지복구	총 훼손허가면적(ha) × 당해연도 1ha당 복구비용 * 1ha당 복구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한다.
자. 지반침하방지 및 복원	갱도길이 × 갱도단면적 × 1m <sup>3</sup> 당 충전비용 × 0.7 * 지표로부터 지하 150m 이상의 갱도와 산악지역의 갱도를 제외한다.
차. 토양개량·복원 및 정화(농경지를 포함한다)	토양 및 농경지 오염량(m <sup>3</sup> ) × 1m <sup>3</sup> 당 개량·복원 및 정화비용
카. 그 밖의 폐시설물 처리	총 폐시설물·자재의 처리비용

비 고 : 시설비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실비(實費)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부담금의 부과율은 광해방지사업비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광해방지사업 또는 긴급광해방지사업의 내용이 산림복구 또는 토지복구인 경우에는 사업비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 36. 특정물질 제조 수입 부담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24조의5

제24조의2(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부과·징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3.30.]

제24조의4(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에 해당 특정물질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 =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1킬로그램의 가격(제조업자가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공장도 가격으로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 파괴지수 × 특정물질의 종류별 징수비율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 파괴지수와 징수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특정물질의 종류별 징수비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수급 상황  
2.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가격 상황  
3. 그 밖에 대체물질과 그 이용기술의 개발 상황  
[본조신설 2011.3.30.]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시행령 제10조의4

법률 제24조의4(부담금의 산정기준) - 생략  
시행령 제10조의4(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 파괴지수와 징수비율)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 파괴지수와 징수비율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1.9.30]



### 37. 안전관리부담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액화석유가스 : 1킬로그램당 5원
2. 액화천연가스 : 1세제곱미터당 4.4원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 징수방법, 납부기한,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고시 제4조

#####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2.4.1.]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 2012.3.26., 타법개정]

제 4 조(부담금의 부과기준)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와 액화석유가스·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가 액화석유가스·액화천연가스를 판매 또는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 1킬로그램당 4.5원
2. 액화천연가스 : 1세제곱미터당 3.9원

### 38.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18조

제18조(건설비용의 부담금)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8]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에 단위당 기준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7.11.28]

### 39. 광물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광업법 제87조

제87조(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및 제8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지원을 위하여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 부과 기준, 징수 방법,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 하위규정 없음

### 40.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5조

제15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중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사용후핵연료의 종류·발생량, 단위발생량당 소요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⑥ 부담금의 납부방법과 납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3호

시행령 제 8 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3.6.17>

부담금의 산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사용후핵연료의 종류 및 분기별 발생량

종 류	단 위	분기별 발생량
경수로	다 발	원자력발전연료로 사용한 후 해당 분기에 원자로에서 인출한 사용후핵연료로서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말한다.
중수로	다 발	

2. 부담금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한다.

부담금 = 단위발생량당 소요비용 × 분기별 발생량

※ 단위발생량당 소요비용 = (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 - 부담금 적립잔액) × 1/미래사용후핵연료발생량의 현재가치

비 고

1. “경수로”란 일반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원자로를 말한다.
2. “중수로”란 중수를 냉각재로 사용하는 원자로를 말한다.
3. “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이하 “기준시점”이라 한다) 이후 연도별로 사용후핵연료관리사업(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법 제9조 각 호의 관리사업을 말한다)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기준시점의 현재가치로 각각 환산(실질할인율로 해당 기간만큼 할인하여 계산한다)하여 합산한 총액을 말한다.
4. “부담금 적립잔액”이란 기준시점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사용후핵연료 관리계정 잔액으로서 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5. “미래사용후핵연료발생량의 현재가치”란 기준시점 이후 원자력발전소에서 연도별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를 기준시점의 현재가치로 각각 환산(실질할인율로 해당 기간만큼 할인하여 계산한다)하여 합산한 총 발생량을 말한다.
6. 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 부담금 적립잔액, 미래사용후핵연료발생량의 현재가치, 실질할인율 및 단위발생량당 소요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14.9.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65호, 2014.9.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 02-2110-5534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별표1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제8조제1항의 별표2의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 및 제12조제2항의 별표3의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총담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및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총담금의 산정기준에 대해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3 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관리사업자가 발생자로부터 인수하여 저장 및 영구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비용”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6호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처분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 영구처분 하는 비용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개봉선원폐기물 관리비용”은 밀봉선원폐기물을 제외한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의 저장 및 영구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폐기물의 상태에 따라 가연성폐기물, 비가연성폐기물, 비압축성폐기물, 폐필터, 유기폐액, 혼합폐액, 무기폐액, 건조동물사체 및 냉동 동물사체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 나. “밀봉선원폐기물 관리비용”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방사능 농도가 감쇄되어 사용가치가 없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지 또는 폐지함으

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밀봉선원의 저장 및 영구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기준시점”은 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 부담금 적립잔액 및 미래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의 현재가치를 정하는 시점을 말한다.
  4. “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란 기준시점 이후 연도별로 사용후핵연료관리사업(저장, 운반, 처분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기준시점의 현재가치로 각각 환산(실질할인율로 해당기간 만큼 할인)하여 합산한 총액을 말한다.
  5. “부담금 적립잔액”이란 기준시점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사용후핵연료 관리계정 잔액으로, 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에서 기 지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6. “미래사용후핵연료발생량의 현재가치”란 기준시점 이후 원자력발전소에서 연도별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를 기준시점의 현재가치로 각각 환산(실질할인율로 해당기간 만큼 할인)하여 합산한 총 발생량을 말한다.
- ② 제1항의 용어정의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원자력안전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금액

제 4 조(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200ℓ 드럼 기준 1,193만원이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유치지역 지원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조(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비용) ①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유치지역 지원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구 분		관리비용 (200L, 만원)	
개봉 선원 폐기물	가면성폐기물	899	
	비가면성폐기물	362	
	비압축성폐기물	1,193	
	페필터	848	
	폐액	유기폐액	1,805
		혼합폐액	1,343
		무기폐액	794
	건조 동물사체	899	
	냉동 동물사체	961	
밀봉선원 폐기물		2,707	

②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기업에 해당하는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의 개봉선원폐기물은 관리비용을 40% 할인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단, 소기업의 구분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다.

제 3 장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

제 6 조(기준시점) 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 부담금 적립잔액 및 미래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의 현재가치를 정하는 기준시점은 2011년말로 한다.

제 7 조(실질할인율) 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 및 미래사용후핵연료발생량의 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실질할인율은 2012년 3/4분기말 기준으로 산정한 1.52%로 한다.

제 8 조(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 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
경 수 로	183,300억원
중 수 로	45,975억원

제 9 조(부담금 적립잔액) 사용후핵연료계정의 적립잔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적립잔액
경 수 로	35,681억원
중 수 로	13,056억원

제10조(미래사용후핵연료발생량의 현재가치) 미래사용후핵연료발생량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미래발생량의 현재가치
경 수 로	46,155다발
중 수 로	249,350다발

제11조(단위 발생량당 소요비용) 사용후핵연료 단위 발생량당 소요비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단위 발생량 당 소요비용
경 수 로	319,814천원
중 수 로	13,202천원

제11조의2(분기별 발생량) 사용후핵연료의 종류에 따른 분기별 발생량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경수로: 향후 사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핵연료 다발의 수로서 해당 분기에 원자로가 연료 재장전을 하는 경우에는 재장전을 완료한 때를 발생시점으로 본다. 다만, 영구정지 원자로의 경우 해당 분기에 인출된 핵연료 다발의 수로서 인출이 완료된 때를 발생시점으로 본다.
2. 중수로: 해당 분기에 원자로에서 인출이 완료된 핵연료 다발의 수

제 4 장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

제12조(추정비용)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의 추정비용은 2012년말 불변가격으로서 다음과 같다.

구 분	추정비용 (2012년말 기준)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총담금/호기	6,033억원

제13조(물가상승률 및 할인율)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총담금 산정기준의 물가상승률 및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물가상승률	2.93%
할인율 및 이자율	4.49%

제14조(물가반영기간 및 할인가간)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총담금 산정기준의 물가반영기간 및 할인가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물가반영기간 및 할인가간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총담금	설계수명 30년	35년
	설계수명 40년	45년
	설계수명 60년	65년

제15조(원자력발전소 해체 총담금 산정변수 변경시 조치) 원자력발전소의 해체비용 총담금 산정변수를 재평가하여 산정한 총담금이 기존의 산정변수로 산정한 총담금과 차이가 발생하면 변경된 산정변수를 적용하는 시점에 유효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기,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26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4-165호, 2014.9.5>

제 1 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적용례) 이 고시 제11조의2는 2014년 3분기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부터 적용한다.

#### 41.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들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6.7, 2014.5.20>

1. 쉐련: 20개비당 354원
2.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
3. 파이프담배: 1그램당 12.7원
4. 엽쉐련(葉卷煙): 1그램당 36.1원
5. 각련(刻煙): 1그램당 12.7원
6. 씹는 담배: 1그램당 14.5원
7.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9원
8. 물담배: 1그램당 442원
9. 머금은 담배: 1그램당 225원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법 제2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 생략

## 42. 대기배출부과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2.1, 2012.5.24>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⑦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환경개선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시행령 제24조~28조

제24조(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 ①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정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2. 제1호 외의 경우 :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② 제1항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4와 같다.

제25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日數)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이하 “자동측정사업장”이라 한다)의 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30분마다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0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30분 동안의 배출유량을 곱하여 초과배출량을 산정하고, 반기별(半期別)로 이를 합산하여 기준초과배출량을 산정한다.

1.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 명시된 부적정 운영 개시일부터 개선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2. 제1호 외의 경우 :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 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법 제33조, 법 제34조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이나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취소일

제26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

1. 위반이 없는 경우 : 100분의 100
2. 처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105
3. 2차 이상 위반한 경우 :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것

제28조(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①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이내배출량”이라 한다)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농도별 부과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31>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며,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7과 같고,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는 별표 8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최초의 부과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변동계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 43. 수질개선부담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먹는물관리법 제31조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② 부담금은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는 샘물등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3.22, 2011.7.21>

1. 「지방공기업법」 제21조에 따른 상수도 원가 및 하수도 원가
2.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3.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4. 다음 각 목의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
  - 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5.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환경개선사업 중 상수도 및 수질보전 부문의 세출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징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먹는물관리법 및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제31조 제2항 - 생략

시행령 제 8 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금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2>

1. 기타샘물 개발자가 취수한 샘물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1,600원  
나.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1,900원  
다. 2012년 1월 1일부터: 1세제곱미터당 2,200원
2.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가 취수한 샘물등 및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먹는샘물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3,400원  
나.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2,800원  
다. 2012년 1월 1일부터: 1세제곱미터당 2,200원

[전문개정 2009.12.30]

#### 44. 원인자 부담금(수도법)

##### 부담금 근거 법률 - 수도법 제71조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수도법시행령 제65조, 조례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

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3>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1.3>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1.3>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3>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

## 45. 수질배출부과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1조(배출부과금)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

한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본배출부과금

가.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초과배출부과금

가.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46조에 따른 자가측정 여부
  6.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⑥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45조**

제41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 이내 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이내 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으로 한다.

1. 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의 범위에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량
2. 법 제41조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량

③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에 관하여는 제45조제5항을 준용하고,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

항을 준용하며, 사업장별 부과계수는 별표 9,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10,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는 별표 11과 같다.

제45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①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부과하는 경우 또는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기준초과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법 제41조제1항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유출계수·누출계수)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②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더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은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은 400만원, 제2종사업장은 300만원, 제3종사업장은 200만원, 제4종사업장은 100만원, 제5종사업장은 50만원으로 한다.

2.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은 50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산식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으로 한다.

1.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

2.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양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유출·누출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14와 같다.

⑥ 공동방지사설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은 사업장별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⑦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을 준용한다.

## 46. 생태계보전협력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 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50억원의 범위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부과한다. 다만, 국방목적의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절차·감면기준·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6.10.4>

### 산정기준 및 산출식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3항 및 시행령 제38조1,2항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3항 - 생략

시행령 제38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4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법 제4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지역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용도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 처분시의 토지의 용도(부과대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용도를 말한다)에 따른다. <개정 2009.12.14>

1.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임야·염전·하천·유지 또는 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그 밖의 지목인 경우에는 0
2. 녹지지역 : 2
3. 생산관리지역 : 2.5
4. 농림지역 : 3
5. 보전관리지역 : 3.5
6. 자연환경보전지역 : 4

## 47. 폐기물부담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재료·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2.1, 2013.8.13>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

③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은 폐기물의 품목별로 그 종류와 규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폐기물부담금의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3.8.13>

⑥ 폐기물부담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稅入)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12.2.1>

⑦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 관계 전문기관에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부담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2.2.1>  
[전문개정 2008.3.21]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별표2 부칙 제19971호

제11조(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별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4.6.]

부 칙 <대통령령 제19971호, 2007.3.27.>

①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의 적용에 관한 특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 100분의 20
2.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 100분의 60

③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칙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입된 플라스틱제품 및 그 포장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3.11.20>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제11조 관련)

품목 구분	종류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기준
1. 살충제, 유독물제품	가. 플라스틱용기 1) 500ml 이하 2) 500ml 초과 나. 유리병 1) 500ml 이하 2) 500ml 초과 다. 금속캔 1) 500ml 이하 2) 500ml 초과	개당 24.9원 개당 30.7원 개당 56.2원 개당 84.3원 개당 53.9원 개당 78.2원
2. 부동액	부동액	ℓ 당 189.8원
3. 껌	껌	판매가의 1.8%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1.8%)
4. 1회용 기저귀	1회용 기저귀	개당 5.5원
5. 담배	담배(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	20개비(전자담배의 경우에는 20카트리지를 말한다)당 7원
6. 플라스틱제품	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또는 그 수입품(플라스틱 관 및 건축용 단열재를 포함한다)	합성수지 투입 kg당 75원

부 록

품목 구분	종류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기준
	나.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그 밖의 플라스틱제품 또는 그 수입품	합성수지 투입 kg당 150원

※ 비 고

1. 위 표 제1호의 경우 출고된 제품의 용기를 회수하여 같은 종류의 제품의 용기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위 표 제3호에 따른 판매가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으로 한다.
3. 위 표 제6호의 경우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플라스틱제품의 합성수지 투입량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합성수지 투입량으로 한다.
4. 제10조제2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가. 연간 매출액 10억원 또는 연간 수입액 미화 9만달러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이 경우 플라스틱 투입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1) 제조업자의 경우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투입량 (kg) × 10억원 ÷ 연간 매출액(원)
    - 2) 수입업자의 경우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투입량 (kg) × 9만달러(미화) ÷ 수입액(미화, 달러)
  - 나.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만킬로그램 또는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 3톤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5. 위 표 제6호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의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분부터 2014년분까지의 폐기물부담금을 제4호에 따른 감면과 별도로 50퍼센트를 추가 감면한다.

#### 48. 재활용부과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

②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 그 납부시기·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재활용부과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생략

시행령 제27조(재활용비용) ①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하 “재활용단위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6의 재활용기준비용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28조(재활용부과금의 산정·부과 등) ①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은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에 재활용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7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시행령 [별표 7] <개정 2009.4.6>

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제28조제1항 관련)

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	5% 이하	5% 초과 15% 이하	15% 초과 30% 이하	30% 초과
가산금액	재활용단위비용×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15/100	재활용단위비용×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20/100	재활용단위비용×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25/100	재활용단위비용×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30/100

49.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부담금 근거 법률 - 하수도법 제61조 1,2,3항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7.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산정기준 및 산출식 - 하수도법 제61조3항, 조례

하수도법 제61조 제3항 - 생략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제정

### 50.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

#### 부담금 근거 법률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종 수요자가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⑤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부과·징수 방법, 납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1,5항, 시행령 23,24조, 환경부고시 제2010-137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5항 - 생략

제23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고시)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수역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로 쓰이는 재원의 범위에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협의·조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조정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2년마다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과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부과율에 따른다.

제24조(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은 수도요금의 부과·징수 기준인 물사용량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자가 제21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의 물사용량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물사용량을 해당 수도사업자가 관할하는 급수구역(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말한다)에서의 최종 수요자 물사용량으로 한다.

1. 수도요금의 부과·징수 기준인 물사용량

2. 해당 수도사업자의 전년도 전체 취수량 중에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의 양(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에서 새로 취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공급계획물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시행 2013.7.31] [환경부고시 제2013-97호, 2013.7.31, 일부개정]

환경부(고객지원센터), 1577-8866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한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 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한다.

제 3 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3-97호, 2013.7.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51. 환경개선부담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제 9 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多量)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다만, 생산시설, 저장시설 및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 및 자동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지역, 부과 대상 시설물의 용도,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정기준 및 산출식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0조

제10조(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대기 또는 수질오염물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연료 사용량 × 단위당 부과금액 × 연료계수 × 지역계수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용수 사용량 × 단위당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지역계수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車齡係數) × 지역계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위당 부과금액, 대당 기본 부과금액, 연료계수,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52.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부담금 근거 법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48조의2(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제48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7.30]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및 시행령 제62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 생략

시행령 제62조(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그 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

1. 계획비 및 조사비
2. 본 공사비 및 부대공사비
3. 용지비(보상비를 포함한다)
4. 조작비 및 유지관리비
5. 장비 구입비 및 설치비
6. 사무관리비, 지급이자, 그 밖의 부대비용

② 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토지, 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을 처분하여 얻는 수입금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63조(원인자의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비용부담금의 총액) ① 법 제48조의2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의 원인이 되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원인자의 해당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과 관계되는 오염의 정도
2.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축적된 기간
3. 수질오염물질의 원인이 되는 양
4.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관계되는 시설물을 원인자 외의 자가 이용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전체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 53. 총량초과부과금(금강수계)

#### 부담금 근거 법률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총량초과부과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총량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1.28>

②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을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을 말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1.4.28, 2014.1.28>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



계수(賦課計數),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정기준 및 산출식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 14조**

제12조(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4.5.9>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가. 초과배출이익은 나목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이라 한다) 또는 지정된 배출량(이하 “지정배출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하 “초과오염배출량”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이에 다목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초과오염배출량의 산정방법

1) 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기간 중에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초과오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가)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초과여부를 검사한 날을 말한다)부터 법 제12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폐쇄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완료예정일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부터 그 행위를 중단한 날

- (1)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한 경우
  - (2) 비밀배출구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3) 그 밖에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2) 1)의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조치명령등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채취일의 오염물질측정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오수 및 폐수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 오수 및 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일일오염배출량이 할당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양과 일일유량이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양에 배출농도를 곱하여 산정한 값으로 하되, 값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값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 3) 2)의 일일초과오염배출량, 일일유량과 측정유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가)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 산식으로 산정한 양 중 큰 양으로 한다.

(1)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유량×배출농도×10<sup>-6</sup>-할당오염부하량  
 (2)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유량-지정배출량)×배출농도×10<sup>-6</sup>의 산정방법

- 비 고: 1. 오염물질의 양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2.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3. 할당오염부하량과 지정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과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4.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의 단위는 킬로그램(kg)으로 한다.

나) 일일유량의 산정방법

○일일유량 = 측정유량×조업시간

- 비 고: 1.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L/min)로 한다.  
 2.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오수 및 폐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한다.  
 3. 일일유량의 단위는 리터(L)로 한다.

다) 측정유량과 배출농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측정유량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 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1) 적산유량계에 의한 산정
- (2) 적산유량계에 의한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운영일지상의 시료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의한 산정. 이 경우 갑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측정유량 증가가 있는 경우 등 비정상적인 조업일은 제외하고 30일을 산정할 수 있다.
- (3) (1) 또는 (2)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또는 해수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제품함유량 그 밖에 오·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한 용수량을 감하는 방법에 의한 산정

다. 연도별 부과금 단가는 다음과 같다.

연 도	오염물질 킬로그램당 연도별 부과금 단가	
	BOD	T-P
2011	5,800원	25,000원
2012 이후	5,800원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25,000원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비 고: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는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2011년도의 부과금 산정지수는 1로 한다.

## 2. 초과율별 부과계수

초과율	20% 미만	20% 이상	40% 이상	60% 이상	80% 이상	100% 이상	200% 이상	300% 이상	400% 이상
		40% 미만	60% 미만	80% 미만	100% 미만	200% 미만	300% 미만	400% 미만	
부과계수	1.0	1.5	2.0	2.5	3.0	3.5	4.0	4.5	5.0

비 고: 초과율은 할당오염부하량에 대한 일일초과배출량의 백분율을 말한다.

부 록

3. 지역별 부과계수

목표수질	등급	Ia	Ib	II	III	IV	V	VI
	BO D	1 이하	1 초과 2 이하	2 초과 3 이하	3 초과 5 이하	5 초과 8 이하	8 초과 10 이하	10 초과
	T-P	0.02 이하	0.02 초과 0.04 이하	0.04 초과 0.1 이하	0.1 초과 0.2 이하	0.2 초과 0.3 이하	0.3 초과 0.5 이하	0.5 초과
부과계수		1.6	1.5	1.4	1.3	1.2	1.1	1.0

비 고: 목표수질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된 해당 구역의 목표수질을 말한다.

4.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일 오·폐수 배출량 규모(m <sup>3</sup>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0,000 이상	1) 처음 위반한 경우: 1.8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7,000 이상 10,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7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4,000 이상 7,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6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2,000 이상 4,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5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700 이상 2,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4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4를 곱한 값
200 이상 7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3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3을 곱한 값

1일 오·폐수 배출량 규모(m <sup>3</sup>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50 이상 2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2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2를 곱한 값
5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1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1을 곱한 값

5.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총량초과부과금 =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초과배출이익 ×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초과율별 부과계수 × 제3호에 따라 산정된 지역별 부과계수 × 제4호에 따라 산정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감액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

비 고: 감액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과징금을 말한다.

54. 물이용부담금(금강수계)

부담금 근거 법률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정기준 및 산출식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32조

제32조(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하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

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은 제30조에 따른 부과율에 제31조에 따른 물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 55. 총량초과부과금(낙동강수계)

### 부담금 근거 법률 -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총량초과부과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총량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係數),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부과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개정 2011.7.21>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4조(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4.5.9>

####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1.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가. 초과배출이익은 나목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이라 한다) 또는 지정된 배출량(이하 “지정배출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하 “초과오염배출량”이라 한다)과 다목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초과오염배출량의 산정방법

1) 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기간 중에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초과오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가)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초과여부를 검사한 날을 말한다)부터 법 제12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완료 예정일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부터 그 행위를 중단한 날

(1)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한 경우

(2) 비밀배출구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3) 그 밖에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2) 1)의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조치명령등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채취일의 오염물질측정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할 때의 오수 및 폐수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 오수 및 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일일오염배출량이 할당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양과 일일유량이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양에 배출농도를 곱하여 산정한 값으로 하되, 값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값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3) (2)의 일일초과오염배출량, 일일유량과 측정유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 산식으로 산정한 값 중 큰 값으로 한다.

$$\text{일일초과오염배출량} = \text{일일유량} \times \text{배출농도} \times 10^{-6} - \text{할당오염부하량}$$

$$\text{일일초과오염배출량} = (\text{일일유량} - \text{지정배출량}) \times \text{배출농도} \times 10^{-6}$$

비 고: (1) 오염물질의 양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2)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부 록

(3) 할당오염부하량과 지정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과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4)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의 단위는 킬로그램(kg)으로 한다.

나) 일일유량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text{일일유량} = \text{측정유량} \times \text{조업시간}$$

비 고: (1)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L/min)로 한다.

(2)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오수 및 폐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한다.

(3) 일일유량의 단위는 리터(L)로 한다.

다) 측정유량과 배출농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측정유량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 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적산유량계에 의한 산정

(2) 적산유량계에 의한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운영일지상의 시료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의한 산정. 이 경우 갑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측정유량 증가가 있는 경우 등 비정상적인 조업일은 제외하고 30일을 산정할 수 있다.

(3) (1) 또는 (2)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또는 해수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제품함유량 그 밖에 오·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한 용수량을 감하는 방법에 의한 산정

다. 연도별 부과금 단가는 다음과 같다.

연 도	오염물질 킬로그램당 연도별 부과금 단가	
	BOD	T-P
2011	5,800원	25,000원
2012 이후	5,800원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25,000원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비 고: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는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2011년도의 부과금 산정지수는 1로 한다.



2. 초과율별 부과계수

초과율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부과계수	1.0	1.5	2.0	2.5	3.0	3.5	4.0	4.5	5.0

비 고: 초과율은 할당오염부하량에 대한 일일초과배출량의 백분율을 말한다.

3. 지역별 부과계수

	등급	Ia	Ib	II	III	IV	V	VI
목표수질	BOD	1 이하	1 초과 2 이하	2 초과 3 이하	3 초과 5 이하	5 초과 8 이하	8 초과 10 이하	10 초과
	T-P	0.02 이하	0.02 초과 0.04 이하	0.04 초과 0.1 이하	0.1 초과 0.2 이하	0.2 초과 0.3 이하	0.3 초과 0.5 이하	0.5 초과
부과계수		1.6	1.5	1.4	1.3	1.2	1.1	1.0

비 고: 목표수질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된 해당 구역의 목표수질을 말한다.

4.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일 오·폐수 배출량 규모(m <sup>3</sup>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가. 10,000 이상	1) 처음 위반한 경우: 1.8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나. 7,000 이상 10,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7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다. 4,000 이상 7,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6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부 록

1일 오·폐수 배출량 규모(m³)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라. 2,000 이상 4,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5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마. 700 이상 2,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4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4를 곱한 값
바. 200 이상 7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3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3을 곱한 값
사. 50 이상 2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2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2를 곱한 값
아. 5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1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1을 곱한 값

5.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총량초과부과금 =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초과배출이익 ×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초과율별 부과계수 × 제3호에 따라 산정된 지역별 부과계수 × 제4호에 따라 산정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감액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

비 고: “감액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이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과징금을 말한다.

56. 물이용부담금(낙동강수계)

부담금 근거 법률 -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에 따른 부담

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직접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8항에 따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조

제33조(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방법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하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은 제31조에 따른 부과율에 제32조에 따른 물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 57. 총량초과부과금(영산강, 섬진강 수계)

#### 부담금 근거 법률 -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총량초과부과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총량초과 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 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計數), 지역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부과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개정 2011.7.21>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 13조

제12조(총량초과 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초과배출  
이익의 산정방법,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총량초과 부과금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4.5.9>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가. 초과배출이익은 나목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이라 한다) 또는 지  
정된 배출량(이하 “지정배출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양(이하 “초과오염배출량”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이에 다목의  
연도별 부과금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초과오염배출량의 산정방법

1) 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기간 중에 할  
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초과오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가)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초과여부를 검사  
한 날을 말한다)부터 법 제12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치명  
령, 조업정지명령, 폐쇄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  
행완료예정일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할당오  
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부터 그 행  
위를 중단한 날

(1)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한  
경우

- (2) 비밀배출구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3) 그 밖에 방지사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2) 1)의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조치명령등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채취일의 오염물질측정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오수 및 폐수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 오수 및 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일일오염배출량이 할당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양과 일일유량이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양에 배출농도를 곱하여 산정한 값으로 하되, 값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값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 3) 2)의 일일초과오염배출량, 일일유량과 측정유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가)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 산식으로 산정한 양 중 큰 양으로 한다.

1)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유량×배출농도×10<sup>-6</sup>-할당오염부하량  
 2)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유량-지정배출량)×배출농도×10<sup>-6</sup>

- 비 고: 1. 오염물질의 양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2.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3. 할당오염부하량과 지정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과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4.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의 단위는 킬로그램(kg)으로 한다.

나) 일일유량의 산정방법

일일유량 = 측정유량×조업시간

- 비 고: 1.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L/min)로 한다.  
 2.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오수 및 폐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한다.  
 3. 일일유량의 단위는 리터(L)로 한다.

다) 측정유량과 배출농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측정유량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 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1) 적산유량계에 의한 산정

부 록

(2) 적산유량계에 의한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  
지시설운영일지상의 시료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의한 산정. 이 경우 갑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측정  
유량 증가가 있는 경우 등 비정상적인 조업일은 제외하고 30  
일을 산정할 수 있다.

(3) (1) 또는 (2)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또는  
해수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에  
서 생활용수량·제품함유량 그 밖에 오·폐수로 발생되지 아  
니한 용수량을 감하는 방법에 의한 산정

다. 연도별 부과금 단가는 다음과 같다.

연 도	오염물질 킬로그램당 연도별 부과금 단가	
	BOD	T-P
2011	5,800원	25,000원
2012 이후	5,800원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25,000원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비 고: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는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  
하며, 2011년도의 부과금 산정지수는 1로 한다.

2. 초과율별 부과계수

초과율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부과계수	1.0	1.5	2.0	2.5	3.0	3.5	4.0	4.5	5.0

비 고: 초과율은 할당오염부하량에 대한 일일초과배출량의 백분율을 말한다.

3. 지역별 부과계수

	등급	Ia	Ib	II	III	IV	V	VI
목표수질	BOD	1 이하	1 초과 2 이하	2 초과 3 이하	3 초과 5 이하	5 초과 8 이하	8 초과 10 이하	10 초과
	T-P	0.02 이하	0.02 초과 0.04 이하	0.04 초과 0.1 이하	0.1 초과 0.2 이하	0.2 초과 0.3 이하	0.3 초과 0.5 이하	0.5 초과
부과계수		1.6	1.5	1.4	1.3	1.2	1.1	1.0

비 고: 목표수질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된 해당 구역의 목표수질을 말한다.

4.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일오·폐수 배출량 규모(m <sup>3</sup>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0,000 이상	1) 처음 위반한 경우: 1.8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7,000 이상 10,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7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4,000 이상 7,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6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2,000 이상 4,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5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700 이상 2,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4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4를 곱한 값
200 이상 7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3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3을 곱한 값

1일오·폐수 배출량 규모(m <sup>3</sup>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50 이상 2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2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2를 곱한 값
5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1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1을 곱한 값

5.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총량초과부과금 =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초과배출이익 ×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초과율별 부과계수 × 제3호에 따라 산정된 지역별 부과계수 × 제4호에 따라 산정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감액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

비 고: 감액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과징금을 말한다.

58. 물이용부담금(영산강, 섬진강 수계)

부담금 근거 법률 -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직접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8항에 따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30~32조**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생략  
시행령 제32조(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하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은 제30조에 따른 부과율에 제31조에 따른 물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59. 총량초과부과금(수도권 대기)**

**부담금 근거 법률 -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0조(총량초과부과금) ①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총량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부과금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부과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개정 2011.7.21>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3조**

제23조(부과금 산정방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은 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9.25]

## 60. 재활용부과금(전기전자제품)

### 부담금 근거 법률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5조에 따른 회수·인계·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7.16>  
② 제1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기준과 그 납부시기·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0조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기준비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기준비용(이하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5의 제품군별 재활용에 드는 단위비용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비용 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제20조(회수부과금의 기준비용)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이하 “회수부과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에 드는 기준비용(이하 “회수부과금 기준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5의 제품군별 회수에 드는 단위비용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회수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② 제1항에 따른 회수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회수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12.30]  
[제2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9조의2로 이동 <2013.12.30>]

### 61. 총량초과부과금(기타수계)

#### 부담금 근거 법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

제 4 조의7(오염총량초과부과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할당오염부하량등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로부터 총량초과부과금(이하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②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0조(오염총량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①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이하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은 초과배출이익에 초과율별·위반횟수별·지역별 부과계수를 각각 곱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최근 2년간 법 제4조의6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정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하며, 사업장별로 산정한다.

####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2.1.17>

#####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산정 방법 및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1.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오염총량초과부과금 = 초과배출이익 × 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감액 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

비 고: 감액 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은 법 제4조의7제3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과징금을 말한다.

2.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가. 초과배출이익이란 수질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수질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말하며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초과배출이익} = \text{초과오염배출량} \times \text{연도별 부과금 단가}$$

나. 초과오염배출량이란 법 제4조의5제1항 전단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이라 한다)이나 지정된 배출량(이하 “지정배출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을 말하며,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초과오염배출량} = \text{일일초과오염배출량} \times \text{배출기간}$$

1) 일일초과오염배출량

가)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 중 큰 값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begin{aligned} \text{일일초과오염배출량} &= \text{일일유량} \times \text{배출농도} \times 10^{-6} - \text{할당오염부하량} \\ \text{일일초과오염배출량} &= (\text{일일유량} - \text{지정배출량}) \times \text{배출농도} \times 10^{-6} \end{aligned}$$

- 비 고: 1.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의 단위는 킬로그램(kg)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2. 일일유량은 법 제4조의6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을 채취하였을 때의 오수 및 폐수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오수 및 폐수총량을 말한다.
3. 배출농도는 법 제4조의6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을 채취하였을 때의 배출농도를 말하며,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4. 할당오염부하량과 지정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과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나) 일일유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일일유량} = \text{측정유량} \times \text{조업시간}$$

- 비 고: 1. 일일유량의 단위는 리터(L)로 한다.
2.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L/min)로 한다.
3.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오수 및 폐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한다.

다) 측정유량과 배출농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측정유량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 유량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1) 적산유량계에 의한 산정
- (2) 적산유량계에 의한 방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방지시설 운영일지 상의 시료 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의한 산정
- (3) (1)이나 (2)의 방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또는 해수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제품함유량, 그 밖에 오수 및 폐수가 발생하지 아니한 용수량을 빼는 방법에 의한 산정

2) 배출기간

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시작한 날부터 그 행위를 중단한 날

- (1)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2) 비밀배출구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나) 위 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할당오염부하량이나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기 시작한 날(배출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초과 여부를 검사한 날을 말한다)부터 법 제4조의6제1항 또는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폐쇄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완료 예정일

다. 연도별 부과금 단가는 다음과 같다.

연 도	수질오염물질 1kg당 연도별 부과금 단가
2004	3,000원
2005	3,300원
2006	3,600원
2007	4,000원

부 록

연 도	수질오염물질 1kg당 연도별 부과금 단가
2008	4,400원
2009	4,800원
2010	5,300원
2011	5,800원

비 고: 2012년 이후에는 2011년도 부과금 단가에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를 곱한 값으로 하며,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는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2011년도 부과금 산정지수는 1로 한다.

3. 초과율별 부과계수

초과율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부과계수	1.0	1.5	2.0	2.5	3.0	3.5	4.0	4.5	5.0

비 고: 초과율은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할당오염부하량에 대한 일일초과배출량의 백분율을 말한다.

4. 지역별 부과계수

목표수질	등급	Ia	Ib	II	III	IV	V	VI
	BOD	1 이하	1 초과 2 이하	2 초과 3 이하	3 초과 5 이하	5 초과 8 이하	8 초과 10 이하	10 초과
부과계수		1.6	1.5	1.4	1.3	1.2	1.1	1.0

비 고: 목표수질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된 해당 구역의 목표수질을 말한다.

5.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일 오수·폐수 배출량 규모(m <sup>3</sup> )	위반횟수별 부과 계수
10,00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의 위반행위: 1.8</li> <li>·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li> </ul>
7,000 이상 10,000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의 위반행위: 1.7</li> <li>·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li> </ul>
4,000 이상 7,000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의 위반행위: 1.6</li> <li>·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li> </ul>
2,000 이상 4,000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의 위반행위: 1.5</li> <li>·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li> </ul>
700 이상 2,000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의 위반행위: 1.4</li> <li>·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4를 곱한 값</li> </ul>
200 이상 700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의 위반행위: 1.3</li> <li>·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3을 곱한 값</li> </ul>
50 이상 200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의 위반행위: 1.2</li> <li>·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2를 곱한 값</li> </ul>
50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의 위반행위: 1.1</li> <li>·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1를 곱한 값</li> </ul>

## 62. 총량초과부담금(한강수계)

### 부담금 근거 법률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제 8 조의5(총량초과부과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총량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③ 부과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係數),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각 부과계수, 부과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부과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 제6조의 7

제 6 조의5(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법 제8조의5제3항에 따른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법 제8조의4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1.5.30.]

## 63.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제33조

제31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3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① 제32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률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가 1만톤 이상이 되는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이하 “특별분담금률”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특별분담금률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한다.  
 ③ 특별분담금률의 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32조, 시행령 27,28조, 환경부고시 2011-174호**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 생략

제32조(분담금의 산정 등)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인 경우 해당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전체 합계액을 말한다)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이하 “분담금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분담금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한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액
2. 예상되는 구제급여의 지급액
3. 전년도까지 적립된 분담금의 총액
4. 그 밖에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비용

③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중 “공단”은 “환경부장관”으로 본다.

시행령 제27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8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의 결정방법 등) ①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이하 “특별분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제27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에 비례하여 사업장별로 환경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분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014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시행 2014.1.1] [환경부고시 제2013-185호, 2013.12.30, 제정]

환경부(환경보건관리과), 044-201-6820

1. 2014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4
2. 적용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한 :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64. 회수부과금(전기·전자제품)**

**부담금 근거 법률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8조의2(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16조의4에 따른 회수 및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회수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수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이라 한다)을 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나 공제조합에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의 기준과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납부 시기·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16]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의5(현 제20조의2)**

제20조의2(회수부과금의 산정·부과 등) ① 회수부과금은 회수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수량에 회수부과금 기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65.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제 9 조(사업주의 부담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0.6.4>

③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고시하는 노무비율(勞務比率)에 따라 보수총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0.1.27>

④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제1항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중 “공단”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7.12.27]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07.12.27>]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2항, 3항

임금채권보장법 제 9 조 제2항, 제3항 - 생략

## 66. 장애인 고용부담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33조(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10.9>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

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2011.3.9>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 ⑨ 제4항에 따른 도급의 기준, 그 밖에 부담금 감면의 요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 생략

#### 67.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21조(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2.6, 2013.3.23>

제2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은 해제대상지역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100분의 10에 해당 지역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바다·하천·도랑·제방(堤防)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면적을 제외한다. <개정 2013.8.6>

②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5.28>

부담금 =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 허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허가 받은 토지 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 ×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규정하는 시설별 부과율

④ 그 밖에 부담금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정기준 및 산출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 시행규칙

시행령 제36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5, 2012.5.14, 2013.3.23, 2014.1.28>

1.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다음 각 목의 토지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할 것
  - 가. 터널 굴착 시 터널출입구를 제외한 터널 내부의 부지
  - 나. 이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부지에서 다시 형질변경하는 토지(이미 부담금이 부과되어 납부된 토지에서 허가된 사업 외의 사업을 위하여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별표 1 제3호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과 임시시설의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
2. 부담금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할 것
3. 부담금 산정 시 해당 시·군·구에 개발제한구역 외에는 같은 지목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비교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로 시·군·구의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를 갈음할 것
4.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으면 공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관할 구역의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를 고시할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것

②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서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4.1.28>

1. 바다·하천·도랑·제방(堤防)
2.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및 지방도에 한정한다)
3. 철도

시행규칙 제18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영 제36조제5호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7, 2012.5.21>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필지별로 산정하여 합산할 것

2. 허가 내용이 변경되어 건축물의 바닥 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증감된 경우 그 증감된 면적에 대하여는 당초 허가일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정산할 것

## 68. 개발부담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3 조(개발이익의 환수) 국가는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산정기준 및 산출식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13조

제 8 조(부과 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2.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제13조(부담률)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제8조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사업: 100분의 20
2.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발사업: 100분의 25.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 의무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14]

## 69.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11조의7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8.6>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
2.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3.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공제액

② 제11조제1항제7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8.6>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과율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위치·규모·특성 등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개발비는 단위당 개발비용으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법」 제21조제10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한다. <개정 2013.8.6>

⑤ 제1항에 따른 개발면적, 용적률, 건축연면적, 공제액 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7]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 생략

## 70. 수익자부담금(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부담금 근거 법률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3조(수익자부담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건설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익의 범위에서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담하는 자의 범위, 부담금의 산출방법과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 시행규칙 9조

시행령 제24조(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익자부담금을 부담시킬 수 있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당시 해당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流水)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은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댐건설 완료 후 댐건설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예상 증가수익을 말한다)의 50퍼센트로 하되, 각 수익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총액은 댐건설을 위한 공사에 든 비용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시행규칙 제 9 조(수익자부담금의 산출방법)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계산할 때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은 별표 3 제2호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별표 3 제2호 중 “타당투자액”은 “예상 수익”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11.30]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3.3.23>

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세부 산출방법(제7조 관련)

1. 대체건설비의 산출방법

- 가. 대체시설 또는 공작물은 다목적댐 및 그 부대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장소와 같은 장소나 설치비용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 나. 다목적댐의 용도 중 발전 용도의 대체건설비를 산출할 때 다목적댐 및 그 부대시설 또는 공작물이 가지는 효용과 같은 효용은 해당 다목적댐 및 그 부대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효출력(kw) 및 유효전력량(kwh)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대체건설비의 범위는 대체시설 또는 공작물을 직접 설치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조사설계비 및 부대비와 건설기간 중의 이자로 한다. 이 경우 건설기간 중의 이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2. 타당투자액의 산출방법

- 가. 다목적댐의 용도별 타당투자액의 산출방법
  - 1) 홍수 조절 용도의 타당투자액: 다목적댐 및 그 부대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다음의 효용을 시가(時價)로 환산한 가액(價額)의 합계액
    - 가) 제방, 호안(護岸), 수제(水制), 그 밖의 하천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의 감소
    - 나) 도로, 교량, 철도, 그 밖의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의 감소
    - 다) 홍수의 범람으로 인한 농작물의 감산(減産), 농지의 유실(流失), 가옥의 파손, 그 밖의 자산(가계자산, 사무소, 광공업 및 농어업의 상각자산, 재고자산 및 영업손실을 포함한다)의 피해 방지 또는 감소

- 라) 토사의 퇴적으로 인한 준설(浚渫) 유지비의 감소
  - 마) 홍수 범람 방지로 인한 지가(地價) 상승
  - 2) 관개(灌溉) 용도의 타당투자액: 다목적댐 및 그 부대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다음 금액의 합계액
    - 가) 증가된 작물생산량에 표준단가와 순이익률을 각각 곱한 연간 작물수입 증가액
    - 나) 댐건설 전의 영농시설의 유지관리비에서 댐건설 후의 영농시설의 유지관리비를 뺀 연간 시설유지관리비 감소액
    - 다) 댐건설 전의 영농에 투입되는 노동량에서 댐건설 후의 영농에 투입되는 노동량을 뺀 노동량에 노무비 단가를 곱한 노무비 절감액
  - 3) 공업용수·생활용수 용도의 타당투자액: 다목적댐 및 그 부대시설 또는 공작물에 의하여 공급되는 용수량에 단위당 용수요금을 곱한 금액
  - 4) 발전 용도의 타당투자액: 다목적댐 및 그 부대시설 또는 공작물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력량에 해당 시설과 유사한 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요금을 곱한 금액. 다만, 전기요금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라 유효출력의 효용으로부터 산출된 금액과 유효전력량의 효용으로부터 산출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5) 하천유지용수 용도의 타당투자액: 다목적댐 및 그 부대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의하여 공급되는 용수의 효과와 같은 수질, 하천생태나 그 밖에 환경 보전에 필요한 대체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드는 비용의 합계액
  - 6) 그 밖의 용도의 타당투자액: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정한 금액
- 나. 영 별표 1 비고 제2호의 자본환원 계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text{자본환원 계수} = \frac{i(1+i)^n}{(1+i)^n - 1}$$

(i: 이자율, n: 댐사용권 내용연수)

- 다. 다목적댐의 용도 중 특정용도의 효용이 다목적댐의 건설이 완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의 타당

투자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감액할 수 있다.

라. 유효출력(kw)과 유효전력량(kwh)에 의한 발전 용도의 타당투자액 산출방법

1) kw편익=kw당 가치×유효출력량(kw)

가) kw당 가치=kw당 대체화력 건설비×화력의 연간 고정비율×수력 대 화력의 계수

나) 화력의 연간 고정비율은 자본비용비율(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입된 차입금의 이자와 배당액의 합계액을 화력발전소에 투입된 총건설비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감가상각비율, 보험료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비율, 운전유지비율(연료비는 운전유지비에 산입하지 않는다)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수력 대 화력의 계수

$$\frac{\text{수력}(1-\text{1차 발전단 기준 손실률}) \times (1-\text{발전소 내 소비율}) \times (1-\text{보수율})}{\text{화력}(1-\text{1차 발전단 기준 손실률}) \times (1-\text{사고율}) \times (1-\text{발전소 내 소비율}) \times (1-\text{보수율})}$$

2) kwh편익=kwh당 가치×유효전력량(kwh)

가) kwh당 가치=kwh당 화력의 연료비×수화력 조정 계수

나) 수화력 조정 계수=

$$\frac{\text{수력}(1-\text{발전소 내 소비율}) \times (1-\text{송전손실률})}{\text{화력}(1-\text{발전소 내 소비율}) \times (1-\text{송전손실률})}$$

## 71. 원인자부담금(도로법)

### 부담금 근거 법률 - 도로법 제91조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산정기준 및 산출식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72.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도시개발법 제57조1항

제57조(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① 삭제 <2014.5.21.> /이전의 ① 행정청인 시행자는 그 시행자 외의 자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공공시설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개정 2013.3.23.>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도시개발법 제57조1항, 시행령 73조

도시개발법 제57조 제1항 - 현행 삭제

시행령 제73조(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총액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다만,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가 그 도시개발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의 총액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범위에서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2.3.26>

② 제1항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조사비, 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73.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및 추가설치 비용부담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도시개발법 제58조

제5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①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

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 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규모나 지원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을 실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구역 밖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 등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를 필요하게 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시행자의 부담으로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시설의 관리자 및 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산정기준 및 산출식 - 도시개발법 58조1,3,4항, 시행령 73조, 시행규칙 제36조**

도시개발법 제58조 제1항, 제3항, 제4항 - 생략

시행령 제7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총액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조사비, 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3조(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총액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다만,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가 그 도시개발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의 총액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범위에서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2.3.26>

② 제1항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조사비, 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74. 혼잡통행료

### 부담금 근거 법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

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기본적인 부과기준과 부과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용도, 지정의 해제기준 등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5.19, 2013.3.23>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7조

시행령 제15조(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시간대별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이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평균 통행속도가 별표 2 가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도시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와 그 주변 영향권
2. 교차로 지체시간이 별표 2 나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교차로와 그 주변 영향권

② 시장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우회도로의 확보
2. 대체교통수단의 확충
3. 교통 지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징수 방식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이라 한다)이 인접한 시·도 또는 시·군과 교통이 연계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연계교통지역”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이 같은 도에 있는 행정구역 간 연계교통지역인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

부를 조정하며,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행정구역 간 연계교통지역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조정한다. <개정 2010.1.7, 2013.3.23, 2014.1.14>

⑤ 시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4항에 따른 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조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31.]

시행규칙 제 3 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혼잡통행료 부과
2.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방안
3. 그 밖에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②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전자식 징수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시행 2014.1.9.] [서울특별시조례 제5658호, 2014.1.9.,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02-2133-2245

제 7 조(혼잡통행료 부과기준) 혼잡통행료 징수금액은 2,000원으로 한다.(개정 2009.09.29)

## 75. 교통유발부담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40조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⑨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13.8.6, 2014.5.21>

[전문개정 2008.3.28]

[제18조에서 이동 <2008.3.28.>]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때 그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 - 생략

## 76. 시설부담금(산업입지)

### 부담금 근거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시설 부담) ①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에서 제30조에 따른 준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③ 제2항의 시설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부담기준 및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31조(시설 부담)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3.11.6, 1996.6.29, 2000.7.1, 2003.1.14, 2005.3.25, 2011.11.16, 2012.4.10, 2014.5.9>

1.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2. 산업단지안에 보존할 녹지 및 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3. 용수공급시설·하수도시설·전기시설·통신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5.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하여 산업단지 인근에 설치하는 녹지, 공원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은 해당 공공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제40조제9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4.6>
-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준치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시설부담금은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을 개발후 분양하는 총면적(기존공장등의 총부지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누는 것에 시설부담금을 부담할 자의 소유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준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별로 시설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3.11.6, 2006.4.20, 2007.10.4, 2008.2.29, 2012.11.20, 2013.3.23, 2014.5.9>

## 77. 과밀부담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수도권 정비 계획법 제12조~제15조

-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 및 공공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 제1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調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3.3.23>
- ③ 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수도권 정비 계획법 제14조, 시행령 제18조 별표2

수도권 정비 계획법 제14조 - 생략  
시행령 제18조(부담금의 산정)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3.3.23>

부담금의 산정방식(제18조 관련)

1.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업무용시설등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면적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또는 복합 건축물의 경우(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신축의 경우
    - 1) 주차장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제17조제8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기준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05+기준면적 초과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 기초공제면적은 5천제곱미터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2) 주차장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금=(신축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 나. 증축의 경우
    - 1) 기존 건축물의 면적(이하 “기준면적”이라 한다)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 기존면적과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기준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05+전체면적 중 기준면적 초과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면적 대신 기초공제면적을 적용한다.
      - 나) 기존면적과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금=(전체면적-기준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면적 대신 기초공제면적을 적용한다.

2) 기존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text{부담금} = (\text{전체면적} - \text{기존면적} - \text{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 \times \text{단위면적당 건축비} \times 0.1$$

다.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부담금 산정은 증축의 경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존면적” 대신 “전체면적-용도변경면적”을 적용하며,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 대신 “용도변경면적 중 주차장면적”을 적용한다.

라. 대통령령 제14234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4월 30일 이후 신축하여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것으로서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또는 복합 건축물이 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건축물 전체를 신축하는 것으로 보아 가목의 산정방식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며, 이 중 이미 부담금이 부과된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된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산정한다.

마. 주상복합건축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 및 제17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연구소 또는 금융업소가 포함된 건축물에 대한 부담금은 주택면적, 기부채납시설면적이거나 연구소 또는 금융업소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하 “산정대상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대상면적이 가목1)의 기준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준면적 대신 산정대상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가 아닌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또는 복합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부담금은 업무용시설등의 면적(업무용시설등에 딸린 주차장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만을 건축물의 면적으로 보고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식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3. 제3조제3호의 공공 청사의 경우

가. 신축의 경우

$$\text{부담금} = (\text{신축면적} - \text{주차장면적} - \text{기초공제면적}) \times \text{단위면적당 건축비} \times 0.1$$

기초공제면적은 1천제곱미터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증축의 경우

$$\text{부담금} = (\text{전체면적} - \text{기존면적} - \text{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 \times \text{단위면적당 건축비} \times 0.1$$

\*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면적 대신 기초공제면적을 적용한다.

다.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부담금 산정은 증축의 경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존면적” 대신 “전체면적-용도변경면적”을 적용하며,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 대신 “용도변경면적 중 주차장면적”을 적용한다.

라. 대통령령 제14234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4월 30일 이후 신축하여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것으로서 공공청사가 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건축물 전체를 신축하는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가목의 산정방식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며, 이 중 이미 부담금이 부과된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된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산정한다.

마. 공공 청사와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이 포함된 건축물에 대한 부담금은 공공 청사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산정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단위면적당 건축비는 제곱미터당 표준건축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78. 시설부담금(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부담금 근거 법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4조(시설부담금)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5항

제34조(시설부담금)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물류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2. 물류단지의 공원 및 녹지(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를 말한다)
3. 용수공급시설·하수도시설·전기통신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은 제39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준치 시설의 소유자나 개발 후 토지·시설 등을 분양 받는 자가 내야 할 시설부담금은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 후

분양하는 총면적(기존시설 등의 총부지 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것에 시설부담금을 내야 할 자의 소유부지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존치 시설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별로 시설부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7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부담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7조

제37조(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부담금)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와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위한 부담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할 자 중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부담금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회사등이 해당 납부 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징수하여 정부에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정부의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며, 그 금액과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3.8.6]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11조

시행령 제31조(부담금액)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수납·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 및 제35조의2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부담금을 말한다. 이하 “책임보험료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3.3.23>

시행규칙 제11조(부담금액) 영 제3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책임보험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부담금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08.11.13, 2013.3.23>

## 80. 소음부담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1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항공법」 제3조에 따른 소유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16조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항공법」 제86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담금(이하 “소음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과 제9조제2항에 따라 소음기준의 위반을 통보받은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는 추가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2배를 소음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소음부담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및 부과금액에 대한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0조(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이하 “소음부담금”이라 한다)은 항공기가 제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 안의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부과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항공기 소유자등(「항공법」 제3조에 따른 소유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음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1. 제1등급·제2등급·제3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항공법」 제86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제4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5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4. 제6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③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 및 환율 적용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심야시간은 당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 81. 지하수이용부담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지하수법 제30조의2,3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전문개정 2011.5.30.]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5.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지하수법 제30조의3, 조례

지하수법 제30조의3 - 생략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

82. 재건축부담금

부담금 근거 법률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3 조(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2조(부과율)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재건축부담금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재건축초과이익을 당해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에 다음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부담금액으로 한다.

1.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천만원 이하 : 면제
2.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조합원수
3.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200만원 × 조합원수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조합원수
4.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7천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 : 600만원 × 조합원수 + 7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조합원수
5.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9천만원 초과 1억1천만원 이하 : 1천200만원 × 조합원수 + 9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조합원수
6.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1억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 조합원수 + 1억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조합원수



### 83.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금(국토계획법)

#### 부담금 근거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70조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1.4.14>

③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해당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른 용지비용은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價額)으로 한다.

1.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 정도를 고려하여 0.4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개별공시지가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 생략

### 84. 시설부담금(택지)

#### 부담금 근거 법률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

제12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① 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 공원, 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내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72호 시설부담금 단가산정방식 및 존치부지범위등 적용기준

제 9 조의3(건축물의 존치 등)

③ 시행자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부담금”이라 한다)를 그 시설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내도록 하는 경우에는 시설부담금 단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에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 용도별 가중치 등을 곱하여 산정한다)에 존치하는 부지 면적을 곱하여 시설부담금을 산출하되, 용도별 가중치 등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 산정방식 및 존치하는 부지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3.12.4]

####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시행 2013.4.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72호, 2013.4.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 044-201-3440

##### 1. 용어 정의

가. “예정지구”라 함은「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말한다.

- 나. “기존부지”라 함은 존치 대상건축물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 다. “취득부지”라 함은 예정지구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획지정리를 한 결과 기존 부지중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야 할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 라. “존치부지”라 함은 기존부지에서 취득부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 마. “공급부지”라 함은 획지정리를 한 후 그 존치되는 존치부지 외에 추가로 공급하는 부지로서 기존부지 중 취득부지에 해당하는 면적의 “취득공급부지”(취득부지가 있는 경우에 한함)와 새로이 추가되는 면적의 “초과공급부지”를 합한 부지를 말한다.
- 바. “존치건축물부지”라 함은 존치부지와 공급부지를 합한 부지를 말한다.

## 2. 산정 원칙

- 가. 시설부담금의 단가와 공급부지의 단가는 「별표」 「시설부담금·공급부지 단가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 나. 시설부담금은 시설부담금 단가에 존치부지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다.
- 다. 공급부지의 면적이 취득부지의 면적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 초과 공급부지 면적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 4}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중 해당용도의 공급가격을 적용하여 공급가격을 산출한다.
- 라. 존치건축물이 그 부지 대부분을 나지상태로 사용하는 주차장시설 등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면적에 해당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여 역산한 면적만을 그 존치건축물에 대한 기존부지로 본다.
- 마. 존치건축물과 존치건축물부지의 소유권이 다른 경우 그 존치건축물부지 전부를 공급부지로 보며, 그 공급단가는 해당용도에 따른 공급가격 결정방법에 따른다.

## 3. 시설부담금 부과 대상

법 제12조의2 관련규정에 따라 존치 하게 된 시설물의 존치부지(취득부지 및 공급부지는 제외)

## 4. 시설부담금 부과 및 납부 시기

- 가. 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반영되어 존치대상 건축물을 결정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소유자에 대하여 납부 기한을 정하여 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나. 시설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해당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준공일까지로 하며, 납부방법은 일시수납 또는 분할수납(연도별 수납 포함)의 방법 등에 의하되, 분할수납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보상금액, 공급부지의 공급금액,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 5. 시설부담금의 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부담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가. 공공청사, 학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을 존치하는 경우
- 나. 공원, 녹지 등 자자체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지역으로서 현황이 보전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을 존치하는 경우
- 다. 존치 건축물이 공동주택으로서 법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완료되어 존치협의를 어려운 경우

6.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09.5.24)」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0-399호, 2010.6.30>

(시행일) 이 고시는 2010. 6.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시설부담금 약정 체결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2-517호, 2012.8.10>

제 1 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172호, 2013.4.23>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시설부담금·공급부지 단가 산정기준

구 분	산 정 방 법
1. 시설부담금 단가(원/㎡)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용도가중치×부담률(20%)×지역감면율(50%)
2. 공급부지 단가(원/㎡)	기존부지 취득단가+시설부담금 단가
주)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2. “용도가중치”란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상의 용도가중치를 말한다. - 주거용도 1.0	

- 상업·업무용도 2.6
  - 공업용도 1.9
  - 기타용도 2.1
3. “부담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5항의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을 적용한다.
  4. “지역감면율”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을 제외한 지역에만 적용한다. 단,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하 10% 포인트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85. 기반시설 비용 부담금(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부담금 근거 법률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제26조(비용 부담의 원칙)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 명확한 하위규정 없음

### 86. 수산물수입이익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22조(공매납입금 등의 징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정에 따른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협정에서 정한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납입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1항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1항 - 생략

87. 수산자원조성금

부담금 근거 법률 -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

제44조(조성금)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④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에 따른 면적 또는 어선톤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초과량 및 부수어획량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조성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 조성금의 산정기준·감액기준·부과절차 및 부과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4항 시행령 별표14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 제4항 - 생략

시행령 제26조(조성금의 부과기준) 별 제44조제4항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시행령 [별표 14] <개정 2010.10.14>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구 분	부과금액	비 고
○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 어류·패류 등 양식어업: 헥타르당 10만원 ○ 정치망어업, 해조류, 복합 양식어업: 헥타르당 3만원	○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총부과금액=(부과금액×연장 받은 연수)÷10

부담금 관련 근거 법률 및 산출규정 정리

구 분	부과금액	비 고
<p>○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p>	<p>○ 연안어업·새우조망어업·실뽀장어안강망어업·패류형망어업·근해어업: 어선 톤당 5천원</p> <p>○ 건간망어업·건망어업·들망어업·선인망어업·승망류어업·안강망어업·장망류어업·지인망어업·해선망어업: 헥타르당 3만원</p> <p>○ 밧줄식종묘생산어업, 말목식종묘생산어업, 뗏목식종묘생산어업: 헥타르당 10만원</p>	<p>○ 부속선이 있는 어업의 경우 가공선 및 운반선을 제외한 부속선을 포함함</p>
<p>○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 중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p>	<p>○ 헥타르당 500만원(해조류종묘생산어업은 200만원)</p>	
<p>○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 중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p>	<p>○ 헥타르당 5만원</p>	
<p>○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수산자원의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대상에서 제외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li> <li>-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li> <li>-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li> </ul>	<p>○ 건당 300만원</p> <p>○ 건당 250만원</p> <p>○ 건당 200만원</p>	<p>○ 법 제35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함</p>
<p>○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부수어획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p>	<p>○ 0.1톤당 50만원</p>	

부 록

구 분	부과금액	비 고
○ 법 제52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별표 16에 따른 공유수면의 준 설,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의 조 성,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 광 행위 허가를 받은 자	○ 건당 500만원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를 받은 자	○ 헥타르당 21만 6천원	

비 고: 해당 어선의 총톤수가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본 문에 따라 「선박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측정된 어선의 경우에는 그 톤 수에 0.72를 곱하여 환산한 톤수를 말한다.

88. 방제분담금

부담금 근거 법률 -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

제69조(방제분담금) ① 배치의무자는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 출방지조치 등 해양오염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은 제9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은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 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 준·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정기준 및 산출식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 별표9

제54조(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배치의무자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는 별표 9와 같다.



시행령 [별표 9] <개정 2013.3.23>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제54조제1항 관련)

1. 대상: 경유 및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류를 운송 또는 저장하는 선박 및 기름저장시설

2. 부과기준

가. 선박

구 분		부과 기준	부과 금액	부과 방법
유조선	내항선	선박총톤수기준 1톤당	4.8원	매 1회 입항할 때마다
	외항선		13.6원	
유조선 외의 선박	내항선		2.4원	
	외항선		6.8원	

나. 기름저장시설: 유류 수량량 100 ℓ 마다 7.2원

3. 부과절차

가. 선박의 방제분담금(이하 이 표에서 “분담금”이라 한다)은 입항할 때마다 부과하며, 배치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분담금은 다음 달 5일까지,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의 분담금은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입항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입항하는 경우에는 1회의 입항으로 본다.

나. 선박의 소유자가 연간 10회의 입항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미리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분담금은 이를 면제한다.

다. 유조선 외의 선박이 선박수리를 목적으로 입항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부과한다.

라.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기름저장시설의 분담금을 1년간 해상으로부터의 수량량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분기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분기 1월 전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배치의무자는 매분기 말일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수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저장시설 규모의 반을 분담금 부과대상 물량으로 한다.

부 록

- 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류에 대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기름저장시설에 대해서는 경유에 대하여 별도로 분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바. 「한국전력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용 기름에 대하여는 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25를 부과한다.
- 사. 라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석유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비축하고 있는 기름에 대하여는 유류의 출하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다만, 전년도 출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5년간의 평균 출하량을 분담금 부과대상 물량으로 본다.
- 아. 분담금 납부대상 유종과 유사한 비중과 점도를 지닌 물질에 대한 적용 여부는 해양경찰청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검사결과에 따른다.
- 자. 분담금의 천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

89.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담금 근거 법률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20억원의 범위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부과한다. 다만, 국방목적의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다.

산정기준 및 산출식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2항, 시행령 제25조3항, 제26조1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 생략

시행령 제26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49조제4항 전단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법 제49조제4항 전단에 따른 지역계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1.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 : 2
2. 제1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지역 : 4

## 90.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41조

제4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상업용 목적의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심층수개발업자를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부담금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 대하여는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7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양심층수 평균 공급가격의 1천분의 1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방법과 관련한 평균 판매가격 및 평균 공급가격의 산정방법,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 36조

제32조(부담금의 요율)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7>

1.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요율은 제34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2.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구입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요율은 제35조에 따른 해양심층수 평균 공급가격의 1천분의 53으로 한다.

제36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 제34조에 따른 용량규격별 평균판매가격에 제32조 제1호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각 용량규격별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제34조제5항에 따라 평균가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것은 그 용량규격에 가장 가까운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부과금액을 정한다.
2. 해양심층수의 경우 : 제35조에 따른 평균 공급가격에 제32조제2호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처리수의 경우 : 구입한 처리수의 양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처리수의 제조에 사용된 해양심층수의 양으로 환산하여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 91. 해양환경개선 부담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

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부담금은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단위당 부과금액을 곱한 후 오염물질의 종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량·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1.6.15, 2013.3.23>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출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폐기물해양배출량(세제곱미터) × 단위당 부과금액 × 부과계수

② 제1항의 산식에서 폐기물해양배출량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실적서를 근거로 산정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단위당 부과금액과 종류별 부과계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9.22>  
 [전문개정 2009.12.31]

제25조의2(선박 등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란 별표 3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이 1백만리터 이상인 경우에는 1백만리터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75를 감한다.  

$$\text{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리터)} \times \text{단위당 부과금액} \times \text{부과계수}$$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단위당 부과금액과 종류별 부과계수는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11.9.22>  
 ⑥ 삭제 <2011.9.22>  
 [본조신설 2009.12.31]

## 92. 운항관리자비용 부담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해운법 제22조6항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⑥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자를 둬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국가는 운항관리자를 둬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1]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해운법 시행령, 여객선 운항 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운용비용)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운항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내항여객운송사업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3.3.24>  
 [본조신설 2012.11.30]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

[시행 2014.4.1] [해양수산부고시 제2014-26호, 2014.3.13,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044-200-5732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해운법」 제22조제6항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로부터 운항관리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해운법」 제3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 3 조(비용범위)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운항관리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여객운임액의 3.2%로 한다. 다만 남북한 간을 운항하는 여객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운항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간접경비를 포함한 비용으로 한다.

제 4 조(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①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여객운송사업자의 순여객운임액(여객운임수입 중 부가가치세, 터미널 이용료, 종선료를 공제한 여객운송사업자의 수입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부담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연안여객선 종합터미널 출항분에 대하여는 그날 징수한다.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부과된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부담금 및 가산금 산출 등에서 생긴 단수에 대하여는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9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부담금 근거 법률 -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0.5.31>

1.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0.5.31, 2012.2.22, 2013.3.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분된 산지별 또는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⑦ 삭제 <2012.2.22>

⑨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의 세부 산정기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일부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2012.2.22>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시행령 제24조4항

제24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납부방법·산정기준 등) ④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해당 연도의 잣나무 조립비와 식재 후 10년까지의 숲가꾸기 비용을 합한 금액과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水源涵養)·대기정화·토사유출방지·온실가스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고시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6항 후단에 따라 산지별·지역별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5.8.5, 2010.12.7, 2012.8.22>

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100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을 제외한 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
3. 준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

## 94. 임산물 수입이익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7조(농림수산물 관세 및 수입이익금의 용도)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림수산물 관세와 수입이익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민 소득 향상과 농어촌 발전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 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임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할 품목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 추천 기준과 그 밖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판매가격과 수입 가격과의 차액(差額)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輸入利益金)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11>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제49조(수입추천 신청시 기재사항 등) ② 법 제41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밥·갓·대추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20, 2013.3.23>

③ 산림청장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입이익금 징수를 하는 경우 그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25>

1. 지정기관배정방식 : 해당품목의 판매수익금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그 밖에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을 공제한 금액
2. 수입권공매방식 : 해당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 95.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3항~5항

제 7 조(기본재산)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

제 5 조의3(출연의 비율·시기 및 방법 등)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매월 말 현재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별표의 출연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등은 해당 농업협동조합등이 소속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라 한다)를 거쳐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 시행령 [별표] <개정 2012.8.3>

#####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제5조의3제1항 관련)

1. 은행등의 출연요율은 연 비율 1천분의 0.2에 다음 표에 따라 더하거나 빼 비율로 한다.

구 분			차등요율
	직전 반기 총 대위변제금액	1 미만	- 연 비율 1천분의 0.04
		1 이상 ~ 2 미만	- 연 비율 1천분의 0.02
	직전 반기 총 출연금액	2 이상 ~ 3 미만	0
		3 이상 ~ 4 미만	+ 연 비율 1천분의 0.02
		4 이상	+ 연 비율 1천분의 0.04

비 고: 총 출연금액 산정 시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미리 납부한 출연금은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납부시기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2. 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요율은 다음 표에 따른다.

금융회사등	출연요율
농업협동조합	연 비율 1천분의 0.37
수산업협동조합	연 비율 1천분의 0.54
상호저축은행	연 비율 1천분의 0.40
새마을금고	연 비율 1천분의 0.82
신용협동조합	연 비율 1천분의 0.71
산림조합	연 비율 1천분의 0.77

96.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부담금 근거 법률 -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3,4,6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5조

제111조(권한의 위탁)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위탁받은 권한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이 법에 따른 허가·지정·승인·등록 또는 교육훈련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관독업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6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56

제156조(비용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 ① 법 제111조제6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원자력이용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직접인건비: 위원회가 정하는 인건비 기준단가에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직접경비: 해당 업무에 직접 드는 경비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비
3. 각종 경비: 직접경비 외에 해당 업무에 드는 경비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경비
  -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산정기준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산정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수탁기관의 장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으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과 함께 산출 내용,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수탁기관의 장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납부한 비용에 대하여 해당 업무의 변경·취소 등의 사유로 비용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여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24]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56호, 2013.12.24, 일부개정]

방사선안전과, 02-397-7335

- 제 5 조(비용의 산정기준) ① 비용의 단위사업별 투입인력산출은 사업의 계획에서부터 최종정리 조치단계까지 소요되는 연구직 및 기술직 전문인력으로 한다. 다만, 발전용원자로는 부지사전송인 신청일 또는 건설허가 신청일 부터 기산하여 월할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4일 이하는 계상하지 않는다.
- ② 비용의 산정은 단위사업별 투입인력(인·일)에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발전용원자로에 대한 연간비용은 1기당 연간 금액으로 산정한다.
- ③ 기준단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고, 그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준단가는 전년도의 기준단가에 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직접인건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 정한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른다.
  2. 직접경비는 사업에 필요한 실제 소요경비로 계상한다.
  3.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50% 이내에서 계상한다.
  4.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이내에서 계상한다.
- ④ 발전용원자로의 경우 제4조제2항 및 제3항(제2호는 제외)의 업무 중 연간비용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은 업무로써 1,000인·일 이상의 소요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시비용을 징수하며, 그 비용은 안전기술원이 원자력관계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발전용원자로에 해당하는 수시비용 규모는 해당연도 연간비용의 5% 이내로 한다.

⑤ 비용 산정을 위한 매년도 투입인력은 연도별 사업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원자력관계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안전기술원이 정한다. 다만,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용 기관은 제외한다.

제 6 조(비용의 결정 등) ① 안전기술원은 제5조의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 범위 내에서 매년도 단위사업별비용을 정하여 사업개시연도 전까지 법 제111조제3항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제15조의 절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연도 중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동 비용을 사업개시 년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 97.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비용부담금

### 부담금 근거 법률 - 약사법

제86조의2(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하여 의약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로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부과·징수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은 이 법에 따라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의약품의 생산액 또는 수입액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기본부담금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작용 피해구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의약품으로 판정된 의약품에 부과하는 추가부담금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기본부담금: 전년도 의약품 생산액 및 수입액의 1000분의 1

2. 추가부담금: 전년도 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지급액의 100분의 25. 다만, 그 의약품의 전년도 생산액·수입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부과·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제2항제1호의 기본부담금의 징수금액을 피해구제 예상비용, 부담금 운용 수익금, 정부보조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부과·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부담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운용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제1항 후단에 따라 부과·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

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가산금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납부절차, 이의신청,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18.]

### 산정기준 및 산출식 -

약사법 제86조의2 - 생략